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교수 · 학습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집 필 진 |

박중현 (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이경훈 (경기 보라고등학교)

이준하 (경기 광남중학교)

안정은 (경기 고양 현산초등학교)

일본군'위안부' 수업을 하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의 본질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일본군의 관리 아래 인신이 억매인 상태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종 차별·민족 차별뿐 아니라, 경제적·계층적 차별도 담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라는 것입니다. 최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위안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 동티모르, 과테말라, 아이티, 인도, 일본, 라이베리아, 멕시코, 티벳, 페루, 르완다, 스리랑카, 미국 등에서 무력 충돌 및 군대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죄와 배상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배우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다짐임을 수업에서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도 존재하는 성폭력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양성 평등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국경이 없듯이 많은 일본의 시민과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의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음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의 시민 사회는 1970년대 한국 기생 관광 반대운동부터 시작하여 일본군'위안부'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적극적으로 한국의 시민 사회와 연대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은 일본

군'위안부' 피해 문제가 한일의 갈등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며,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수업은 반일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의 제작, 구성 및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작성이 되어 있으나 내용에 따라 학교 급을 달리 하여 적당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료는 1시간에 소화하기에는 조금 많은 분량으로 학교 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교과가 교과적 특성을 융합하여 프로젝트 수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자료는 학습지도안, PPT자료, 학생활동지, 교사용 참고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교사용 참고 자료에는 수업 진행을 수월히 할 수 있는 수업 전개, 제시된 자료의 해제, 대립되는 이론, 중요 자료의 전체 텍스트와 기타 참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 수준, 학교의 현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논란 등으로 선생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앞장서는 학생들이 되도록 수업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례

I. 학교 급별 자료 해제 및 수업 자료	9
1. 초등학생: 함께 해결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9
2. 중학생: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16
3. 고등학생: 갈등을 넘어 보편적 인권 문제로 -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24
II. 기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참고 자료	35
1. 일본군'위안부' 개념	35
2. 김복동 할머니 증언	36
3. 고노 담화	37
4. 한국 정부와 일본의 입장	38
5.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43
6. 베를린 미테 구 의회 결의안	44
7. 태평양 전쟁 중의 성 계약(램지어 논문)	46
8. 램지어 논문 관련 일본 연구자·활동가 긴급 성명	60
9.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 전문가 위원회 권고	62
10.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66
11. 게이 맥두걸 보고서(1998)	94
12. 미국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145
13. 헌법 재판소 부작위 위헌 확인	146
III. 참고 사이트 및 참고 문헌	170
IV. 사진·그림 출처	172

I

학교 급별 자료 해제 및 수업 자료



학교 급별 자료 해제 및 수업 자료

수업 길라잡이
- 초등학생

함께 해결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 수업의 주안점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수업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생각하고, 할머니들의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들의 아픔이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쟁과 폭력 속에 말살되고 억압받는 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과 단체의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 강조하는 것은 흑백논리로 '일본은 나쁘다'는 반일 감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 역시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와도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업의 흐름

수업 목표

(오늘 수업에서 배우고 활동할 내용을 간단히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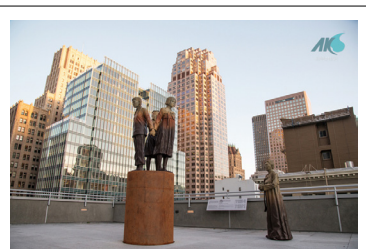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3, 4 생각 열기

1. 평화의 소녀상, 샌프란시스코 기림비를 보여주고 이러한 조형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생각하고, 왜 세워졌는지에 대하여 말해보기



<평화의 소녀상(고양)>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 사진 설명

- **평화의 소녀상(경기 고양 일산문화 공원)** :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진 자료도 해당 지역의 소녀상으로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소녀는 불규칙하게 잘려진 단발머리로 의자 위에 손을 꼭 짚 채 발꿈치를 살짝 든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왼쪽 어깨에는 새가 앉아 있고 소녀상이 있는 바닥에는 할머니 모습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새는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소녀상 옆에 놓인 빈 의자는 세상을 떠났거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빈 의자에는 일반인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재, 함께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 등의 상징을 담아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 명예와 인권회복, 그리고 평화 지향의 마음을 담았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샌프란시스코 기림비(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메리 스퀘어)** : 2017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 건립되었으며, 기림비 건립에 집요하게 반대한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결국 건립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를 제작한 사람은 영국계 미국인 스티븐 화이트(Steven Whyte)씨로 '위안부' 이슈가 단지 동양 어느 먼 나라에서 있었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발생하는 전시 성폭력 문제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점에 주목하는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침묵을 깨고 진실과 정의를 촉구하는 용기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강인한 '위안부' 여성의 기동'이라는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기동 위에서 서 있는 세 명의 소녀들은 한복을 입은 소녀, 중국 소녀, 필리핀 소녀이고, 이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바로 최초로 침묵을 깨고 증언을 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했으며, 유엔에서 "전시 성폭력은 반인륜범죄"라는 선언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김학순 할머니입니다.(선데이저널, 2017.9.14)

#4 학습 목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해야 할 활동을 설명합니다.

#5 일본군'위안부'란

일본군'위안부'가 무엇인지 개념을 일단 읽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부터 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 일본군'위안부'의 정의와 용어의 이해

1) 정의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은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패전까지 전쟁 지역·점령지·식민지에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군은 위안소가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위안소에는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여성들을 '위안'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안부(慰安婦)"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을 제공하는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위안소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1993년 제정된 법률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용어의 이해

국내에서는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것에 대해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군 시설의 일부로 제도화했던 위안소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명기한 것은 범죄의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을 영문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일본군‘위안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종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일본군이 위안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관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6 아시아·태평양 전쟁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침략한 전쟁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많은 사람과 물자가 강제로 동원되었음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교육부의 편수용어는 태평양 전쟁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은 단순한 태평양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아시아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루는 수업으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7~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림으로 보는 당시 상황

그림들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미술치료 과정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Q1.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묻고 답하게 합니다.

Q2. 그림을 모두 보고 제목을 알려준 다음 내가 그림 속의 소녀였다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발표하게 합니다.(PPT 상의 대답들은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다음에 보여주도록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중에 일본 정부와 다른 나라 및 피해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일본군‘위안부’가 돈을 벌기 위하여 스스로 갔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갔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하버드대 램지어 논문(→ 참고 자료 p.46)의 핵심도 일본군‘위안부’가 돈을 벌러 간 매춘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강제 동원은 다른 곳도 아닌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참고 자료 p.37)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노 담화에서는 “...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또한 전쟁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반도가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던 지역

일본군이 주둔하였던 거의 모든 지역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 설명합니다. 중국, 동남아시아의 정글 숲속, 태평양의 이름모를 섬으로 끌려다녔고, 성노예 생활을 하였으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와 지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이 점령한 지역 출신들이었으며, 그 중 조선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보고 용기를 낸 후 유럽인으로 최초 증언을 한 안 루프 오헤른 할머니(2019년 별세)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수녀원에서 생활을 하던 중 21살이던 1944년 일본군에 납치돼 성노예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 영국군 장교와 결혼해 호주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서방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앞서의 오헤른 할머니의 국적이 변화하는 등 출신 국가라는 용어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1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전쟁이 끝난 후 일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고향에 돌아왔으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어렵게 가정을 이룬 경우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인 피해자들에 의해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정부에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이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날로 2012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이 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이 날을 국가 기념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때 망향의 동상 추모비인 '안식의 집'이 문재인 대통령 참석 아래 제막되었습니다.

#12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1991년 김학순 할머니(1922~1997) 증언을 계기로 많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패전 당시 일본 정부와 군이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서를 소각하거나 폐기한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김복동 할머니(1926~2019)** :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였지만 오히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권 운동가로 우리에게 각인되었습니다.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곳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분쟁 지역의 피해 아동 지원과 평화활동가 양성에 써달라며 평생 모은 돈 5,0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세계 각지를 돌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 펼친 공적을 기려 2015년 67주년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재일 동포 어린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일 동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재일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지병으로 사망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과 함께 할머니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 참고 자료 p.36)

- **강덕경 할머니(1929~1997)** : 할머니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는 바람에 외할머니 집에 살았습니다. 1944년 요시노 학교 재학 중이던 16살 때 일본인 교사가 후지코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때 일을 “일본인 선생님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엄마는 안 된다고 했지만 부산에서 150명이 연락선을 탔지요”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도야마의 한 군수공장에 보내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피해 탈출했다가 붙잡혀 일본군‘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해방 이후 겨울에 귀국하여 1946년 1월 즈음 아이를 낳아 집으로 데려갔지만 어머니에게 쫓겨나 부산의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부산의 식당에서 일을 하다 아이를 찾으러 갔으나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후에 “내가 아이의 모습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증언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로 있으면서 얻은 신체적 피해 때문에 할머니는 생식 기관이 손상되어 평생 많은 돈을 의료비에 쏟아 부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며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일본군‘위안부’ 경험을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긴 투병 생활 끝에 199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13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피해자들

- **사진 설명** : 왼쪽은 2007년 2월 15일 미국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김군자(81), 이용수(79), 안 루프 오헤른(85) 할머니가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16년 동안 사과 촉구 시위를 하고 있지만 공식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고, 안 루프 오헤른 할머니는 “나에게 죄지는 일본인들은 용서했지만,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위안부’들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김군자 할머니는 “많은 할머니들이 죽었지만 역사는 살아 있을 것이다. 망가진 내 인생을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에 따라 미국 하원에서는 2007년 7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른쪽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2015년 ‘제1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한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피덴시아 데이비드(88) 할머니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14살이던 1942년 일본군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고, 1개월 간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피해의 고통을 넘어 전쟁 중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사진 설명** : 왼쪽은 수요 시위 장면이고, 오른쪽은 나눔의 집입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대표적인 것은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시위(집회)입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2021년 7월 14일에는 1,500회를 돌파하였습니다. 단일 집회로는 세계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회에서는 진상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추모비 건립,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이고,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1992년 마포에서 시작하여 199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현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역사관을 두어 피해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13명으로 이 중 네 분이 이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1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사진 설명** :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으로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자료들을 보존, 연구하고 있으며,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 일본의 많은 시민과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민들의 문제 해결 노력

1970년대 기생 관광 반대운동을 둘러싼 매매춘 반대운동으로 시작, 2기는 1980년대 이 문제를 성 억압 내지 성 폭력 측면에서 부각하기 위한 시기, 3기는 정대협을 중심으로 보상 운동의 기반이 마련, 4기는 한국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전후 보상 실현을 위한 노력 진행, 여성의 성폭력 문제가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통하여 인권 문제로 발전하는 형태로 한국과 초국가적 차원에서 연계하며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 이후 제일 한인 여성운동조직인 '교회여성연합회'와 '매매춘문제에 도전하는 모임'과 같은 일본 여성운동단체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다루며, 피해자 초청, 재판 지원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개 단체는 '종군'위안부' 문제 행동네트워크'를 결성, 한국의 정대협과 교류·협력, "위안부' 110'이라는 신고 전화를 개설하여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일본 여성자료센터(AJWRC)'는 1995년 설립되어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신들이 모은 자료와 정보를 다른 시민단체와 여성운동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행동센터(VAWW-NET)는 1997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를 계기로 발족 - 2000년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을 개최하여 전쟁의 핵심 인물인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은 2005년 한 시민활동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최초로 전쟁 중 성폭력에 관한 자료를 모아 놓은 곳으로 방문객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자 간 이견이 있으나 무라야마 도미미치 총리 시절인 1995년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치하여, 위로금 200만 엔, 총리의 사죄편지, 일본 정부의 의료복지금 300만엔 등을 정부와 민간의 출자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법 제정을 통한 공식적인 보상과 사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어 해당 지원금을 받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있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실천된 것이라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16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사진 설명** : UN 인권위원회를 통한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권고하는 보고서 작성

미국 글렌데일 시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에 UN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본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지에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많은 소녀상과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UN의 보고서

1992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3차례 걸쳐 제출된 UN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 참고 자료 p.66)를 시작으로 1998년에는 게이 맥두걸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참고 자료 p.94)를 통해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17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

- 첫째는 전쟁 중 일본군'위안부'로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둘째는 한일 간에 일으키는 갈등인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서입니다.
- 셋째는 아직도 세계 각지에는 많은 전쟁과 그 속에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높여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비인도적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야 한국과 일본이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려는 노력도 전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과 관련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알아보기
- 초등학교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나 영화 찾아보기

#19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관련활동 참여

-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는 학생의 날 또는 학교 축제 등에서 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할머니들에게 편지 쓰기(편지를 써서 직접 보내거나 교실에 게시하거나, 학급 신문 등으로 발간할 수 있습니다.)
- 자신들이 한 활동을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20 방학 과제로 활동을 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 자신이 활동한 내용, 글이나 그림 등을 SNS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의 주안점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군'위안부'라는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램지어 논문 사태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램지어 논문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식민지 상황에서 여성들이 처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하는 수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반일감정이 아닌 일본에서도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음을 알고 그들과 힘을 합쳐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 수업의 흐름

수업 목표

1. 일본군'위안부'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기억에 대한 대립적 입장(기억하려는 자, 지우려는 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

#2. 3 PPT 화면 1.2를 열고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 이 영화들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있어요?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학생들에게 3개의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후, 주의를 환기시키고 본격적으로 위 영화들의 공통점을 질문함.

- 간단하지만 '김복동' 영화 예고편을 볼게요.
- 영화를 보고 평소에 일본군'위안부'에 가졌던 생각을 한번 학습지에 써볼까요?
- 다 썼으면 한번 발표해 볼까요?

오늘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 '김복동' 예고편을 보여 준 뒤, 평소 가지고 있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게 한 후, 의견을 들어본다.

1. 영화 '아이캔스피크'

2017년에 개봉한 영화로 배우 나문희와 이제훈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7년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국인 이용수, 김군자, 네덜란드계 여성 안 루프 오헤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실제 의회에서 마지막 부분이 촬영되었습니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할머니는 구청의 단골 민원제기자였습니다. 우연히 할머니의 삶을 알게 된 담당자 이제훈은 동생을 만나기 위해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할머니와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이 제훈(민재)은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로 등록이 되도록 도와주고, 할머니는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2. 영화 '허스토리'

2017년 개봉된 영화로 배우 김희애와 김해숙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관부재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관부재판은 일본군'위안부'와 근로 정신대에 끌려갔던 할머니가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재판입니다. 장장 6년 간에 걸친 재판 끝에 일부 승소를 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내용 중에 국가에서 피해를 신고하라 해서 신고를 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이어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해방 이후 할머니들이 신고를 못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240명이 피해자로 등 록되었지만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3. 영화 '나이는 구십넷, 이름은 김복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다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9년 개봉되었 습니다. 1992년 피해자임을 밝히고 이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간 삶을 조명한 영화로 그가 왜 인권 운동가인 지를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4

-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뉴스를 함께 시청한다.)
- 요즘 이 영상과 함께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 베를린(미테 구) 소녀상 철거, 일본 '표현의 부자유전' 평화의 소녀상 전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및 훼손

램지어 교수 논문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기는 힘들지만, 선생님들은 뒤에 실린 원문 (→ 참고 자료 p.46)과 아 래의 검토 의견을 보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를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우나 혹여 학생들의 질 문이 있을 때 대답하거나 내용 중 한 두 개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일본의 연구자·활동 가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참고하면 좀더 논문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사용 (→ 참고 자료 p.60)에 실려 있습니다.

- 램지어 논문은 2020.12 <태평양 전쟁 중의 성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법경제학 리뷰 65호에 온라인 탑재, 2021년 해당 잡지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연기됨
-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군'위안부'가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함
- 논문에 나오는 오류들
 - 1) 10살 오사키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가라유키상으로 갔다는 사례 : 속아서 갔고 자유를 잃었으며 성매 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오사키의 증언 누락
 - 2) 한국인 피해자인 문옥주 할머니의 사례를 들고 소득이 많았다는 주장을 함 : 돈은 업주가 준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한 것 등에 대한 팁이었고, 이렇게 팁을 받아 저금을 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 형태임. 문옥주 할머니는 계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
 - 3) 한국인 '위안부'가 계약 조건에 따라 일했다는 미군 심문보고서 인용 : 보고서 원문은 계약과 상관없이 '위안부'가 자유 롭게 떠날 수 없었다고 기록함
 - 4) 만 21세 이상 계약조건을 지시한 내무성 문서 : 문서는 업자들이 여성들을 속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

- 5) 김부자·김영의 <식민지 유곽> 인용 : 책은 일본군의 존재로 인해 1916년 공창제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램 지어는 그것이 자발적인 계약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 왜곡하여 인용함.
- * 일본의 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관점뿐 아니라 논문의 출처 오류, 자의적 인용, 근거 누락 등으로 학문적 진실성에 결함이 있음
 - * 이러한 문제들로 자료 영상에 나오는 하버드대 학생회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부각시킨 역효과를 가져옴.

#5 개념잡기1 - 일본군‘위안부’란

- 일본군‘위안부’는 많이 들어 보았지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말하는 지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지 <자료1>에서 일본군‘위안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본의 침략 전쟁 당시) 위안소 등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상대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6 개념잡기1 - 일본군‘위안부’란

- 일본군‘위안부’를 국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본군‘위안부’의 적절한 표현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일본군‘위안부’는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성노예’는 더욱 강하게 여성을 성적 노예와 같이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강요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 일본군‘위안부’의 정의와 용어의 이해

1) 정의

지금까지 발굴된 사료에 따르면 일본군은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패전까지 전쟁 지역·점령지·식민지에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군은 위안소가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위안소에는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여성들을 ‘위안’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안부’(慰安婦)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을 제공하는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위안소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1993년 제정된 법률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용어의 이해

국내에서는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것에 대해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군 시설의 일부로 제도화했던 위안소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명기한 것은 범죄의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을 영문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일본군‘위안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중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일본군이 위안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관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7 개념잡기2 -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기억

-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싸고 이를 기억하려는 사람과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먼저 <자료3>입니다. 이 자료는 1993년 일본 정부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의 담화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대변인과 청와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1) 이 자료를 통해서 일본군'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찾아 볼까요?

위안소는 일본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민간업자가 주로 담당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더욱이 일본 관헌 등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는 참고 자료에 전문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p.37)

관련 동영상은 '고노 담화 재검증 왜 문제되나 / YTN. 2014.6.20.'

<https://www.youtube.com/watch?v=FUjKs5Zblll&t=74s>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90년 6월 일본 국회에서였습니다. 사회당 의원이 물었으나 정부는 군과 정부가 간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자의 이름을 걸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1월에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군'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하는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한 문서를 발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할 수 없어 1991년 12월부터 1년 8개월 간 조사를 하고, 1993년 8월 4일 이 담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안소는 일본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의 모집은 민간업자가 주로 담당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더욱이 일본 관헌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램지어의 논문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8 개념잡기2 -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기억

- <자료4>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 본 것입니다.
- <자료5>도 한번 살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중학교 사회(역사분야)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 개념잡기2 -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기억

-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역사분야)에 일본군'위안부'가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문2) <자료3>, <자료4>에 보이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5>을 보고 이야기해 보시오.

고노 담화가 발표된 후 모든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가 기술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검정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기술에 제약을 가함에 따라 2001년도부터 기술이 적어지다 2011년에는 모든 교과서에 기술이 없어졌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고노 담화'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에 반영되었으며, 1996년과 다르게 2001년부터는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내용 기술이 줄어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4]에서 우리들은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6년 일본군'위안부'가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이 되자 이것은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드디어 교과서의 정치화가 시작되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은 1955년 탄생한 이후 1993년까지 집권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버블의 붕괴로 1993년 선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하고 이른바 55년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미야자와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3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하여 정권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어 1996년 중·고교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관련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이를 빌미로 자민당의 상당수와 우파들은 일본군'위안부'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들이 자신들을 학대하는 '자학사관'에 의한 것이라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시 집권한 자민당은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만든 역사교과서를 채택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질문3) [자료6]의 2015년도와 2020년도에 일본군'위안부' 기술이 다시 등장한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본 정부의 의도와 달리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를 서술하려는 교과서 필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연구자, 시민들의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역사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교과서 검정에서도 이를 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에는 1개, 2020년도에는 두 개의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나비사의 교과서는 일본의 현장 교사들이 집필한 교과서로 객관적 사실에 토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보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1% 미만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야마카와사는 역사부분의 대형 출판사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마카와 출판사가 2020년부터 이제까지 발행하지 않던 중학교 사회(역사분야)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면서 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학자적 양심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려는 필자들의 노력과 양심적인 시민 및 시민 단체들의 활동과 요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10 개념잡기2 -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기억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제 한일 간을 넘어 UN으로 넘어갔습니다.

질문4) <자료6>을 읽고 보고서에 제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행하여야 할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 자신은 그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나열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들마다 중요도가 다르니, 자신은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996년 UN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보고서를 통해 현황 조사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라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 북한 및 일본에서 조사를 한 후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를 한 것이 자료7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 참고 자료 p.66)에 실려 있습니다.

1998년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는 (→ 참고 자료 p.94)에 나와 있습니다.

11 개념잡기2 -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기억

다음은 <자료7>을 보겠습니다. PPT화면에 보이듯이 2000년에 일본 도쿄에서 민간 법정이 열려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만들어 피해를 입힌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5) 자료를 읽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법정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은 일본 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계 시민 사회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공식화했으며, 전쟁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행동센터(VAWW-NET)가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를 계기로 발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학술회의에 멈추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피해 여성들이 증언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고, 검사들은 논고를 통하여 핵심 인물인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1년 뒤인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저질러진 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저질러진 범죄 중 가장 알려지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 범죄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희생자들을 위한 박물관도, 알려지지 않은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무덤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도, 일본군 성노예와 심각한 성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한 판결도 없었다. 따라서 본 재판정은 이 판결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희생당한 여성들을 기리려고 한다. 판사단은 고생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산산이 부서진 삶을 재건하고, 공포와 수치를 이겨 내고 세계를 향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생존자들의 강건함과 위엄을 인지한다. 정의를 위해 앞으로 나선 많은 여성들은 이름없는 영웅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진 이름은, 고통받은 여성들이 아니었다. 고작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을 기소한 남성이었다. 이 판결문은 증언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최소한 4일간은 잘못된 일을 단두대에 올리고 진실을 왕좌에 앉힌 생존자들의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다.”(2001년 헤이그 판결 1094항, <결.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2020.12.03, <https://kyeol.kr/ko/node/243>)

질문6) [자료3] ~ [자료7]의 각각의 자료가 기억하려는 자와 연관된 것이라면 '기억', 지우려는 자와 연관된 자료라 생각하면 '지움'이라고 적어보고, 이들은 왜 기억하고, 왜 지우려 하는 지 그 이유를 말하고, 이 문제가 현재에 왜 중요한지 토론해 봅시다.

ex) [자료4] - 지움, [자료3], [자료6], [자료7]- 기억, [자료4]는 이 문제를 기억에서 지우려 하며, 일본 정부나 군이 책임을 벗어 나려 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자료들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현재나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료5]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 문제가 현재 중요한 것은 전쟁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같은 여성과 소녀들에 가해지는 성폭력 범죄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억해야 한다.

11 개념잡기3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PPT사진을 보며 할머니들의 말을 읽어 봅시다. 김학순 할머니, 정서운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2 이어서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13 <자료8>은 김복동 할머니의 인터뷰입니다.

14 <자료9>은 일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운동가의 이야기입니다.

wam(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 <https://wam-peace.org>)은 2000년에 열렸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고 후세에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여성 기금'을 설립하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이 문제에 헌신하였던 마츠이 야요리라는 여성이 간암 투병으로 사망한 이후 그의 재산과 모은 기금으로 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하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 <자료10>은 2007년 미국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사진입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진은 결의안 채택 10주년 행사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아닌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전문은 (→ 참고 자료 P.145)에 있습니다.

- (1) 1930년대부터 제2차 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군이 일본군'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 (2) 일본 총리가 공식 자격으로 공개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과거 일본 정부의(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의 성격 및 진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임.
- (3) 일본군을 위한 일본군'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함.
- (4) 일본군'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미래 세대를 교육시켜야 함.

질문1) [자료8]~ [자료10]의 영상과 같이 세계 각 지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내 역사 부정론자들과 달리 전쟁의 피해, 전시 성폭력의 피해, 인권 회복 등과 같은 관점에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19 한걸음 더-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일본군'위안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리랑 비'와 관련된 자료를 읽어 볼까요?

오키나와는 1945년 일본군이 본토를 지키기 위해 옥쇄를 강요하였던 지역입니다. 오키나와 제도의 한 섬이었던 미야코 섬에 위안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만났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비석이 '아리랑 비'입니다. 동영상에도 등장하는 요나하 히로토시 할아버지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국적을 떠나 모두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참상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할머니들과 마주했던 곳에 있던 돌에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뒤에 세워져 있는 '여성들에게'라는 추모비에는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있던 11개 국 언어로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데, 운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윤정옥 선생님이 한국이 베트남에서 한 일도 반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베트남어로도 적을 것을 주장하여 12개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제시된 동영상은 일부인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두 개의 동영상 전체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의 '위안부'(미야코 섬의 아리랑 비)

<https://www.youtube.com/watch?v=vBtJdhJioKU&t=17s>

두 개의 '위안부'(EBS)

<https://news.v.daum.net/v/20210225141050938>

Q6. 위의 자료를 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들을 목격했던 주민들, 연구자들의 최근 활동을 보고 느낀 점을 다음 빈칸에 적어 보시오.

할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할머니 일본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향 생각이 날 때는 어땠나요. 저희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할머니들을 기억하려는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나라는 달라도 고통 받고 있던 할머니들을 인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기억하려 했던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스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게요.
나의 다짐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오늘날 평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넘어 함께 손을 잡고 활동하겠다.

☞ 수업의 주안점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한일 역사 갈등의 가장 큰 이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갈등의 소재라기보다 이를 넘어서 있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수업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맹목적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 우익 세력들, 램지어 교수와 같은 이들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 한국의 일부 역사 부정론자들의 논리적 모순을 확실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업의 흐름

수업 목표

1.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을 이해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수업 전개

◇ 생각열기 (#2)

사진은 독일 베를린 미테 구에 건립된 소녀상 사진입니다. 기사를 읽어 봅시다.

#3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위안부' 망언 논문에 일본 학계와 시민 사회가 나서서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사 1>, <기사2>, <영상1>을 보고 대답해 봅시다.

#4 동영상도 같은 내용의 뉴스입니다. 뉴스를 한번 볼까요?

신문의 전체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소녀상은 지난 25일 베를린 미테 구(區)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됐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2017년 남동부 비젠트의 사유지인 네 팔 히말라야 공원, 지난 3월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교회에 건립됐다.

베를린의 소녀상은 지하철역 인근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지역 시민의 접근성이 높다. 주독 일본대사 관과는 직선으로 2.8km,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소녀상 건립은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의 주도로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가 추진해왔다.

코리아협의회는 2019년 비르켄 거리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긴 뒤 시민이 많이 다니는 주변 거리에 소녀상 건립을 하기로 하고 관공서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해왔다. 베를린에서 역사와 관련된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세우는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예술성도 담보돼야 한다.

코리아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가 간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전쟁 피해 여성 및 여성 인권 문제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베를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민족주의를 단교 보편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대표적 인 사례가 되어 왔다. 전쟁 피해를 본 여러 소수민족의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연대해왔다.

소녀상 건립안은 올해 초 베를린 도시공간문화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독일 연구자와 현지 여성단체, 현지 예술인 단체 등이 도움을 줬다. 조형물 설치 허가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도 반영되기 때문에 코리아협의회는 인근 음식점 운영자 및 건물주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쳤다.

코리아협의회는 일본 정부 측이 공공장소의 소녀상 설치 진행 과정을 인지할 경우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허가 과정부터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코리아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 성폭력 극복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사무실 공간 옆에 운영 중이어서 소녀상과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 등을 상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전 세계적인 전쟁 피해 여성들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녀상은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정의기억연대가 소녀상 제작을 지원했다.

한정화 코리아협회 및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27일 "베를린의 소녀상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평화, 남녀평등 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측은 설치된 소녀상과 관련해 반발하지 말고 과거 청산에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베를린의 소녀상 제막식은 오는 28일 현지 정치인, 학자,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의 이나영 이사장이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7002200082>

** 램지어 교수 논문과 관련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과 함께 교사용 (→ 참고 자료 p.60)에 수록된 일본의 연구자, 활동가 긴급 성명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램지어 논문은 2020.12 <태평양 전쟁 중의 성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법경제학 리뷰 65호에 온라인 탑재, 2021년 해당 잡지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연기됨

-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군'위안부'가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함

- 논문에 나오는 오류들

1) 10살 오사키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가라유키상으로 갔다는 사례 : 속아서 갔고 자유를 잃었으며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오사키의 증언 누락

2) 한국인 피해자인 문옥주 할머니의 사례를 들고 소득이 많았다는 주장을 함 : 돈은 업주가 준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한 것 등에 대한 팁이었고, 이렇게 팁을 받아 저금을 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 형태임. 문옥주 할머니는 계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

3) 한국인 '위안부'가 계약 조건에 따라 일했다는 미군 심문보고서 인용 : 보고서 원문은 계약과 상관없이 '위안부'가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다고 기록함

4) 만 21세 이상 계약조건을 지시한 내무성 문서 : 문서는 업자들이 여성들을 속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

5) 김부자·김영의 <식민지 유곽> 인용 : 책은 일본군의 존재로 인해 1916년 공창제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램지어는 그것이 자발적인 계약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 왜곡하여 인용함.

* 일본의 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관점뿐 아니라 논문의 출처 오류, 자의적 인용, 근거 누락 등으로 학문적 진실성에 결함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로 중학교 자료 영상에 나오는 하버드대 학생회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부각시킨 역효과를 가져옴.

* 기사와 동영상의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을 넘어 전시 성폭력 중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진 인권 유린으로 여성 인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세계인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베를린에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은 일본과 같은 침략국가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녀상 설치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개념잡기1 -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노 담화 때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자료1>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쳐가며 봅시다.(다 읽은 후에 PPT4와 비교하게 한다.)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 전문입니다.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이른바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반도가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점에 관해서는 有識者의 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에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들은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향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히 관심을 갖겠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6 다음 <자료2>를 읽어 보세요. 이것은 2021년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읽게 한 다음, PPT 화면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 또는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자신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10억 엔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7 이와 관련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발언들입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일본 정부 입장은 고노 담화입니다. 즉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위안부'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범위 축소, 성노예 용어 사용 반대, '위안부' 총 숫자 추정 불가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일본군'위안부' 역사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을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자꾸 문제를 삼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미 한일조약 때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뒤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등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1995년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2015년의 합의를 통해 사과와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노력할 만큼 다 했는데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일본 국민들은 한국 정부나 한국민들에게 감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국가가 주도하여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1995년에는 당시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사과 편지와 함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진 것이 아닌 도의적 책임으로 면하려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5년 합의에서도 총리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하였고, 정부 자금으로 10억엔을 지급하였으나 '배상금은 아니고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배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PPT 6번 화면의 아베총리 발언은 협상이 있는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므로 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갈등의 핵심을 설명할 때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하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자료3>을 읽고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앞서 고노 담화와 달라진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Q3. <자료3>을 읽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찾아봅시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고노 담화 발표 이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내용이 실리지 않자 침략 국가의 과거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를 자학사관(부끄러운 과거)라고 하여 은폐하려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일본의 정치인들 - '일본의 미래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무총장을 역임) 등 - 이 왜곡된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앞장서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 우익들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하나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1996년도 일본의 교과서 대부분에 이 문제가 실리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좌파 역사학자'들이 잘못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 때문에 학생들이 '자학사관'을 갖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전에 교과서와 관련된 이애나가 사부로 소송 등이 있었지만 이제 역사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정치의 장으로 들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9 이번 영상은 앞서 보았던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입니다. Q4. [영상2]를 보고,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를 말해 볼까요?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0 이 영상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발표하는 영상입니다. Q5. 영상을 보면서 핵심 부분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자료4> 발표문의 핵심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Q5 밑줄: 전시 여성 성폭력~인권 문제(4번째 줄),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둘째), 2015년 합의는 ~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셋째)

#11 앞서 일본 정부가 철거를 요구하자 미테 구 당국이 이를 철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Q6. <자료5>와 <자료6>을 읽고 이들은 왜 소녀상을 지키려고 하는 지 말해 봅시다.

#12 또한 일본 시민들도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통하여 소녀상 철거 요구를 철회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시민, 시민단체가 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것은 전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가해국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과 기억, 교육을 통해 존중받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13 결국 독일 미테 구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Q7.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7>을 보고 대답해 봅시다.

미테 구에 설치된 소녀상은 전시 성폭력과 함께 현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위한 계기가 되는 시설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테 구는 소녀상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9월에는 2022년 9월 28일까지 특별 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갈등 중 하나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테 구 의회 결의안>은 (→ 참고 자료 p.44)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14 이보다 앞서 UN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일본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1996년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입니다. 먼저 <자료8>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요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15 이어 <자료9>의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일본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8. 두 자료를 통해 국제 사회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해 봅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인권침해 범죄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고 이 사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UN에서 채택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이며 자료에 있는 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6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고서는 조사를 기초로 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후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교사용 (→ 참고 자료 p.66)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UN인권위원회는 1998년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맥두걸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한 보고관 맥두걸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위안소 제도가 성노예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안소를 '강간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UN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배상도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996년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보다 크게 진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맥두걸 보고서 역시 교사용 (→ 참고 자료 p.94)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앞서 독일 미테 구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것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전시하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문제라는 사실과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한걸음 더 -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럿이 한 걸음'>

2021년 1월, 미국의 램지어 교수 논문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Q9. 이처럼 역사 부정과 역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들을 보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친구들과 토론하고 결과를 발표해 봅시다.

<자료10>은 일본 내각부, 즉 일본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여론 조사입니다. 그 중 2020년 10월에 조사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여론조사 중에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조사한 것입니다. 친근감을 느낀다와 그렇지 않다는 그래프가 오르내리며 반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친근감이 최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높았던 것은 1988년 올림픽 직후와, 199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내각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역사 갈등은 있었지만 한류를 타고 한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감정이 안 좋아진 데다가 일본 역시 중국과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분쟁으로 영토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문제가 갈등으로 치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다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18 2018년과 2019년 한 해 사이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화이트 리스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는 전년보다 8% 가까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 긴급 행동(실즈)'라는 단체의 포스터입니다. <자료11>은 이들의 선언문입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20 <자료12>는 2020년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내용입니다. 수업에 대한 소감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료 안내 사항

[자료 10]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이 2019년 가장 악화되었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이 때 4차 한류-K pop, K-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여 한국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11] 일본에서 자국의 우경화를 반대하고(전쟁 법안 반대) 과거 침략전쟁을 직시하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료 12] 일본 고등학생 중 한일 간 역사 갈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한일 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본의 시민과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읽어본 <자료10>, <자료11>, <자료12>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넘어 서로 가까워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고, 결과를 말해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각자 의견을 충분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각 모둠 별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II

기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참고 자료



기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참고 자료

1. 일본군‘위안부’ 개념

1) 정의

지금까지 발굴된 사료에 따르면 일본군은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패전까지 전쟁 지역·점령지·식민지에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군은 위안소가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위안소에는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여성들을 ‘위안’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안부”(慰安婦)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을 제공하는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위안소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1993년 제정된 법률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용어의 이해

국내에서는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것에 대해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군 시설의 일부로 제도화했던 위안소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명기한 것은 범죄의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을 영문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 김복동 할머니 증언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은 미성년인 15세에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짓말로 동원되어, 광둥,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위안소를 전전해야 했던 비극을 잘 전해주고 있다.

나는 1926년 5월 1일에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났다. 딸만 여섯이었는데 나는 그중 넷째 딸이었다.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41년 언니들은 일본 놈한테 끌려간다고 전부 시집을 보냈고, 나는 나이가 어려 관찮을 것 같아 집안일을 돕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 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군복 만드는 공장에 딸을 보내야 하니 내놓으라고 했다.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끌려가게 되었다.

일본 사람은 나를 버스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부두에 있는 창고 속에 집어넣었다. 그곳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조선 처녀들이 와 있었다. 저녁에 부두로 나가 연락선을 타고 다음 날 아침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화물선을 타고 대만으로 갔으며 얼마 있다가 다른 화물선을 갈아타고 광둥에 도착했다.

광둥에서 내려 포장이 쳐져 있는 군인 트럭을 타고 위생병원 같은 곳으로 갔다. 나는 검사대(나무판)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으나 군의관은 강제로 내 옷을 벗기고 아래를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후 우리 모두는 한참을 걸어서 어떤 건물로 갔다. 건물 복판에는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방이 주욱 있었다. 방이 30개는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각기 방을 하나씩 배치 받고 들어갔다. 각 방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고 그 밑에 ('위안부') 이름도 있었다. 우리를 데려간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남자가 문 앞에서 우리를 감시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를 검사한 군의관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뒤꼍으로 도망쳤으나 군의관은 나를 쫓아와서 내 양 볼을 엄청난 힘으로 때렸다. 한참을 맞고 나니 얼굴 전체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다. 보통 때는 하루에 15명 정도 상대해야 했지만 주말에는 말할 수 없이 많았다. 50명은 넘었던 것 같다. 성병검사는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했다. 군의관이 우리 숙소로 와서 검사관을 만들어 놓곤 했다.

어느 날 아침에 군인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짐을 싸서 타라고 했다. 트럭을 타고 가다가 군대 화물선으로 갈아타고 다다른 곳이 홍콩이었다. 홍콩에서 석 달쯤 있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이동했고 몇 달 후에는 수마트라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자바로 계속 이동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끔씩 산 속 깊은 곳의 군부대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군인들이 호위하고 '위안부' 10명쯤이 함께 갔는데, 천막 하나를 임시 위안소로 만들어 놓고, 천막 속을 합판으로 칸을 나누어 서너 명씩 들어가도록 했다. 마지막에 있던 곳은 다시 싱가포르였는데, 거기서 해방을 맞아 귀국선을 타고 부산을 거쳐 5년 만에 양산으로 돌아왔다.

출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에서 요약, 정리.

3. 고노 담화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 (고노 담화)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반도가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중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점에 관해서는 有識者의 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에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들은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향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히 관심을 갖겠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 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https://www.nahf.or.kr/gnb07/snb07_02.do

4. 한국 정부와 일본의 입장

1)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존중에 기반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여 왔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5 합의 이후 발표된 것입니다.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문

2018.1.9 외교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합의 검토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 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 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의 입장은 현재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게재된 내용을 직역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시각의 차이 및 모순적 태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

(1)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1)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적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일본은 이에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그 전제하에서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1995년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약칭:'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였던 분들께 의료·복지지원사업 및 '사과금'(atonement money)을 지급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대신으로부터 '사죄의 서한'을 보내는 등 최대한 노력해 왔다.

(2) 더욱이 한일 양국 정부는 다대한 외교적 노력 끝에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정상 간에서도 이 합의를 양국 정상이 책임을 갖고 실시할 것, 그리고 향후 여러 문제에서 이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당시)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도 환영하였다.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하여 10억 엔을 거출하였다. '화해·치유재단'은 그동안 합의 시점에 생존해 계시던 47명 중 35명에 대하여, 또한 돌아가신 199명 중 64명의 유가족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했으며 많은 '위안부'였던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3) 그러나 2016년 12월 한국 시민단체는 주부산 총영사관에 인접한 인도에 '위안부'상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부 장관 직속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①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②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8년 7월 한국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여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 더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송에서 2021년 1월 8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달 23일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하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또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이 국가로서 갖는 책임에 따라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5)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 한일 합의는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을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 국제 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일 합의로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도 이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한국 측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에 변함이 없다.

(2) 국제 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노력

(1)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대전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그 이외에 양국 간 조약 등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 왔으며, 이들 조약 등의 당사국과의 사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포함하여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2) 그 전제하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였던 분들의 명예 회복과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왔다. 1995년에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협력 하에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보상(atonement)과 구제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다. 아시아여성기금에는 일본 정부가 약 48억 엔을 거출하고 일본인 일반 시민으로부터 약 6억 엔의 성금이 모여들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사과금’ 및 의료·복지 지원 사업의 지급 등을 실시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왔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는 ‘위안부’였던 분들 285명(필리핀 211명, 한국 61명, 대만 13명)께 국민성금 자금으로 ‘사과금’(1인당 200만 엔)이 전달되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일본 정부의 거출금을 자금으로 의료·복지지원사업에서 1인당 300만 엔(한국·대만), 120만 엔(필리핀)을 지급하였다(합계 금액은 1인당 500만 엔(한국·대만), 320만 엔(필리핀)).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정부 거출금을 자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고령자용 복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했고, 또한 네덜란드에서 ‘위안부’였던 분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3)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하여 ‘사과금’ 및 의료·복지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 당시 내각총리대신(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내각총리대신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은 자필로 서명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서한을 ‘위안부’였던 분들 한 분 한 분께 직접 보내 드렸다.

(4) 2015년 내각총리대신 담화에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세기 전시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를 만들기 위해 리드해 가겠다는 결의(決意)를 갖고 있다.

(5) 이러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와 같은 표현 외에도 ‘위안부’의 수를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史實)에 근거한다고 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보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강제연행’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예를 들어 1997년 12월 16일 각의(閣議) 결정 답변서에서 밝히고 있다.)
- ‘성노예’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하였으며 한일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 ‘위안부’의 수에 관한 ‘20만 명’이라는 표현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숫자이다. ‘위안부’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견된 자료에는 ‘위안부’의 총수(總數)를 가리키는 내용은 없고 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안부’ 총수를 확정 지을 수 없다.

(6)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취해 온 진지한 노력 및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 명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의 공식 석상에서 2016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회 및 제8회 일본정부보고 심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 일본 정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위안부’상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의견서를 동 법원에 제출하였다.

출처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mofa.go.jp)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國の取調

5.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보고서(10차, 11차)에 대한 견해(요약, 2018)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의 일본의 제 10차 및 11차 보고서에 대한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tenth and eleventh periodic reports of Japan), 2018. 9. 26 배포

‘위안부’

27. 일본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포함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을 취하지 않았음에 우려한다.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적절한 협의가 없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28.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모든 피해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보장하고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다음 회기 심의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출처 : 정의기억연대 <https://womenandwar.net/kr/notice/?mod=document&uid=27>

6. 베를린 미테 구 의회 결의안

베를린 미테 구 구의회

5대 선거회기

개정안 신청 (개정)현안 발의자: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소속 Neugebauer 의원, Siewer 의원 및 기타 녹색당 의원 원인책물 : 신청서. 원안발의자:좌파당(Die Linke) 소속 Urchs 의원, Karci 의원, Böttger 의원 및 기타 좌파당 의원		인쇄물 번호 : 2745/V 인쇄물 원안 일자 : 2020.10.27 현 인쇄물 일자 : 2020.12.1	
평화상 보존-성폭력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설 (Friedensstatue bewahren - Gedenken an Opfer sexualisierter Gewalt ermöglichen)			
논의경과 :			
일자	의회	회의	결과
2020.11.5. 2020.12.1	미테 구 구의회 미테 구 구의회	BVV-M/0042/V BVV-M/0042/V	연기

(미테 구) 구의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기를 요청함

미테 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Ecke Bremer가/Birken가에 소위 “평화상” 설치를 위해 제출한 도시공간 내 예술 특별이용 신청 허가 철회로 인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법원에 인낙(認諾)을 제출하도록 함.

추가로 이 임시 설치승인은, 도로공사로 인해 설치일자로부터 실제 설치일자까지 경과되었던 기간인 6주간 연장되어야 함.

나아가, 구청은 신청인과 더불어 "평화상"을 관내에 영구설치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구의회(BVV)가 관여하게 될 것임.

근거 :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동아시아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성 착취(소위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관계는 분명함. 동아시아 역사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예술 논쟁은, 베를린의 역사적 배경과 미테 구의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베를린주 뿐만 아니라 베를린주에 거주하는 시민사회에서도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일본 정부 또한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1993년 소위 "고노선언"(<https://www.mofa.go.jp/>)

policy/women/fund/state9308.html)"을 통해 사실관계 및 국가조직(organisatorisch)의 책임, 도덕적 책임을 시인하였음.

우리는 "평화상"을 전시 성폭력 및 평상시의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위한 동인(動因)으로 보고 있음.

기민당 원내단체의 개정신청 안:

평화상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문 없이 1년간 설치하는 방향으로 구청에 요청함.

근거 :

우리는 "평화상"을 전시 성폭력 및 평화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위한 동인으로 보고 있음. 2차 대전 중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조형물과 비문은 베를린 미테 구와 관련이 없음

좌파당 원내단체의 원안 :

미테 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Ecke Bremer가/Birken가에 소위 "평화상"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공간 내 예술을 위한 특별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 철회를 취소함.

추가로 이 임시 설치승인은, 도로공사로 인해 설치일자로부터 실제 설치일자까지 경과되었던 기간인 6주간 연장되어야 함.

나아가, 구청은 신청인과 더불어 "평화상"을 관내에 영구설치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구의회(BVV)가 관여하게 될 것임.

근거 :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동아시아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성 착취(소위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관계는 분명함. 동아시아 역사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예술 논쟁은, 베를린의 역사적 배경과 미테 구의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베를린주 뿐만 아니라 베를린주에 거주하는 시민사회에서도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일본 정부 또한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1993년 소위 "고노선언"

(<https://www.mofa.go.jp/policy/women/fund/state9308.html>)"을 통해 사실관계 및 국가조직(organisatorisch)의 책임, 도덕적 책임을 시인하였음.

우리는 "평화상"을 전시 성폭력 및 평상시의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위한 동인(動因)으로 보고 있음.

출처 : 코리아협의회 번역 자료

7. 태평양 전쟁 중의 성 계약(램지어 논문)

태평양 전쟁 중의 성 계약

J 마크 램지어 J. Mark Ramseyer¹⁾

Harvard University, United States

번역: 박혜란

Keywords: 매춘 Prostitution, 계약된 노역 Indentured servitude

초록

위안소라 불리는 전시 매춘업소brothels에 대한 남한과 일본의 지지부진한 정치적 논쟁이 연관된 계약역학을 모호하게 한다. 이 역학은 기초 게임 이론에 매우 기본인 신뢰 가능한 “책임”이라는 간단한 논리를 반영했다. 매춘업소 업주들과 잠재적 매춘부들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i) 매춘업소는 매춘이라는 직업으로 인한 매춘부에게 미칠 위험과 평판의 피해를 상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관대한 계약구조에 신뢰할만한 책임을 맡아야 했던 반면, (ii) 매춘부에게 감시 불가능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는 동안 발휘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했다.

매춘업소 업주들의 인센티브가 미래의 수입을 과장할 수 있었음을 알고 여성들은 자신의 페이의 많은 부분을 요구했다. 목적지가 전쟁지역임을 알고서는 비교적 짧은 최대기간을 요구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기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음을 알았던 매춘업주들은 여성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구조를 요구했다. 표면상으로는 모순적인 이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과 매춘업소가 맺은 노역 계약서indenture contracts에는 (i) 큰 액수의 선금과 함께 1년에서 2년의 최대기간과 (ii)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였을 때 여성의 조기 퇴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1. 서론

1930년대와 40년대 동아시아 전역에 전진했다 후퇴하면서, 일본군은 민간 업자들을 독려하여 군 기지 옆에 반관적(半官的)semi-official 매춘업소brothel를 설치하게 했다. 1918년 성병이 시베리아 원정대를 초토화했기 때문에

1) 하버드 대학교 일본법학과 미쯔비시 교수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Harvard University. Elizabeth Berry, Yoshitaka Fukui, Il-Young Jung, Mitsuhiro Kimura, Yoshiro Miwa, Jason Morgan, Minoru Nakazato, Gregory Noble, Geoffrey Ramseyer, Jennifer Ramseyer, Frances Rosenbluth, Richard Samuels, Henry Smith, Frank Upham, 그리고 이 저널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들의 너그럽고 유익한 코멘트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를 관리해야 했다. 협력 매춘업소the cooperating brothel 업주들에 따르면, 군은 매춘부들이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신 군은 사병들의 다른 곳 매춘업소 이용을 금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춘업소의 직원을 두기 위해, 협력 업자들은 일차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고용했다. 군인들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일본 여성을 선호했다. 군인들은 비일본 직원들 가운데 한국인들을 선호했다. 한국은 일본국의 일부였고, 결국 (일본은 1910년 반도를 합병했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최소한 약간의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군은 협력 매춘업소를 위안소(ianjo)라고 불렀고 매춘부들은 '위안부'(ianfu)라고 불렀다.

계약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 매춘업소들의 직원을 두기 위해, 업주들은 어린 여성young women을 고용해야 했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매우 높은 임금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했다.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매춘은 힘들고 위험한 노동이며, 중대한 평판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 여성은 이러한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매우 높으면서 동시에 차선의 선택지보다 의미 있게 더 높은 수입을 벌 수 있겠다고 기대할 때만 이 일을 할 것이다.

먼 전시 지역의 노동이기 때문에 업주들은 도쿄나 서울 매춘업소보다 상당히 높은 페이를 약속해야 했다. 위안소는 일반적인 매춘의 노동에 전시 상황 위험이 추가됐다. 낮은 환경(외국)에서의 생활비도 추가됐다. 여성들은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에,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라고는 이들을 속이려 드는 매춘업소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매춘업소를 속이고 도주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격을 올렸다.

비록 업주들이 여성들에게 높은 임금을 약속했다 해도 높은 월급을 제공할 수만은 없었다. 이들은 감시-불가 환경에서 유쾌하지 못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고정 월급을 약속한 경우, 업주들은 접수대에서 각 여성에게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매우 유쾌하지 못한 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다. 반드시 이들은 노력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 계약서가 필요했다.

아무래도 업주들은 인센티브에 기반한 이 임금 계약에 따른 높은 임금 약속을 신뢰받아야 했다. 한 여성이 이 계약을 받아들일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한 업주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이 여성에게 확신시켜야 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잠재적 수입을 과장하는 온갖 인센티브를 이 업주가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알고 있음을 그도 알고 있었다. 몇몇 여성들은 자신이 높은 수입을 발생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였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의 경우, 여성은 자신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으로 삼아 단기간 일했을 수도 있다. 일단 이 직업에 들어감으로써 평판의 타격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전방의 매춘업소로 갈 여성들을 고용하기 위해, 업주들과 여성들은 자릿수에 따라 더 어려운 계약 문제에 직면했다. 가장 분명한 점은 여성들이 전투, 폭격, 유행성 질병 등 전쟁의 모든 위험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또한 매춘업소의 불이행으로 인한 훨씬 심각한 위험들에도 직면했다. 도쿄에서 매춘업소 주인이 계약을 속이려 하기라도 하면, 매춘부는 경찰에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이 모두 동정적이지는 않겠지만 몇몇은 그랬을 것이다. 여성은 매춘업소 업주의 불이행을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이들도 있었고, 승소했다. 매춘업소를 걸어 나와 익명의 존재가 되어 거대도시 도쿄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멀리 낮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했다. 업주들과 여성들은 여성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때, 선지급, 추가 현금 보상, 최대기간, 조기 퇴사권을 묶은 다년 노역 계약(multi-year indenture agreement)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계약들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자세히 풀어보겠다. 나는 업주들과 여성들이 협의했던 (i) 위안소용 (ii) 일본 국내 매춘업소용, (iii) 한국 국내 업소용, (iv) 일본-통치령 동아시아 전역의 위안소 아닌 전시 매춘업소 용도의 성적 서비스 계약들 비교하겠다.

먼저 일본 국내 매춘업소에서 사용된 계약 내용을 개괄하겠다. (Sec. 2.2) 이들을 한국에서 사용된 계약내용과 비교하고 일본 제국 내 다른 비공식(비-위안소) 매춘업소에서 사용한 계약내용과 비교하겠다. (Secs. 2.3, 2.4) 마지막으로 위안소에서 사용한 계약서로 돌아오겠다. (Sec. 3).

2. 전쟁 이전 일본과 한국의 매춘

2.1. 서론

위안소는 해외 군사용으로 일본과 한국의 민간 매춘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매춘업소는 고용하고 여성들은 일을 찾았다. 이런 거래는 성적 서비스와 관련 있어서 위험하지만, 매춘업소와 매춘부라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의 경제 논리에는 양측 관점에서 이해한 자원과 대체 기회가 반영되어 있다. 모집업자recruiters와 매춘업소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매춘부들도 돈을 들고 도망칠 수 있다. 매춘업소가 매춘부를 교체할 수 있겠지만 여성들도 더 낮은 임금이더라도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다. 정말 그렇다. 가끔은 부모가 딸을 팔아넘기기도 했고 매춘업소가 여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실제로 구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래에 상술한 대로)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 논리에는 매춘업소가 여성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가둘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계약 자체는 관련 여성들의 지성과 자원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매력적인 경제적 기회가 달리 없는 이들이지만 더러 있기도 했으며, 계약 조항들을 보면 이들도 자신들에게 [다른 기회가 있었음을 - 번역자 추가] 알고 있었다. 이들은 매춘이 더 나은 소득을 자신들에게 제공해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 계획보다 매춘을 선택했다. 모집업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매춘업소 업주들이 속였을 수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착취하고 여성들이 벌었을 선금을 몰래 가져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모집업자가 거짓말할 수 있고 매춘업소 업주들이 속일 수 있고 부모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아도 됨을 알고 있었다.

2.2. 일본

1. 매춘 면허증

(a) 계약은 다음과 같다. 전쟁 이전 일본에서 매춘은 면허 산업이었다. (Ramseyer, 1991). 1924년 일본에서는 50,100명의 면허 매춘부(shogi, 창기)가 11,500개의 허가받은 매춘업소에서 종사했다. (Fukumi 1928: 50-6, 178; Kusama, 1930: 14-26). 허가받은 매춘부들은 대체로 다년간 노역 계약으로 일했다.²⁾

(a) 매춘업소는 여성 (혹은 그 부모)에게 정해진 금액의 선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여성은 단기간의 (i)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기간, 혹은 (ii)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일하는 데 동의했다.

2) 자세한 내용은 Fukumi (1928: 70, 97-99, 115-16, 220), Kusama 1930: 206, 211, 283), Okubo (1906), Ito (1931: 229), Chuo (1926: 412-15) 참고.

(b) 1920년대 선금 액수는 1,000에서 2,000엔이었다. 매춘업소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

(c) 계약의 70~80%에 이르는 대부분의 계약 기간은 6년이었다.

(d) 전형적인 계약에 의하면, 매춘업소는 한 매춘부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2/3에서 3/4를 먼저 갖는다. 업소는 대출 상환금 잔액의 6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매춘부가 갖게 한다.

선지급금이 여성에게 직접 간 빈도나, 부모가 여성 대신 가져간 빈도 부모가 자기 명의로 가져간 빈도의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매춘부는 죄수가 아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도쿄 같은 도시에서 매춘부는 쉽게 매춘업소를 떠나 익명의 존재로 도시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만일 그랬다면 매춘업소는 현금 선지급금에 대해 부모를 고소했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매춘부의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이런 일이 간혹 발생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증명된 바는 없으나) 매춘부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이 일을 선택했으며, 어쩌면 매춘을 통해 -마음속으로는 - 나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b) 적용된 계약서. 실제로 매춘부들은 3년 정도 지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떠났다. 확실히 역사학자들이 가끔 주장한 대로, 매춘업소들은 분명 식비와 의복비를 조작하여 매춘부들을 영구적인 빚더미 속에서 못 헤어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대규모로 벌어지진 않았다. 아마도 매춘업소는 - 대규모 자본 투자로 설립된 제도였기 때문에 - 최초 계약에서의 사기로 이후 소개비용을 올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매춘업소는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상관없이 6년을 모두 채우고 나면 빚을 청산하고 그만둘 수 있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약속을 지켰다.

만일 매춘업소가 매춘부를 빚 속에 가두기 위해 비용을 조작하거나 기간을 속인다면, 면허증 있는 매춘부의 숫자는 적어도 30세까지 계속 있어야 했을 것이다. 면허증 있는 매춘부의 최소연령은 18세였다. 1925년 21세의 도쿄 면허증 있는 매춘부는 737명, 22세 632명이었다. 그러나 24세는 515명, 25세 423명, 27세 254명이었다. (Fukumi, 1928: 58-9).

이와 유사하게, 매춘업소들은 매춘부들을 빚으로 - 노예 상태로 - 묶어두고 있었다면 이 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지속해서 6년 이상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면허증 있는 매춘부 42,400명 가운데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도 종사한 인원은 38%며, 7%만이 6차 년도와 7차 년도에도 있었다 (Ito, 1931: 208-1; Kusama, 1930: 281). 1922년 50,000명가량의 허가증 매춘부 노동인구 중에 18,800명의 여성이 신규 허가 매춘부로 등록했고 면허를 취소 받은 이는 18,300명이었다. (Yamamoto, 1983: 388; Ito, 1931: 211-13). 다시 말하자면, 통상적인 임기인 3년과 일치하는 1/3의 노동력이 해마다 대체되었다. (Keishi, 1933: 96-8; Kusama, 1930: 227-8).

(c) 사례. 몇 가지 간단한 계산을 고려하겠다 (Keishi, 1933: 96-8; Kusama, 1930: 227-8). 1925년 도쿄에서는 4,159명의 면허증 있는 매춘부들에게 고객들이 374만 회 방문했다. 식음료비를 제외하고 이들은 1,110만 엔을 사용했다. 이 액수 가운데, 매춘부들은 31%인 340만 엔을 가졌다. 매춘부 1인당 655엔이었다. 표준적인 조건이라면, 이 매춘부는 대출 상환용으로 이 금액의 60%인 393엔이 적용되고 나머지 262엔을 가졌을 것이다. 이 매춘부는 3년 후 최초 대출금 1,200엔을 상환했을 것이다. 평균 성인 공장 임금은 (남녀 동일; 숙소 제공 안 함) 1933년 일당 1.88엔이었다. 1925년에는 일당 1.75엔, 1935년에는 일당 1.88엔이었다 (Shakai, 1936: 53; Ohsato, 1966:

68). 1924년 매춘부들은 자신의 수입을 벌기 위해 1일 약 2.54명의 고객을 받았다 (Keishi, 1933: 96; Kusama, 1930: 220-1; Uemura, 1929: 492-501). 이들은 한 달 28일 정도 야간업무를 했다 (Keishi, 1933: 96-8).

2. 계약 논리 - (a) 신뢰 가능한 책임. 면허 업종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역 계약은 신뢰 가능한 책임이라는 게임이론의 단순 논리를 반영한다 (Ramseyer, 1991).

어린 여성들은 매춘이 힘들고 위험하며 자신의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아주 잠깐 짧은 기간 후에 [아주 잠깐 일하고] 그만둔다 해도 이러한 평판의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모집업자들은 이들에게 매우 높은 임금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인센티브가 모두 과장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모집업자들의 과장된 인센티브와는 완전히 별개로 어떤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어린 여성이 매춘업소에서 일하겠다고 동의하기 전에 이 여성은 자신이 이 일과 연관된 부정적인 특징들을 보상해주기에 충분한 높은 임금을 벌 것이라는 신뢰 가능한 확신이 필요했다. 이 산업으로 들어온 데 대한 평판의 타격이 없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몇 달 일해 보면 되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짧은 시간 동안 평판의 비용을 부담했다 해도 모집업자의 주장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성들은 매춘부 한 사람 한 사람당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선불로 지급하고, 그녀가 일해야 할 연수를 제한함으로써 이 약속의 신뢰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모집업자들에게 강요했다. 만일 매춘업소가 이 여성에게 1000엔을 선불로 지불하고 최대기간을 6년으로 정했다면, 그녀는 자신이 벌어야 할 최소한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만약 그녀가 그것을 더 일찍 상환한다면 (많은 매춘부가 그렇게 했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 매춘업소는 그들의 고객을 기쁘게 하려면 매춘부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방법이 필요했다. 여성들은 감시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수행했다. 만일 매춘업소가 고정된 임금을 (6년 고정기간에 대한 최초 1,000엔 지급처럼) 지급했다면 이들에게는 고객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 만일 매춘부가 불쾌하게 해서 손님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 요청하지 않게 된다면 더욱 잘된 일이었다.

최대 6년 임기와 조기 퇴사 가능성을 결합하여, 그 매춘업소는 매춘부에게 그녀의 고객을 기쁘게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 셈이다. 더 많은 고객이 요청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많이 벌수록 빨리 그만둘 수 있었다.

(b) 대출금. 분명히 이러한 계약을 통해 매춘업소는 여성이나 여성의 부모에게 대출해주었다. 만일 그녀나 그녀의 부모가 선금으로 현찰이 필요했다면, 고용 계약으로 이를 제공했다. 19세기의 어린 유럽 남성이라면 복미로 가는 비용을 지불할 현금이 필요했다. (노역 계약의 변형인) 무인 도항 이주자 redemptioner 계약도 이러한 선금을 제공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하겠다는 그녀의 약속이 신용의 연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이 노동시장의 두 측면을 보면, 대출 요구가 성적 서비스 시장에서의 이러한 계약의 사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첫째, 다른 노동계약 중에는 계약과 함께 대출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부모가 현찰 선금이 필요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딸이 매춘업소에서 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아들은 공장에서 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고용 계약에 서명한다고 모두 큰 액수의 현찰 선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다른 고용주가 새로 고용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간혹 있겠지만 그것은 우연적이며 비교적 적은 액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둘째, 면허증 있는 매춘업소는 모든 새로운 고용에 현찰 선금을 지급했다. 일부 매춘부가 될 만한 이와 그 부모가 1,200엔의 현찰 대출을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돈은 공짜로 들어오지 않았다. 매춘업소는 명시된 이율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소득을 명백히 차감했다. 매춘업소가 신용시장[대부 사업 시장의 수요에 반응할 때 큰 액수의 현찰 선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면, 업소는 어떤 고용에는 노역 계약에 따라 냈고 어떤 고용에는 내지 않았다. 이들이 대규모 현찰 선입금을 그 외 모든 노동계약조건과 결합했다는 사실을 통해 어떤 다른 계약적 역학이 작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무면허 매춘부 - 이러한 성적 서비스 시장에서 면허증 있는 매춘부 밑에서 독자적인 무면허 매춘부들이 일했다. 이 두 범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 매춘부는 면허 있는 쪽을 선호했을 것이다. 1920년에서 1927년까지 도쿄에서 면허증을 받고 매춘에 지원했던 모든 여성 가운데 62% 만이 일자리를 얻었다 (Chuo, 1926: 381-2; Kusama 1930: 27-0, 36).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 결코 아닌, 면허 있는 매춘업소에서의 일자리는 매춘업소가 고용해줄기를 원하는 지원자 수의 절반에 이른다. 많은 무면허 매춘부들은 면허 있는 매춘업소가 고용을 거절할 여성들이었다 (Kusama, 1930: 37). 역사적 기록에는 무면허 노동자들에 대한 신뢰할만한 기록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믿을 만한 관찰자들은 1920년 중반 이들의 숫자를 약 5만 명으로 계산한다 (Fukumi 1928: 26-8, 32, 50-6, 178).

무면허 매춘부들은 명목상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 매춘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매춘업소는 평판이 발달해 있었다. 불법 무면허 매춘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로 명성이 높은 매춘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무면허 매춘부들이 버는 돈은 더 적었다. 1934년 북부 아키타현 출신의 여성 노동자 중에서, 면허증 있는 매춘부들은 연간 884엔과 숙박비를 벌었다. 술집 작부 bar-maid(shakufu; 무면허 매춘부들에 대한 이 문헌의 일반적인 완곡어법)은 518엔, 여급 waitress은 210엔, 다른 여성 노동자는 130엔을 벌었다. (Shakai, 1935: 160-1).

무면허 범주는 또한 고객들에게 더 큰 위협을 주었다. 법에 따라, 면허 매춘부들은 매주 성병 검진을 받고, 감염된 여성은 회복될 때까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었다. 1932년 일본 면허 매춘부의 3.2%가 성병이나 다른 감염성 질병이 있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무면허 매춘부의 경우는 9.7%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면허 매춘부들 사이 감염 비율이 1~3% 정도로 확인됐지만, 무면허 사이에서는 10%보다 훨씬 높은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4. 가라유키(Karayuki). - 일본 사업가들이 업무상 해외로 이주할 때 어린 여성들이 따라갔다. 외국에서 이 여성들은 일본인 고객을 상대하는 매춘부로 일했다. 일본인들은 이들을 가라유키상(Karayuki-san)(외국으로 향한 여성)이라고 불렀다 (Nihon,1920). 해외 거주 일본인 남성들 사이에서 일본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감안할 때, 이들은 현지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해외 이전 비용을 고려하면 일본 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대체로 높은 임금을 받은 셈이다(Park, 2014: 451).

해외 거주 매춘부들은 규슈 남쪽 섬이나 근처에 있는 시마바라와 아마쿠사라는 별개의 두 공동체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이 대부분 몇몇 작은 공동체 출신이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들이 이중적인 모집업자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신뢰 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속임수는 대상 청중이 무엇이 위태로운지 모를 때 효과가 있다. 어린 여성 혹은 소녀들이 작고 폐쇄적인 공동체 출신일 때 몇 년간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한다. 말이 돌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이 여행에 무엇이 수반되었는지 알게 된다.

저자 Tomoko Yamazaki (1972)는 이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아마쿠사를 여행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사키라는 이름의 연로한 이민자 매춘부와 친해졌다. 오사키는 수년간 해외에서 일했지만, 그녀에게 아버지의 억압이나 성노예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 오사키는 한 작은 마을 이미 아들과 딸을 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출생하고 몇 년이 지나 아버지가 사망했고 이어 어머니는 새 연인을 만났다. 어머니의 애인은 어머니의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버리고 그와 결혼했다. 세 아이는 작은 오두막에서 함께 살아남았고, 먹을 만한 것이면 뭐든 서로 뒤졌다. 이 마을에는 해외에서 매춘부로 일하다가 상당한 양의 돈을 벌어들여 돌아온 여성들이 있었다. 얼마 후, 언니는 스스로 해외 매춘부로 일하기 위해 떠났다.

오사키가 열 살이 되자, 모집업자가 들러 해외로 가겠다고 동의하면 선금 300엔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모집업자는 그녀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 10살이었는데도 그녀는 이 일이 무엇을 수반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에게 이 일을 상의했고 오빠가 스스로 농사를 일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로 갔고 3년간 하녀로 일했다. 그녀는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그녀의 가족은 매일 흰 쌀밥과 생선을 그녀에게 주었다. 아마쿠사에서 버림받은 세 아이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훨씬 나은 식사였다.

13살에 그녀는 이 가족을 위해 매춘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여비와 3년간의 숙식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2,000엔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조건에 따라, 고객들은 단기 체류에는 2엔, 야간 방문에는 10엔을 지급했다. 매춘업소 업주는 금액의 절반을 갖고 숙식을 제공했다. 나머지 절반 중 잔액을 갖고 화장품과 의류를 샀다. 만약 그녀가 열심히 한일다면, 그녀는 한 달에 약 100엔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사키가 대출금을 갚기 전에 주인이 죽었고, 싱가포르의 한 매춘업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녀는 새 주인이 싫었는데, 어느 날 그녀와 몇몇이 항구로 내려가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는 표를 샀다. 이 점은 중요하다: 해외에서조차도 매춘업소에서의 일이 싫은 여성은 그냥 사라질 수 있었고 그렇게 사라졌다.

오사키는 새로운 매춘업소를 찾았다. 그녀는 이 업소 주인인 부부가 좋았(고 그들은 그녀가 이전의 매춘업소에서 풀려나도록 협상했다). 그리고 부인을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지냈고, 해외 거주 영국인이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삼았다. 후에 그녀는 아마쿠사 집으로 돌아왔다.

2.3. 한국에서의 매춘

1. 현상. - 일본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이들은 고국의 면허 매춘업소와 비슷한 구조를 자신들의 공동체에 만들었다. 1910년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합병했고, 1916년 새로운 정부는 한국 전역 매춘업소에 일괄적인 면허[허가] 규칙을 부과했다. 매춘의 최소 연령을 17세로 정했고 (일본제도 the Japanese islands에서의 18세가 아니다) 정기 검진을 요구했다 (Fujinaga, 1998, 2004; Kim and Kim 2018: 18, 21).

한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면허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29년까지 1,798명의 일본인 면허 매춘부들이 한국에서 일했지만, 한국인은 1,262명뿐이었다. 일본 매춘부들은 450,300명의 고객을 즐겁게 해준 반면 한국인들은 110,700명을 기쁘게 해 주었다 (일본 매춘부는 연간 고객 252명, 한국 매춘부는 88명). 1935년까지 일본인 면허 매춘부의 수는 1,778명으로 떨어졌지만, 한국 매춘부의 수는 1,330명까지 올랐다 (Kim and Kim 2018: 18, 21; Fujinaga, 2004).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매춘부로 일했지만, 이들은 단순히 면허 구조 안에서만 한일 것이 아니었다. 1935년 한국에서 정부는 414명의 일본 여성이 술집 종업원(bar-maid)으로 일했고 4,320명이 카바레 노동자로 일했다고 보고했다 (둘 다 무허가 매춘부의 완곡 표현이다). 한국 여성 가운데 1,290명이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고 6,553명이 카바레 노동자로 일했다.³⁾

2. 계약 - (a) 가격. 면허 매춘부를 모집하기 위해, 한국 매춘업소는 일본에서와 아주 흡사한 노역 계약서를 사용했다. 그러나 가격은 한국에서의 낮은 생활 수준을 반영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1910년에서 1940년까지 일본 대 한국의 비율은 2.5 대 1.5였다. 1930년대 한국 남성은 일당 1~2엔 정도 벌었다 (Odaka 1975: 150, 153).

한국 시장 안에서, 일본 매춘부들은 한국 매춘부들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다. 일본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고객보다 부유했고 일본 고객들은 일본 여성을 선호했다. 일례로, 1926년 한국 매춘부들은 1회 지정에 3엔이 부과되었다. 일본 매춘부는 한국에서 6~7엔이었다. 고객들은 한국 면허 매춘부에게 1회 방문에 3.9엔을 썼다. 이들은 한국에 있는 일본 면허 매춘부에게 1회 방문 8엔을 썼다 (Kim and Kim 2018:26, 89, 96; Nihon yuran, 1932: 461). 1929년 (분명 더 가난했을) 한 한국 공동체에서 일본 면허 매춘부는 연간 수입 1052엔을 창출했고, 한국 면허 매춘부는 361엔을 창출했다 (Nihon, 1994).

일본인 수입이 더 높은 이유는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 매춘부들에게 주는 현찰 선금 지불이 한국 매춘부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한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Kim and Kim, 2018: 96 참고), 한국 면허 매춘부는 3년 계약에 250~300엔 (때로는 400~500엔)을 선금으로 받았고, 일본 면허 매춘부는 1,000~3,000엔을 (일본에서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다) 받았다고 한다. 다른 출처의 계산으로는 한국 면허 매춘부에게 지급한 선금이 420엔이었다면, 일본 허가 매춘부는 1,730엔을 받았다고 한다 (Nihon, 1994:63).

(b) 계약 기간. 20년대 중반 한국 면허 매춘부들은 일본에서의 경험과 일치하여 6년 이내에 일을 끝내고 이 산업을 떠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61%의 한국 면허 매춘부들은 20-25세였다. 16%만이 25세 이상이였다 (Kim and Kim, 2018: 97; see Ito, 1931: 172-94). 다른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1,101명의 면허 매춘부 중 680명이 20~24세였고, 273명 만이 25~29세였다. 1,101명 중 294명이 이 서비스 5년 차였는데 6년 차는 65명 7년 차는 17명이였다. 1924년에는 1,101명 가운데 317명이 들어왔고 407명이 그만두었다 (Michiya, 1928).

3. 해외에서의 한국인 매춘 - 일본인 가라유키(karayuki)처럼, 어린 한국 여성들도 해외로 여행했다. 잔인하게도 한국 여성들은 몇몇 상하이 매춘업소가 1932년 첫 면허 '위안소'가 되기 오래전부터 매춘부로 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 달리 말하자면, 위안소는 어린 한국 여성의 해외 매춘 실천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어린 여성들이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매춘부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다 (Fujinaga, 1998). 1929년 196명의 한국 여성들이 대만에서 면허 매춘부나 무면허 매춘부로 일했고 (Fujinaga, 2001; Taiwan, 1932), 1924년, 한국 여성 67명이 다렌(Dailin)에서 일했다(Fujinaga, 2000: 219). 추측건대, 몇몇은 일본인 고객을 모셨고 몇몇은 한국인 고객을 모셨고, 어떤 이는 중국인 고객을 모시기도 했다.

3) Chosen (1906-42), Nihongun (2020)

첫 위안소 이후 오랫동안 한국 여성들은 무면허 매춘부로 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도 했다. 역시 고객층은 다양했다. 예를 들면 1937년 텐진(Tianjin) 이민자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출신 무면허 매춘부가 81명이었다. 1938년 한 달간 한국 여성 90명이 중국 지난(Jinan)시에 가서 무면허 매춘부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달라고 (일본 통치) 한국 정부에 청원했다 (Kitashina, 1938). 1940년 한국 여성 12명이 상해 위안소에서 일했지만 527명이 무면허 매춘부로 일했다.⁴⁾

2.4. 일본과 한국에서의 모집

1. 일본. -전쟁 전 일본에 많은 개혁가가 매춘을 금지하려 했지만 실제로 어린 여성들을 유인하여 매춘업소로 보내는 모집업자들을 비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난한 마을 출신의 어린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마을을 떠나 매춘부로 일하게 되지만 어떤 모집업자나 매춘업소가 자기들을 강제로 끌고 가 이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리고 개혁가들이 많았지만, 모집업자들이 어린 여성들을 속여 매춘업소에서 일하게 했다고 불평하는 이도 없었다 (Senda, 1973: 89). 대신, 일본 개혁가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매춘부가 되었는가에 대해 비판했고 이들의 부모에 대해 비판했다. 부모들은 효과적으로 자기 딸을 매춘에 팔아넘겼다. 가고 싶지 않았다고 보고한 여성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부모는 노역 계약 우선 수집에 동의하도록 이들을 유인했다.

해외 위안소 네트워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이미 이 산업에 종사하는 매춘부만을 선발하도록 계획된 모집 규제안을 설계했다 (Gun'ianjo, 1938; Shina, 1938). 이 규제안이 내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일본 국내 개혁가들은 수십 년간 매춘을 금지하고자 싸워왔다. 돈에 눈멀고 정직하지 못한 모집업자들에 의해 순진한 어린 여성들이 상하이 매춘업소에서 다년간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 혼란을 피하려고 내무성은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Gun'ianjo, 1938; Shina, 1938):

(a) 매춘을 목적으로 여행 중인 여성들에게 승인을 인정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현재 면허가 있거나 유능한 매춘부로 일하고 있으며 목적지가 북중국과 중앙 중국인 여성으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성병이나 그 외 감염성 질병이 전혀 없어야 한다...

(b) 앞의 절에서 상세히 기술된 신분증 문서를 수령할 때, 여성은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또는 그 완료가 절대 필요하지 않을 때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c) 성매매 목적으로 여행하려는 여성은 경찰서에 신분증 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내무성은 채용담당자들에게 이미 매춘부로 일했던 여성들만 고용하라고 했다. 여성들이 그들이 동의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경찰은 각 여성이 그녀의 계약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한 여행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면접할 때 경찰은 신청자 한 명 한 명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돌아오라고 할 것을 요구했다.

4) Takei (2012: tab. 6), Zai Jokai (1938, 1937).

2. 한국. -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었다. 한국에는 대규모 전문 노동 인력 모집업자들이 있었고, 이 모집업자들에게는 속임수의 역사가 있었다. 1935년 한국 경찰 집계에 따르면 247명의 일본인 모집업자와 2,720명의 한국인 모집업자가 있었다. 확실히 이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매춘업소뿐만 아니라 공장 노동자들도 모집했다 (Nihon, 1994: 51; Yamashita, 2006: 675). 하지만 전쟁 이전 시기 신문을 보면, 모집업자의 사기는 성 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1918년으로 돌아가서 서울의 일본어판 일간지 the Japanese language daily in Seoul (Keijonippo, 1918; Senda, 1973: 89)는 “불량배들이 여성을 서울로 유인하고 온갖 수법을 다 쓴 후 그녀를 '의심스러운 식당' 중 한 곳으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불평했다. 1930년대 후반, 한국 신문들은 50명이 넘는 젊은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11명의 모집업자 단을 보도했다 (Toa, 1937). 그들은 100명이 넘는 사람을 속인 놀랄 만큼 유능한 한 커플을 보도했다. 두 사람은 부모에게 서울의 공장에서 딸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약속하고 10~20엔을 지급한 뒤 각각 100에서 1,300엔에 딸을 해외 위안소로 보냈다. (Toa, 1939; Yamashita, 2006: 675).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킨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이 사기꾼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모집업자들이 군 위안소에 관심을 집중한 것도 아니다. 대신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어린 여성들을 속여 일하게 만들어 온 한국 국내 모집업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3. 위안소

3.1. 성병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의 위안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문서들은 정부가 성병을 퇴치하기 위해 이 기관을 설립했음을 명시했다.

확실히, 다른 이유도 있었다. 강간은 줄이고 싶었다 (Kitashina, 1939). 그리고 위안소가 군대의 계급 내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1939년 북중국의 한 이상한 군대 문서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대는 성병과 싸우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했다. 정의상 위안소는 군의 엄격한 위생과 피임 절차를 따르기로 동의한 위안소였다.

일본군은 매춘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매춘부는 많았다. 어디에서나 매춘부들은 군을 따라다녔고, 아시아에서는 매춘부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대신 일본군은 건강한 매춘부가 필요했다. 1918년 군의 시베리아 원정 당시, 사령관들은 다수의 군인이 성병으로 불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⁵⁾ 1930년대에 군대가 중국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그곳에서도 매춘부들이 심하게 감염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그들의 군인들이 위안소의 고객이 되려 했다면, 그것은 최악하게 만드는 질병을 억제하는 위안소의 고객이 되고 싶었다.

5) Hatarakeru (1943), Romu (1943), Chosen (1944, 1945), Higuchi (2005: 53)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몇 가지 조치를 했다. 군은 군의 기준에 맞추겠다고 동의한 매춘업소에 면허를 내주고 이름을 위안소라 불렀다. 군은 면허 있는 매춘업소의 매춘부들이 매주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했다. 만일 이들이 감염되었을 경우, 군은 이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고객 서비스를 금지했다. 군은 모든 고객에게 콘돔을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콘돔은 군대나 매춘업소에서 무상 지급). 그리고 매춘부들에게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모든 매춘부와 고객들에게 섹스 후에 즉시 살균제로 씻도록 요구했다.⁶⁾ 그리고 그것은 군인들이 허가받은 기관 이외의 어떤 위안소도 고객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

3.2. 계약 기간

위안소는 몇 가지 수준에서 일본인 면허 매춘업소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계약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한 여성이 도쿄의 한 매춘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농촌을 떠나려 할 때, 그녀는 그 일의 위험과 가혹함과 평판의 타격을 상쇄할 만큼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싶어 것이다. [하지만] 군부대 위안소로 떠나려 했다면, 그와 다른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전투, 폭격, 전선에서 만연하고 있는 질병 등 전쟁의 모든 위험에 직면할 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또한 매춘업소 비수행성의 경우 더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 만일 도쿄의 매춘업소 업주가 속여서 계약하려 했다면 매춘부는 경찰에 호소하면 될 것이다. 전방에서는 군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아니면 어떤 경찰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도쿄에서라면 여성은 비수행성에 대해 매춘업소 업주를 고소했을 것이다. 전선에서는 그런 선택지는 없었다. 도쿄라면 그냥 매춘업소를 걸어 나와 익명의 도쿄 메트로폴리스 속으로 사라지면 그만이었다. 전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그것은 그 매춘업소가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해, 도쿄 매춘업소 계약서를 전방의 것으로 번역하려면, 변화가 요구된다. 가장 기본적인 계약상의 차이는 이것이다: 짧은 계약 기간. 전방에 있는 매춘업소에서 발생할 모든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계약은 보통 2년만 명시했다. 일본의 계약서는 전형적으로 6년을 제공했고 한국 계약서는 3년 기간이었음을 상기해보자. 버마에 있던 몇몇 한국 '위안부' 여성들은 6개월에서 1년 계약으로 일했다 (e.g., Josei, 1997: 1-19).

3.3. 계약 가격

이렇듯 단기간이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임무에 대해, 위안소는 도쿄 매춘업소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연봉)을 지급했다. 전형적으로 2년 근무에 대해 선금으로 수백 엔을 지급했다. 1937년 상하이 위안소로 모집된 일본 여성들의 샘플 계약서는 500에서 1,000엔을 선금으로 냈다 (Naimusho, 1938). 이와 비슷하게 1938년 일본 내무성 문서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600~700엔을 선지급으로 받고 상하이 위안소로 여행했으며, 2명은 300~500엔을 선지급으로 받았다고 한다 (Naimusho, 1938).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주목해보자. 훨씬 더 높은 위험성에 연루된 데 대한 보상으로 위안소 매춘부들은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한국과 일본 국내의 매춘부들은 이미 다른 고용을 통해 벌 수 있는 액수보다 상당히 더 많이 벌

6) Gunsei (1942), Shina (1942), SCAP (1945), Morikawa (1939), Mandalay (1943), U.S. Interrogation Report (n.d.), Hito gun (1942).

었다. 일본에서 6년 기간 100~1,200엔을 벌었던 점을 상기해보자. 위안소에서 일본 출신 매춘부들은 2년 기간 600~700엔을 벌었다.

3.4. 계약조건

다른 계약조건 중 일부는 전방에서의 더 큰 불안감을 반영하기도 했다. 1943년 말라야 위안소 군사규정을 살펴보자. 말라야에서의 일자리를 고려 중인 일본 여성이라면 상당히 궁금했을 것들이 있다: 도둑맞지는 않을까; 군대가 후퇴하면 내가 모은 돈을 갖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죽는다면 내 가족들이 내 돈을 찾아갈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규정에 따라 매춘업소는 매춘부의 명의로 (일본) 우편저금 계좌를 열어야 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 매춘업소는 매춘부가 벌어들인 총수입의 3%를 그 계좌로 입금해야 했다. 게다가 매춘업소는 이 여성에게 총수입의 극히 일부를 내야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여성의 미불 부채의 금액이 되었다. 1,500엔 이상의 미지급금이 더 있으면 이 여성은 수입의 40%를 받게 된다. 1,500엔 미만이면 50%를 받게 되어 있었다. 미불 부채가 없다면 60%를 취하게 된다. 이 할당량 중에서 매춘업소는 남은 빚에 대해 3/2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매춘부에게 직접 지급한다 (Maree, 1943; see also U.S. Office, 1944).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여성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버마와 싱가포르에 있었던 한 한국인 위안소 접수 직원이 몇 년간 일기를 썼다 (Choe, 2017a,b). 정기적으로 그의 매춘업소 ‘위안부’들은 기간을 만료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카코 센다Kako Senda는 ‘위안부’ 관련한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본 출신 여성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준 한 퇴역 군인을 만났다. 센다 Senda(1973: 26–27)가 그에게 질문했다.

“[선지급으로] 1,000엔을 실제로 돌려받고 자유롭게 나간 여성이 있었는가?” “오, 있었다.” 그가 대답했다. “많았다. 1연대와 함께 간 사람 중 가장 늦은 사람들조차 몇 달 만에 갚고 풀려났다.”

3.5. 매춘부 저축

매춘부가 선금 외에 번 금액은 다양했다. 계약조건 자체를 보더라도 그 금액은 매춘부가 벌어들인 수입에 달려 있었다. 학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매춘업소가 매춘부를 속였으리라는 것인데 - 당연히 그랬다. 어떤 업종에서는 사람들은 서로를 속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많은 매춘업소 업주들이 실제로 선지급으로 준 큰 금액 이상의 금액을 매춘부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다이어리의 접수 직원은 ‘위안부’들이 저축예금 계좌를 갖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그가 이들을 대신해서 정기적으로 예금한 것도 기록했다. 그리고 그가 정기적으로 이들을 대신해 집으로 돈을 보내주었고 영수증 확인 전보도 받았다고 기록했다 (KIH, 2016a; Choe, 2017a,b). 실제로 몇몇 ‘위안부’들은 벌어서 저금한 돈으로 자신이 직접 위안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 (Park, 2014: 111).

계좌를 둔 한국인 ‘위안부’들 가운데, 가장 대담하게 잘했던 이는 문옥주였던 듯하다.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KIH, 2016b):

나는 팁으로 상당한 돈을 저축했다... 나는 모든 군인이 야전 우체국의 저축 계좌에 그들의 수입을 넣는 것을 알

고, 나는 저축 계좌에 내 돈을 넣기로 했다…. 나는 군인 한 명에게 인감도장을 만들어 500엔을 계좌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금통장의 주인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노점상으로 대구에서 일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했다. 저금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대구에 있는 한 집은 당시 1,000엔이었다. 어머니에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매우 행복하고 뿌듯했다. 저금통장은 나의 보물이 되었다….

인력거를 타고 쇼핑하는 것은 재미있었다. 랑군Rangoon⁷⁾에 있는 시장에서 쇼핑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많은 보석이 버마에서 생산되었고 루비와 옥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 가게가 많았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많은 보석을 수집했다. 내가 직접 보석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다.

나는 랑군에서 유명한 여성이 되었다. 랑군에는 전선 근처보다 장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나는 많은 파티에 초대받았다. 파티에서 나는 노래를 불렀고 팁을 많이 받았다.

(참고 :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7091600073>)

3.6. 전쟁 막바지

일본 정부는 전쟁 마지막 2년 동안 한국 노동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는데, 학자들은 이 때 [일본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위안부’들을 모집했던 시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그 반대이다. 마지막 시기는 정부가 위안소의 인원을 충원하려던 때가 아니었다. 이때는 매춘부들이 매춘업소에서 나와 군수공장으로 이동하던 시기였다.

전쟁이 일본에 불리해지면서 군은 사병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1926년 240,000명의 사병이 군에 복무했다. 군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군인의 수는 950,000명까지 올랐다(1937). 1943년에는 3,580,000명, 1944년에는 5,400,000명, 1945년에는 7,340,000명에 이르렀다. 점차 군은 40세가 다된 예비군들도 소집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20~40세의 남성 중 60.9%가 군에 복무했으며, 2백만 명이 사망했다 (Watanabe 2014: 1, 8).

군대도 물자가 부족했다 (see generally Miwa, 2014). 군이 30대 예비역들을 소집해 전방으로 보내면서 광산과 공장에서 자리를 대신할 다른 예비역들이 필요했다. 일본은 (일본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젊은이들을 군대에 징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4년에 이르러서는 광산과 공장으로 많은 수의 한국인을 보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젊은 미혼 일본인과 한국인 여성들도 공장에 보내기 시작했다.⁸⁾

매춘업소는 정부의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게 못되었다.⁹⁾ 꾸준히 매춘업소와 고급 음식점은 문을 닫았다. 군대는 민간인 생산 현장에서 전방으로 모든 남성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이들을 교체하기 위해 한국 남성들을 일본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 모두 고향과 불필요한 직장에서 군수공장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7) Myanmar의 수도 양곤Yangon의 옛 이름.

8) Hatarakeru (1943), Romu (1943), Chosen (1944, 1945), Higuchi (2005: 53).

9) Senso (1943), Hanto (1944).

한국의 리벳공 로지를 생각해보자. 마이니치 신문(1944)은 부산항에서 화물을 내리는 한 여성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그녀는 외쳤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여성이라고 해서 집 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다.” 긴축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감돌고 공장으로 간 ‘위안부’들의 손실로 인해 매춘업소는 꾸준히 폐업했다.¹⁰⁾

4. 결론

일본군에는 문제가 있었다. 군은 매춘업소가 부족하지 않았다. 매춘부는 어디든 군대를 따라다녔고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의료문제가 있었다: 현지 매춘부들은 군을 약화시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병을 앓고 있었다. 군인들이 매춘업소를 자주 찾게 될 경우, 사령관은 군인들이 최소한 건강한 매춘업소에 다니기를 원했다.

그러한 목적에서 - 보다 나은 공중 보건의 아닌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은 기준에 맞는 일본과 한국의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매춘업소와 매춘부는 이 제도에 등록했다. 지정 내과 의사가 매주 검진을 시행했다. 매춘업소는 콘돔을 요구했고 매춘부에게는 이를 회피하는 고객을 거부하라고 했다. 고객과 매춘부는 모두 만남 이후에 소독제로 씻어야 했다.

계약 자체는 신뢰 가능한 약속이라는 기본적인 게임이론 원칙을 따랐다. 매춘업소 업주는 (군이 아니다) 새로운 매춘부를 한꺼번에 고용했고 대부분 일본과 한국 출신이었다. 매춘업소 업주의 인센티브가 향후 수입을 과장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급료의 상당 부분을 선금으로 받고자 했다. 매춘업소는 동의했다. 여성들은 자신이 전방으로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 봉사 기간을 원했다. 매춘업소는 동의했다. 그 결과, 인센티브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여성들은 감시받지 않은 구역 안에서 회피해야 했고, 매춘업소는 여성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조건을 원했다. 여성들은 이를 동의했다. 여성과 매춘업소 모두 선금 지급과 1내지 2년 기간을 결합한 노역 계약을 체결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여성은 자신의 임기를 다하거나 빛을 일찍 탕감하고 귀향했다.

10) Senso (1943), Hata (1992: 330, 333), Hakken (1943).

8. 램지어 논문 관련 일본 연구자·활동가 긴급 성명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위안부」부정론을 비판하는 일본의 연구자·활동가 긴급 성명

2020년 12월, 하버드대학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성행위 계약]이 국제적인 학술지 (IRLE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의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2021년 1월 31일, 『산케이신문』이 이 논문을 「『위안부』=성노예」설의 부정이라는 타이틀로 크게 게재한 것을 계기로, 램지어교수와 그의 주장이 일본,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거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타이틀과 달리, 이 논문은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이나 조선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공창(公娼)제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실질적인 인신매매였던 예창기(芸娼妓)계약에 대해서 게임이론을 단순히 적용하여, 금액이나 기간 등의 조건은, 업자와 예창기의 양자 간의 생각이 합치한 결과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램지어씨는 이 해석을 그대로 일본군「위안부」제도에 적용하였다. 전장(戰場)의 리스크를 반영해서 금액이나 기간이 바뀐 것 일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조선인「위안부」와 업자 간의 합의된 계약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주장과 함께, 조선 내의 모집업자가 여성을 속인 것은 있지만, 일본정부나 군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며, 일본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도 전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위안부」를 공창과 동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창은 인신매매된 것이 아니라, 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가운데 계약을 맺었으며, 「위안부」의 피해와 일본의 책임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논문이 전문가의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마도 일본군대사 전문가에 의한 체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가 무시된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일본어 문헌이 참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취급이 자의적인 탓에, 중요한 부분에서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주장만이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하 이 논문의 주요 문제점을 3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첫째,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공창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한일 것은 아니다. 공창제도와는 달리, 위안소는 일본군이 직접 지시, 명령하여 설치, 관리하였고, 「위안부」도 일본군이 직접, 또는 지시, 명령에 의해서 징모(徵募)하였다. 창기(娼妓)나 예기(芸妓)·작부(酌婦)였던 여성들이 「위안부」로 된 사례는, 주로 일본인의 경우는 일부 발견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공창제도와는 관계없이,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사기나 폭력, 인신매매의 형태로 「위안부」로 강제되었다는 것은, 이미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지어씨는 일본군의 주체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료(史料)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램지어씨는 자신의 논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업자와 조선인「위안부」의 계약서를 1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근거가 부재한 주장만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료 중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부분만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논문(6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미전시정보국(米戰時情報局)의 문서(1944년)에는 703명의 조선인「위안부」가, 어떠한 일을 하게될 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수 백엔에 의해서 유괴 또는 인신매매에 의해 미안마로 연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이 있지만, 램지어씨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공창제도에 대한 이해에도 큰 문제가 있다. 공창제도 하에서 芸娼妓(예창기)계약은, 실제로는 인신매매이고, 폐업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램지어씨는 여기에서 문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또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창기나 매춘부, 가라유키상을 자유로운계약의 주체처럼 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논문(4 페이지)에서는 [산다칸 8 번창관](『サンダカン 八番娼館』)을 참조하여, 「사키상」이 오빠에 의해서 업자에게 매매된 것에 대해서, 업자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든지, 그녀는 10 살이었지만 일의 내용은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램지어씨는 그녀가 현장감독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항의한 것 등, 동 문서에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것은 무시하고 있다.

셋째,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이나, 여성들을 속박하고 있던 가부장제 권력의 관점들이 결여되어 있다. 여성들의 거주, 외출, 폐업의 자유, 성행위를 거부할 자유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일본군「위안부」제도, 그리고 공창제도로도 성노예제였다는 연구의 축적은 이미 많이 되어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무시되고 있다. 법과 경제의 겹치는 영역을 다루는 학술지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내법(형법), 국제법(인도에 대한 죄, 노예조약, 헤이그육전조약(ハーグ 陸戰條約), 강제노동조약, 여성·아동매춘금지조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들은 램지어씨의 이 논문에는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논문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단 업자와 당사자 여성과의 양자관계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자의 저술이라는 것을 넘어서, 일본의 가해책임을 부정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위안부」는 공창(公娼)이었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 「위안부」는 고수입,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위안부」피해 부정론자들이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언설이다. 이번 미국 저명대학의 일본전문 학자가, 동한일 주장을 영문 학술지에 발표한 것에 의해, 그 권위를 이용해서 부정론이 새롭게 포장되어 다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논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반일」이라며 공격하는 등, 「협한」이나 배외주의에 뿌리깊은 움직임이 일본사회에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우리들은 먼저 IRLIE 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독(査読)체제에 기반해서 재심사를 한 후,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본에서 다시 확대되고 있는 부정론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실과 역사적 정의에 기반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부정론은, 일본, 한국, 북미 등 국경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나타난 일본군「위안부」부정론에 대해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연대하며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Fight for Justice(일본군「위안부」문제 web 사이트 제작위원회)

역사학연구회(歴史学研究会)

역사과학협의회(歴史科学協議会)

역사 교육자협의회(歴史教育者協議会)

출처 : Fight for Justice https://fightforjustice.info/wp-content/uploads/2021/03/FFJ_KOREAN_20210327.pdf

9.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 전문가 위원회 권고

(4) 2000년 제1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2001년 총회보고)

1. 본 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회기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협약의 적용에 대해 고려하여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 즉 종군 “위안부” 문제와 기업에 의한 전쟁 중 강제근로 문제가 그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번 조사 이후 근로자 조직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이 사건을 더 상세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다수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동시에 본 사안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개선하는 (일본)정부의 상당수의 답변이 있음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2. (일본)정부의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전쟁과 관련한 배상, 재산의 문제와 청구권의 문제를 관련 정부와 이미 해결하였다는 점과,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이러한 문제에 속한다는 점을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밝혀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ILO에 의해 협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중국, 대한민국, 미국 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쌍무적 평화조약 기타 관련 조약 및 합의를 들고 있는데, 이들 조약 등은 이러한 국가의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별적 청구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다수의 관련 국가에 대해 상당한 개발 원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죄표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ILO에서 현재 심의대상으로 하기에는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번이 전문가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연합(Rengo)도 일본 정부의 보고를 지지한다.”는 것과 “연합은 전문가위원회가 이들 사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한 연합의 2000년 10월 20일자 서한도 들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보상 문제가 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법률의 문제로서는(as a matter of law)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이 주제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방대한 의견을 계속 다루는 것, 보상을 위한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전개에 유의하는 것, (일본)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to do so again) 불필요하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아래에 기술하는 근로자조직의 의견에 더하여 전일본조선 기술노동동경지역평의회(東京地評)로부터 2000년 11월 1일자 서한에 의한 의견도 접수하였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 서한은 희망한다면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전달하였고 그러한 코멘트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 조사할 것입니다.

I. 전쟁 “위안부” (Wartime "comfort women")

5. 종전 권고에서 본 위원회는 제차 세계대전 이전 및 그 기간 중 소위 군 “위안소”에 억류되어 군대에 대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와 성적 학대에 관하여 유의하여 왔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행위는 (강제근로금지) 협약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한 수인할 수 없는 침해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 구제는 (강제근로금지)협약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일본)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여 왔고, 또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일본)정부가 할 것을 본 위원회가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왔다. 1998년 기준적용에 관한 총회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본 사건이 총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일본)정부는 노동조합, 관련 여성의 대표적인 조직 및 다른 정부와 함께 만나 희생자의 대부분의 기대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본 위원회는 유의하고 있습니다.
6. 본 위원회는 또한 종전 권고에서 (일본)정부가 다음을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보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국민의 속죄를 완수하고, 관련 여성에 대해 기금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설치된 “아시아여성기금”(“Asian Womens Fund”(AWF))에 대하여 최대한의 가능한 지원을 (일본)정부가 제공하겠다고 (일본)정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희생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의료 및 복지 원조를 제공하여 왔다는 (일본)정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는 유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조직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희생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의 사죄도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여성기금은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기금에 기한 원조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170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 조직은 아시아여성기금의 원조를 대부분의 관련 여성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7.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몇 근로자 조직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0년 9월 8일 서한에서 전쟁 중 성노예의 문제에 관한 UN인권소위의 입장, 특히 제도적인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Gay McDougall 보고서(UN doc. E/CN.4/Sub.2/2000/21)에 관한 정보와 2000년 UN소위에 의해 채용된 동일 문제에 관한 결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른 조직에 의해서도 유사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하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동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일본에 대해 다루기는 하였으나, 결의는 일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장래의 그리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는 점을 (일본)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현재 결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의 권리·의무와 개인의 권리·의무는 조약 평화협정 특사 또는 기타 어떠한 수단에도 의해서도 국제법의 문제로서(as a matter of international law), 소멸될 수 없다”고 한 초기의 특별보고에 근거한 결의(UN document E/CN.4/Sub.2/RES/1999/16)에서 표명된 견해를 유의하고 있습니다.
8. 또한 두 개 노동조합은 전쟁 “위안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 법정에 계류 중인 8건의 소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종전 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1998년 4월 山口地裁關西支裁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대하여 3명의 원고에 대하여 정신

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지만, 1998년 5월 廣島高法에 항소되었고 현재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최초 판결에서 판결이유로 하고 있는 논리는 1999년 8월 다른 소송에서 동경고법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노동조합이 언급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세 사건은 하급심에서 정부에 유리하게 결정하였고, 다섯 개 소송은 여전히 지방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이들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9. 다른 의견에서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the Netherlands Trade Union Confederation (FNV))은 1999년 11월 23일자 서한에서, “일본명예배상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에 의해 제공된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그 정보는 근로자조직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다루는 관행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항상 간주하여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의 문건은 “위안부”로 강요받은 네덜란드 국적의 여성에 대한 보상을 일본이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답변에서 네덜란드에서 전쟁 “위안부”의 인정이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아시아여성기금은 “관련되는 네덜란드 국민과 협의하여” 예컨대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네덜란드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2000년 2월 21일 일본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네덜란드수상이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 본 위원회는 상당수의 청구와 행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다수의 청구권자들이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관련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하여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할 것을 본 위원회는 희망한다.

II. 전시에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근로(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ur)

11.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시 공장에서 근로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강제 징용한 것이 (강제근로금지협약에 위반한다고 본 위원회는 이미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그 답변에서 제차대전 이후의 조약에 의해 그리고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과에 의해 모든 법적 청구권이 해결되었으며, 더 이상의 개별적인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미국을 포함한 몇 개국 정부와 이에 관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소송이 계류 중이며 7건은 한국인에 의해, 7건은 중국인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 의한 2건과 중국인에 의한 2건에서 하급심은 (일본)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다른 10건은 지방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한국인이 제기한 3건의 다른 소송은 징병과 관련한 회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 외 화해되었습니다.
12. 그러나 본 위원회는 회기 중에 계류 중인 사건 중 하나가 화해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지마社는 전쟁 중 하나오카 동광산에서 사망한 강제 징용된 중국인 노무자의 유족과 친척에 대한 보상으로서 5억 엔(약 4

백십만달러)의 기금을 중국적십자에 기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이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회사에 대한 유사한 소송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3. 본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한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이 이전 전시 노예적 노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받은 유럽과 북미 정부 및 기업의 반응과 (일본)정부 및 일본 기업의 반응을 비교하였던 것에 유의한다. (일본)정부는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배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이한 국가에 의해 취해진 행동을 단순하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종전 후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상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방법에 의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는 지적한다.
14.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 관동지역평의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의견을 1999년 10월 1일자 서한에서 제출하였습니다. 關東地評은, 캘리포니아주는 1999년 6월 2차대전시 강제근로 희생자들에 대하여 제소기한을 연장하는 입법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답변에서 일본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하는 완전한 합의를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미국인 전쟁포로 중 일부가 일본 기업 및 미국의 그 자회사에 대해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년 9월 21일 북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 샌프란시스코지원은 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그 국민에 의한 일본에 대한 모든 보상소송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고 (일본)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소송에 대한 정보도 접수하고 있으나,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동지평은 전시 강제근로에 의해 혜택을 받은 일본 기업, 또는 그 승계기업에 대한 소송 중 일부는 기업에 의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화해되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15. 태국과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강제근로에 대한 인도네시아 유족에 의한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이 문제도 인도네시아정부와의 포괄적인 평화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전투기 제조공장에서 일본법령이 적용되던 대만에서 8,000명 이상의 아동이 강제 징집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는 대만 당국과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교섭하였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 군대에 복무한 대만인 군인 및 민간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입법에 의해 “위로금”(“condolence money”)을 지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6. 위에서 거론한 정보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종전 포로 및 기타의 사람들은 국가 간 평화조약이나 기타 협정에 의해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였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점, 다양한 법정에서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희생자들의 나이와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여 (일본)정부가 희생자 및 (일본)정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의 청구권에 대해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표명한다.

출처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http://www.archive814.or.kr/ViewerJS/web/viewer.html?file=%2Fattachment%2F838%2F13764.pdf>

10.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 UN경제사회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6)

전쟁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목 차

	문 단
머리말	1 - 5
I. 정의	6 - 10
II. 역사적 배경	11 - 44
A. 총론	11 - 22
B. 징집	23 - 31
C. 위안소 상태	32 - 44
III. 특별보고관의 조사방법 및 활동	45 - 51
IV. 증언	52 - 65
V.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66 - 76
VI.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77 - 90
VII. 일본 정부의 입장	91 - 124
IX. 도의적 책임	125 - 135
X. 권고	136 - 140
A. 국가적 차원에서	137
B. 국제적 차원에서	138 - 140
부록: 특별보고관 임무 중 참고한 주요 인물/조직 목록	

머리말

1.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초대를 받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광범위한 틀 속에서 전시하 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그 원인 및 결과를 심층 연구하기 위해, 1995년 7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서울을, 1995년 7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도쿄(東京)를, 각각 방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를 받아, 특별보고관은 같은 문제에 대해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평양도 방문하려고 했다. 그러나, 1995년 7월 25일자 편지에서 동 정부에 연락한대로, 특별보고관은, 항공편 연결이 지연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2. 같은 편지에서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영남 외교부장에게,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평양을 예정대로 방문하여, 특별보고관을 대신하여 수령한 상세한 모든 정보, 자료 및 문서를 특별보고관에게 전해준 인권센터(Centre for Human Rights)의 대표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보증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쌍방에게 편리한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1995년 8월 16일자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인권센터의 대표에게 건네준 정보, 자료 및 문서를 주의깊게 연구하고 고려해 줄 것을 바란다 고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유연한 태도와 협력에 감사드린다.
3.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및 일본 정부의 협력과 원조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양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입수하고, 관계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4. 방문해서 정부대표 및 NGO대표와 협의를 통해 상세한 토론을 할 수 있었고, 또 전시하군 성노예제의 여성피해자와 면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의 요구와 관계 정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 특별보고관은 어떤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이고, 당면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지금 취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5.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주제에 관한 논의가, 조선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위안부” 피해자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별보고관은 재정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관계국의 생존피해자를 방문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I. 정의

6. 특별보고관은, 전시하 군대에 의해 또는 군대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제당한 여성의 사례를 군 성노예제의 관행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서 밝혀두고자 한다.
7.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도쿄 방문 중에 표명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26년의 노예제협약(Slavery Convention) 제1조 (1)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붙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라고 정의되는 “노예제”라는 용어를, 현행 국제법의 조항 아래에서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8.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위안부”의 관행은, 관련 국제인권기구 및 제도에 의해 채용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의 명백한 사례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소수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1993년 8월 15일의 결의 1993/24에서,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송부한 전시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의 강제노동의 형태에 관한 정보에 유의하고,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심층 연구를 하도록, 소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에게 의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위원회는,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보상 및 재활의 권리에 관해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정보 - “위안부”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를 이 연구를 준비할 때 고려에 넣도록 요청했다.

9.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제20회기에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여성의 성노예”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환영하면서, 일본 정부가 행정심사회를 설치함으로써 “노예와 같은 처우”에 유사한 관행을 해결하도록 권고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10. 마지막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관해, 특별보고관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위원, NGO대표 및 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견해, 즉 “위안부”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전시에 강제 매춘과 성폭력을 겪으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 즉 연일 거듭되는 강간과 심각한 육체적 학대와 같은 고통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훨씬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

II. 역사적 배경

A. 총론

11. 일본군들에게 현지에서 매춘을 제공하는 소위 “위안소”의 설립은 상해에서 중국과 일본간에 적대감이 심화되어 가던 1932년 초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년이 채 못되어 소위 “위안부”의 활용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는 일본이 점령한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그러했다. 최초의 군 성노예들은 일본 북큐슈 지역에서 온 조선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육군의 한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나가사키현 지사가 보냈다.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12. 1937년 일본의 제국육군이 폭력적으로 남경을 점령했을 때, 일본 당국은 군대의 규율과 사기의 상태를 고려해야 했다. 이때 원래 1932년에 도입되었던 위안소 계획이 다시 등장했다. 상해 특수부대는 1937년 말까지 장사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군부대의 성접대를 목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을 손에 넣었다.

13. 이 여성들과 소녀들은, 육군에 의해 직접 운영된, 상해와 남경 사이에 위치한 위안소에 고용되었습니다. 이 위안소는 훗날의 위안소들의 전형이 되었고, 이 위안소의 사진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규정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군이 위안소를 직할운영한다는 이 위안소의 운영방식은, 이 현상이 더 확산되면서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는, 위안소의 기본적인 형태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민간인들은 충분히 있었다. 육군이 이들에게 군인에 준하는 신분과 계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군은 수송과 위안소의 전반적인 감독에 대한 책임을 계속 가졌으며, 위생과 전반적인 관리는 군의 책임이었다.
14. 전쟁이 계속되고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 성노예에 관한 수요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집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아시아의 다수의 지역에서, 특히 조선에서 사기와 폭력의 빈번한 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스스로 '위안부'였음을 밝힌 다수의 한국 출신 "위안부"의 증언은, 강제와 사기가 빈번하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피해 여성들(대부분 한국 출신이다)은 증언을 통해, 자신들의 징집에 책임이 있는 여러 업자와 현지 협력자가 일삼은 사기와 감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5. 1932년(정확하게는 1938년임 - 필자)에 통과되었지만 전쟁 말기까지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국가총동원법이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전쟁수행에 복무하도록 동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겉으로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기타 전쟁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군을 보조하는 전쟁관련 업무를 담당할 여성들을 손에 넣기 위한 제도로서 여자정신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실에 많은 여성들이 기만당해 군 성노예가 되었고, 정신대가 매춘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6. 결국, 일본인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강제라는 방법으로 군의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보다 많은 여성들을 조달할 수 있었다. 많은 수의 여성희생자들은 딸의 납치를 막으려고 했던 가족들에게 자행된 폭력에 대해 증언한다. 어떤 경우에는 군인들이 강제로 끌고가기 전에 그네들의 부모 앞에서 강간을 자행하기도 했다. 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여복실이라는 희생자는 다른 많은 소녀들처럼 집에서 붙잡혔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끌고 가는 것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
17. 위안소의 지리적 위치는 전쟁이 진행된 경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소들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었던 듯하다. 한편 "위안부"들에 대한 착취는 심지어 일본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이곳에서는 공장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군데 위안소가 세워졌다.
18.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위안소는 중국·대만·보르네오·필리핀·태평양의 많은 섬들·싱가포르·말라야·미얀마·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안소라는 제도의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었던 친척이나 친지들 또는 위안소의 운영 초기부터 그 전모를 기억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 위안소의 사진들과 심지어 여러 정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위안부" 자신들의 사진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일본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위안소의 규정에 관한 많은 다양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징집 방법을 증명할 만한 것을 담고 있는 기록은 거의 없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부터 남아 있

는 자료들로 널리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단순히 하나의 유흥시설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매춘 제도의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상해와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및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 필리핀에 있었던 위안소들을 위한 규칙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생에 대한 규칙·이용 시간·피임법·여성에 대한 요금·술과 무기의 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이 엿보인다.

20. 이러한 규칙들은 전후에 남은 문서들 중 가장 범죄의 성격이 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얼마만큼 위안소라는 기구의 모든 면에 군이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는지를 의심의 여지없이 드러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대가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린 위안소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설치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위안부”들이 제대로 대우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술과 무기의 금지, 이용 시간의 규정, 적당한 요금, 기타 공정한 취급인 듯이 보여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실제로 벌어진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실상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군 성노예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가 지녔던 기상천외한 비인간성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데에만 기여할 뿐입니다. 이 제도 속에서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흔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속된 매춘에 몸을 내맡기도록 강제당했던 것입니다.

21. 전쟁의 종식도 그때까지 사역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위안부”들을 구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퇴각하는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자신의 운명에 내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보면, 일본군이 하루밤 사이에 70명의 “위안부”들을 살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안부’들이 진주하는 미군들에게 포로로 잡힐 경우 거추장스러운 존재나 당혹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2. 최전선에 배치되었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군인들과 함께 자살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로 군사작전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스스로 연명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집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으며 “적군”의 손에 의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였다. 많은 여성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돈도 거의 없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 중 그들이 “번”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닐라의 경우와 같이, 소개(疏開)되었던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런 여건과 식량 부족 때문에 죽었다.

B. 징집

23.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전쟁기간 중의 군 성노예 징집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잔존하거나 공개된 실제의 징집 과정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안부” 징집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들은 피해자들 자신의 구술 증언에서 나온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삽화로 치부하여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본질적으로 사적이며, 따라서 민간인이 운영한 매춘이라는 제도에 정부를 연루시키려고 꾸며낸 것으로 치부하여 거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징집 방법이나 여러 차원에서 군과 정부가 명백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동남아시아의 극히 다양한 지역 출신의 여성들의 설명이 일관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군과 정부의 공식적인 관여범위에 대하여 그렇듯 유사한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전혀 찬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 일본군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던 최초의 위안소는 1932년 상해에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에 대한 공식적인 관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상해 침공작전의 지휘관 중 한 명인 오키무라 야스지 중장은 자신이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 설립의 제안자였음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백했다. 당시 일본군이 강간 사건을 대단히 많이 일으켜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가사키현의 지사가 일본 내 조선인 사회에서 많은 수의 조선인 여성들을 상해로 보내도록 했다.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이송되었다는 사실은 군뿐만 아니라 내무성도 이 문제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내무성은 현의 지사들과 훗날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데 군과 협조하여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찰을 관장했기 때문입니다.
25. 1937년 남경 강간 이후 일본인들에게는 군의 규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위안소 설치” 계획이 다시 등장했다. 당시 기타큐슈의 동한일 지역으로 중개인들이 파견되었는데, 유곽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 소녀들에게 걸으려는 군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을 소개한다는 속임수를 동원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러한 일 대신에 상해와 남경 사이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군 성노예로서 일하게 되었으며, 이곳이 장래의 위안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26. 전쟁 후반기에 들어서는 군은 이 일에서 손을 떼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군요원들이 요청을 했거나 자기주도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이들이었다. 군이 매춘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고, 민간업자의 시설이 군을 위해 더 “어울린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징집 행에서 관리들의 책임이 점차로 늘어났다. 물론 민간업자들이 관련된 정도와 위안소 설립을 시작하는 일에 실제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양했다. 일본 당국은 최근까지도 강제징집과 속임수에 관해 자신들이 수행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징집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군 성노예로 삼은 여성들을 확보한 과정에 대한 정보는 주로 피해자들의 설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27.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들은 전 “위안부”의 이야기 속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며, 납득이 갈만큼 분명한 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세가지 유형의 징집방법이 확인된다. 이미 매춘부였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한 경우, 식당이나 군인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는 보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속임수로 여성들을 모집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납치 방법인데 이것은 일본 점령하의 국가들에서 행해진 노예사냥과 같은 것이었다.
28. 여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군을 위해 일하는 민간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협조하여 일하고 있던 조선의 순사들도 마을로 와서 보수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며 처녀들을 속이곤 했다. 1942년 이전의 수년간은 조선의 순사들이 마을에 와서 “여자정신대”를 모집했다. 이것은 곧 이 과정이 일본 당국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과정이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소녀들의 “자원자” 추천이 실패하면, 헌병대가 그 원인 조사에 나섰다. 사실 “여자정신대”는 일본군이 조선 내의 지방 친일파들과 순사들을 이용하여 지역의 소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거짓 명목으로 “전쟁 노력에 동참”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29. 그래도 여성들이 모자랄 경우, 일본군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무력과 사냥을 일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딸의 납치를 막으려는 가족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1938년에 통과되었으나 1942년 이후 한국인들을 징집하는 데에만 이용되었던 국가총동원법의 시행 강화로 인해 가능했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징집과정에서 폭력과 강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시 중에 저질러진 인간사냥의 실행자이기도 했던 요시다 세이지는, 자신의 책에서, 국가총동원법의 일부분인 노무보국회에서 다른 조선인과 함께 1천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위안부”로 징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 문서화된 자료들은 관리들과 지주들의 딸들은 징집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이 가족들이 지역 주민들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잡혀간 소녀들은 아주 어렸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14세에서 18세로, 학교 제도 역시 이 소녀들을 징집하는데 악용되었습니다. 현재 군 성노예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윤정옥 교수의 경우는 다행히도 부모의 배려로 학교에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같은 방법이 성병에 감염되지 않은 취학연령의 처녀들을 징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1. 그들의 어린 나이와 순진함 때문에, 소녀들은 그들에게 제공된다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강제 이송에 대해 항의할 수도 없었으며, 많은 경우 그들은 매춘이나 성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던 학교 선생님들과 순사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 징집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의해 더 가중되었습니다. 더욱이 매춘에 붙어 다니는 오명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정신대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다른 소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무시무시한 경험들을 숨기느라고 고심하며 사회에 재통합되었습니다.

C. 위안소 상태

32. 전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일본군의 노예로 살았던 상황은 아주 끔찍했었다고 한다. 그들의 숙박과 전반적인 처우의 질은 장소에 따라 달랐으나,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들은 고통스럽고 잔혹했던 자신들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안소 자체는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진주하는 일본군들이 점거한 건물인 경우도 있었고 “위안부”의 수용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군인들이 지은 임시 구조물인 경우도 있었다. 전방에서 위안소는 대체로 텐트이거나 임시 목조 오두막이었다.
33. 위안소는 주로 가시철조망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철저히 차단, 감시되었습니다. “위안부”들의 동태는 가까이서 감시되었고 제한을 받았다. 많은 여성들은 절대로 병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의 정해진 시간에는 밖으로 걸어다닐 수 있었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거나 어떤 경우에는 영화를 보러 가끔씩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이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탈출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로 불가능했다.
34. 위안소는 일반적으로 일층 또는 이층짜리 건물로 밑에는 식당이나 접수대가 있었다. 여자들의 방은 주로 위층이나 뒤쪽에 위치했고, 뒤틀리고 협소한 침실로 약 0.9m×1.5m 넓이의 침대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그런 조건 속에서 “위안부”들은 매일 60명에서 70명의 남자들을 받아야 했다. 어떤 전방에서는 여성들이 마루 위에 매트리스만 깔고 자야 했으므로 무시무시한 냉기와 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방들은 많은 경우 다다미나 명석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차폐물들이 마루바닥까지 닿지 않았으므로 방과 방 사이에 소리가 모두 들렸다.

35. 전형적인 위안소는 민간업자에 의해 관리되었고, 여자들은 일본인이거나, 때로는 조선인 여성들이 관리했다. 그들의 건강 검진은 군의관들이 했으나, 많은 ‘위안부’들의 기억으로는, 그들의 정기 검진은 단지 성병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군인들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담배불로 지진 상처, 멍, 총칼에 의한 자상, 부러진 뼈 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더욱이 이 여성들의 휴식시간은 거의 없었다. 현재 남아 있는 다수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시간도 아무 때나 찾아오거나 오래 머무는 장교들에 의해 흔히 무시되곤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여성들은 다음 손님이 오기 전에 씻을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36. 음식과 옷가지는 군에서 제공했다. 그러나 전 “위안부”들 중 몇 사람은 오랫동안 음식이 항상 부족했다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그들의 “봉사”의 대가로 돈을 지불 받도록 되어있었고, 돈 대신에 받은 군표를 모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조금이나마 “번 돈”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극히 적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 돈을 모아서 자신이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던 작은 희망도 일본군이 퇴각한 이후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37. 많은 전 군 성노예들의 증언에는 성적 학대에 의한 뿌리 깊고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 외에도 노예 상태에서 받은 고통스러움과 잔혹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자유가 없었고, 군인들에 의해 폭력적이고 야만스럽게 대우를 받았으며, 위안소 운영자와 군의관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전방에 가까이 있었던 이들은 공격과 폭격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 또한 위안소를 빈번하게 출입하던 군인들을 더욱 잔인하고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38. 또한 성병과 임신에 대한 항상적인 공포가 있었다. 대다수의 “위안부”들은 성병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이들에게는 회복기가 주어졌으나, 다른 때에는 심지어, 생리 중에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한 여성 피해자는 특별보고관에게 군 성노예로 일할 때 여러 차례 성병에 감염되었던 탓에 전쟁 후 정신박약아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여성 피해자들이 느꼈던 깊은 수치심과 함께 그들은 자살하거나 탈출을 기도하였는데, 그 같은 시도의 실패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9. 역사적 자료들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은, 서울과 도쿄 방문 중 역사학자들을 만나서 위안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군 성노예의 목적으로 여성들이 어떻게 징집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요청했다.

40. 특별보고관은 도쿄 치바대학의 하타 이쿠히코 박사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역사 연구들, 특히 제주도에서의 “위안부”들의 참상을 기술하고 있는 요시다 세이지의 책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에 주목했다. 하타 박사는 설명하기를 자신이 1991 / 92년에 증거 수집을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했었는데, “위안부’ 범죄”의 주범은 사실상 조선의 유지들이거나 포주 그리고 심지어 소녀들의 부모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는 처녀들의 부모들도 자기네 딸을 동원해 가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타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위안소를 위해 조선인 여성을 징집한 두 가지 모델을 특별보고관에게 제시했다. 두 가

지 모델 모두 조선인 부모들과, 조선인 이장들 그리고 조선인 중개인들,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군 성노예의 모집책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타 박사는 또한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평균적인 군인 월급(15 - 20엔)보다 110배 이상을 (1000엔 - 2000엔)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41. 특별보고관은 또한 도쿄 주오(中央)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 역사학 교수도 만났다. 그는 조선인 “위안부” 모집을 위한 명령이나 규정들이 일본군 당국에 의해 또는 일본군의 승인 아래에 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본 제국군대의 문서 사본들을 특별보고관에게 제공했다. 요시미 교수는 또한 특별보고관에게 원본문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 주었는데, 그의 주장은 사단이나 연대의 후방참모나 부관이 파견군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헌병을 통해 점령지의 이장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에게 명령을 내려, 군 성노예로 일할 지역의 여성들을 징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42. 위안소 설립 과정에서 일본 제국군대의 명백한 참여와 책임성을 예증하기 위해 요시미 박사는 여러 가지 문서들에 언급했다. 그 중에서 특별보고관은, 일본육군의 광둥 주둔 제21군에 관한 진중일지(1939년 4월 11일 - 21일)를 예로 들고자 한다. 여기에는 군장교와 병사들을 위한 군대 매춘굴이 군 통제 하에 운영되었고, 약 1,000명의 “위안부”들이 10만명의 그 지역 군인들을 상대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전달받은 유사한 다른 문서들에서도 육군성의 지시를 근거로 하여 “위안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체계는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 규제와 같은 사항들을 다루고 있었다.
43. 또한 특별보고관은 성노예를 징집하는 또 다른 잘 알려진 수법으로 각 파견군이 조선으로 상인들을 보내어 헌병과 경찰의 협조나 지원을 받아 군 성노예로 조선인 여성들을 모으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 상인들은 주로 군본부가 지명했거나 또는 사단이나 여단, 연대가 직접 지명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미 교수는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가 모든 공식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며, 공식문서들이 방위청이나 법무성, 노동성, 후생성, 대장성의 공식 문서보관소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집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44.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특별보고관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에 진상을 조사하는 일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며, 전쟁 중의 군 성노예와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하는 소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특별보고관의 조사방법 및 활동

45. 특별보고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방대한 정보와 문서들을 정부 및 민간 조직들로부터 받았다. 여기에는 이 사실 규명 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자세히 연구되었던 여성 피해자들의 문서화된 증언들도 있었다. 이 분야에 관련된 임무의 주요 목적은 이미 있는 자료들을 입증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인터뷰하고, 그 완전한 정보들을 근거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 상황 및 그 원인과 결과를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개선시키기 위한 건의안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46. 이 임무 수행 기간 중, 특별보고관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현재의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구제를 제안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했다.
47. 평양 (1995. 7. 15 - 18) : 인권센터 대표단은 방문 중 김영남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 외교부 고위 관리들, NGO와 학계, 언론계의 대표들로부터 자료와 문서들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또한 4명의 군 성노예 피해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48. 서울 (1995. 7. 18 - 22) :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 중 공로명 외무부 장관의 영접을 받았으며, 또한 외무부와 정부 2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학자들, 의회 및 여러 민간기구 대표들과도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13명의 전 “위안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 중 9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49. 도쿄 (1995. 7. 22 - 27) : 특별보고관은 일본 방문중 이가라시 코조 내각관방장관을 만났으며, 또 총리부, 외무성, 법무성의 고위관리와 국회의원과도 만났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NGO와 여성단체의 대표와도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제일 전 조선인 “위안부” 한 명과 일본 제국군대의 병사였던 사람의 증언을 들었다.
50. 특별보고관은 조사활동 중 만났던 주요 인물의 명단을 이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51.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일본 정부의 의견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향후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가 특별보고관이 만날 수 있었던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 즉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의 여타 모든 전 “위안부”들을 대변하여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자신들의 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50년 전 자신들에게 자행되었던 만행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생존 여성피해자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IV. 증언

52. 우선, 특별보고관은, 그것이 분명 그들의 삶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되새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증언을 특별보고관에게 이야기 해주었던 모든 여성 피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엄청난 정서적 긴장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준 이 여성들과의 만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53. 이 보고서의 제한된 분량으로 인해, 특별보고관이 세 나라에서 들었던 16명의 증언 중 몇 가지만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그들의 모든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로 인하여 특별보고관은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증언들은 군 성노예라는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예증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별된 것들이며,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군 성노예제가 일본 제국군대 지도자들에 의해, 그들이 알고 있었으며 체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는 믿음에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54. 현재 74세인 정옥선의 증언은 일본 제국군대의 병사들에 의한 성폭행과 일상적인 강간에 더하여 특별히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잔혹하고 잔인한 처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1920년 12월 28일 조선 북부의 함경남도 풍산군 파발리에서 태어났다.

내가 13살 되던 6월 어느 날, 나는 밭에서 일하는 부모님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물을 길러 마을의 우물가로 갔다. 그곳에 한 일본군이 갑자기 나타나 나를 끌고 갔다. 그래서 나의 부모들은 자기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나는 트럭에 실려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 곳에서 여러 명의 경찰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내 입속에 양말을 틀어넣고 나를 계속 강간했다. 내가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우두머리가 내 왼쪽 눈을 때렸다. 그 날 나는 내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약 열흘 후, 나는 해산시의 일본 주둔군 막사로 끌려갔다. 그 곳에는 약 4백명의 나와 같은 조선인 어린 소녀들이 있었고 우리는 매일 성노예로 5천명의 일본군 - 하루에 40명에 달하는 남자들을 상대했다. 매번 나는 반항했고, 그들은 나를 때리거나 내 입속에 냅마조각을 틀어넣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항을 그칠 때까지 내 음부에 성냥개비를 대었고 음부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조선인 소녀가 한번은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매일 40명씩의 남자들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항했다. 그녀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그녀를 처벌하기 위해, 일본군 중대장인 야마모토는 그녀를 칼로 치라고 명령했다. 우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손과 다리를 묶어서 못이 박혀있는 판 위에서 그녀를 굴렸다. 못들이 그녀의 피와 살점들로 뒤덮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녀의 목을 잘랐다. 다른 일본인, 야마모토는 ‘너희들을 죽이는 것은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조선년들이 못 먹어서 울고 있으니까 이 인육을 끓여서 먹게 해주라’고 말했다.

한 조선인 소녀가 너무 자주 강간을 당해서 성병에 걸렸다. 그 결과 50명의 일본군인들이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병의 전염을 막고 그 조선인 소녀를 ‘소독’하기 위해 그들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그녀의 음부에 찔러 넣었다.

한번은 우리들 중 40명을 트럭에 태워서 멀리 물과 뱀이 차있는 웅덩이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소녀들 몇 명을 때리고 물 속으로 밀어 넣고 흙을 덮어서 살아있는 채로 매장했다.

아마도 그 주둔군 막사에 있던 소녀들 중 반 이상이 살해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두 번 도망을 시도했지만, 두 번 모두 며칠 후 우리는 잡히고 말았다. 우리는 더욱 심하게 고문을 당했고 나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직까지 그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 입안과 가슴, 배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겼다. 나는 기절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산자락에 버려져 있었다. 아마도 죽은 것으로 알고 버렸을 것입니다. 나와 두 명의 소녀들 중, 국혜와 나만 살아남았다. 그 산에 살고 있던 어느 50대의 남자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우리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나는 5년간 일본군 성노예로 살다가 18세에 상처 투성이에 불임여성이 되고 언어장애 상태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55. 77세인 황소균의 증언은 많은 젊은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몰아넣었던 징집과정의 속임수 방법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1918년 11월 28일 하루벌이 노동자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우리는 평양시 강동군 대리 노동자 지역에서 살았다.

1936년 내가 17살때, 마을 이장이 우리집에 와서 공장에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보수 좋은 일자리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약 20명의 다른 조선인 소녀들이 태워져 있는 일본 트럭에 실려서 기차역으로 보내졌다. 그 곳에서 우리는 기차에 태워지고, 다시 트럭에 태워져서는 며칠을 달려서 중국의 목단강 강가의 큰 집에 도착했다. 나는 그것이 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곧 그곳에는 공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소녀들은 모두 잠잘 짚더미 하나씩이 있는 작은 방에 배치되었고, 그 방의 문에는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이들을 기다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이 칼을 차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내말에 복종할테냐, 말테냐?’ 그리고는 내 머리채를 끌고는 바닥에 나를 팽개치고는 나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했다. 그는 나를 강간했다. 그가 나가자, 밖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20-30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그들은 모두 나를 강간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15명에서 20명의 남자들에게 당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의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병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살해되어서 모르는 장소에 매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 옆 칸으로 한 새로 온 소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저항하려고 했고 그들 중 한 명의 팔을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당으로 끌려가서 우리들 모두 앞에서 칼로 머리가 찢리고 몸뚱이도 조각조각 찢렸다.”

56. 한국 영등포구 등촌동에 사는 73세인 황금주의 증언은 군이 운영했던 위안소의 규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노동자로 징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17세 때, 마을 일본인 지도자의 부인이 모든 결혼하지 않은 조선인 소녀들은 일본군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3년간 그곳에서 일했으며, 마침내 어느 날 일본군 병사를 따라 그의 텐트에 따라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저항했다. 나는 아직까지 처녀였다. 그는 내 치마를 찢고 칼이 꽂혀있는 총으로 내 속옷을 찢어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기절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담요에 덮여져 있었으나 사방이 피투성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첫째 동안은, 다른 조선인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계급의 장교들을 상대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리고 우리들이 점점 더 ‘헌 것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낮은 계급의 군인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병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그러는 또 ‘606 주사’라는 것을 맞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또는 임신이 되었으면 유산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옷을 받았고, 떡 조금과 물뿐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5년 동안 ‘위안부’로 일했지만, 나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나는 병에 너무 여러번 감염되어

서 장을 거의 드러냈고,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 한번도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우유나 과일 주스를 보면 구역질이 나고 마시지를 못한다. 그것들은 그들이 내게 하게 했던 그 많은 더러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57. 다른 생존자인 황소균은 7년간 군사적 성노예로 있다가 1943년 “위안소”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후 39세가 되어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심리적, 육체적 상처들과 부인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58. 또다른 생존자인 황금주는, 중국 길림의 위안소에 온 첫날 일본 군인으로부터 그녀가 복종해야 할 명령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특별보고관에게 말했다. 첫째, 천황의 명령, 둘째, 일본 정부의 명령, 셋째,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중대의 명령, 넷째, 그 중대 밑의 소대의 명령, 다섯째, 그녀가 서비스하고 있는 텐트 주인인 자신의 명령이었다. 다른 생존자인 한국의 김복선은 자신의 성노예 생활이 군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하사관들을 상대해야 했고, 9시를 넘어서 밤에는 상관들을 상대해야 했다. 모든 여성들에게는 군인들이 성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돔이 지급되었으나, 대부분의 군인들은 콘돔 사용을 거부했다.

59. 이 같은 진술들은 특별보고관이 받았던 문헌자료들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고, 특별보고관은 결국 군 성노예제는 군과 민간 지휘체계의 명령에 따라 일본 제국군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립되었고 엄격하게 통제되었다는 확신에 도달하였습니다.

60. 특별보고관은 또한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증언에서 언급했던 상처와 흉터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조홍옥 박사를 특별보고관이 만났을 때, 그 의사는 이 여성들은 여러 해 동안 날마다 수차례씩에 걸친 강간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대부분의 생애동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늘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서 조 박사는 이 여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확연한 신체적 상처에 더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평생 동안 그들을 고문하여 왔는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또한 많은 여성들이 불면증과 악몽, 고혈압, 신경쇠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증언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생식기관과 비뇨기의 성병 감염으로 인해 불임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61. 특별보고관은 증언을 청취하는 것 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되어 있는 개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코자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어떤 배상조치를 원하고 있는가와 일본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국민기금 방식에 의한 해결책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보고관은 국제 사회와 특히 일본 정부 측에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전 “위안부”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상세히 반영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이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 “위안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a) 일본 정부는 모든 생존하는 여성들 각 개인에게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피해 여성들은 정부를 통하여 전인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피해 여

성들은 대다수가 모든 생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사과 서신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무라야마 총리의 재임시에 이루어진 사과는 그의 진술이 일본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으므로 충분히 신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b) 일본 정부는 약 이십만명의 조선인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동원하고, 일본 제국군대가 이용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한 것이 일본 정부와 군 지휘계통에 의해서 혹은 묵인 하에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c) 일본 정부는 성노예를 목적으로 하여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이자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평화에 반한 범죄일 뿐 아니라 노예제라고 하는 범죄와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의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d)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도덕적이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e) 일본 정부는 생존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 재원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본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적인 배상 청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62. 배상금 지불과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은 배상금의 액수는 그 상징적 의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에게 특정한 배상액수를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63. 더 나아가 많은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특히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민간재원으로 모금한 국민기금을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관련 피해당사자들은 이 기금이 일본 정부가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4. 이와 함께 전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 조사는 이 문제에 관해 일본에 아직 남아 있는 모든 공식적인 문서 및 자료들의 공개, 특히 정부 공문서고의 문서 및 자료를 공개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b) 일본의 역사책과 교과과정을 개정하여 조사에서 드러나게 될 역사적 사실을 반영할 것.

(c) 일본 국내법의 틀 안에서, 군 성노예의 동원과 군 성노예를 제도화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처벌할 것.

65. 특별보고관은 모든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적인 추진주체인 특별보고관과 유엔 측에 국제적인 압력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러 기회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이 거론되었습니다.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66. 인권센타팀은 특별보고관을 대신하여, 일본 제국군대가 성노예로 조선인 여성들을 징집했던 문제에 관한 동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일본 정부 측에 동 정부의 견해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 법적 책임의 토대 위에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 “수치스러운 과거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청산”하고, 생존하는 여성 피해자들 각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위 “위안부”라는 제도 수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국내법에 따라 밝혀내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68.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법적 책임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냐고 물었을 때, 평양 사회과학원 산하 법학연구소 소장인 정남영 박사는 국제법의 견지에서 일본의 책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법 해석의 내용을 설명했다.
69. 첫째로, 이십만명의 조선인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강압적으로 징집하고, 그들을 극심하게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후에 그들 대부분을 살해한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의 조선 합병은 합법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선에 일본이 주둔한 것은 군사적인 점령상태를 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선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압적으로 징집한 것은 피점령지의 민간인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국제 인도법상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로, “위안부”에 관련된 일체의 계획을 수립한 것, 특히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징집하여 매춘을 강요한 것은 1925년에 일본이 비준한 1921년의 부녀자 및 아동의 매매금지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0. 셋째로 “위안부”의 경우 군 성노예제는, 당시의 국제적인 관습법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1926년의 노예제협약(Slavery Convention)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성노예 행위는 또한 1948년의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the 1948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 협약은 1948년 이전에도 국제적인 관습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규범들을 기술한 것이다 -에 따른다면 집단살해 행위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들었다. 정남영 박사는, 일본이 한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즉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고 교묘하게 집단적 삶의 조건에 해를 가하여 물리적 파괴를 결과하고 집단 내에서 출산을 방해할 것을 의도하는 조치들을 부과한 것인데, 이는 곧 집단살해협약 제2조에 따르면 집단학살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들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서와 같은 어떠한 외교적 관계도 수립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문제 외에도 두 정부 사이에는 강제노동문제 등과 같은 다른 주요한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에 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

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종전 시에 이루어진 다른 어떤 국제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72.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문서고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바로 이러한 문서들에 의거하여 일본이 “위안부”라는 제도 수립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일본 역사책과 교과과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73.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배상금액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액수 혹은 추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시받지 못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은 생존하는 몇 명의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의 결과로 살해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댓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생존하는 개별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배상금 지불보다도 훨씬 더 상징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4. 마지막으로 조사팀이 방문 중 만났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학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국민 기금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이 기금은 “국가적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 내지는 책략”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풀이 언급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금을 설치하고, 생존하는 피해자들에게 “속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을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즉각적인 철회가 요청되었습니다.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졌던 모든 회의에서, 특별보고관과 유엔이 관련 정부들간의 중재자로서,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시인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의하도록 권고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습니다.

76. 결론적으로,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사회부문들에서 군 성노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가 표명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VI.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77. 특별보고관은 생존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많은 수의 전 “위안부”를 대표하는 NGO들로 구성되어 극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트워크와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78. 일본과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랐다. 이것은 전쟁 중 일본군의 조선 점령 문제에서 야기된 요구사항들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보

고관은 1965년의 조약은 단지 재산에 대한 청구만을 규정하는 것이었지 개인적인 손해를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리들에게 1965년 조약이 그들의 견해로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배상까지 충분히 망라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공노명 외무부 장관은 한일 두 정부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1965년 조약을 근거로 하여, 전쟁 중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군 성노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1993년 3월에 나온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기사에 따르면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79. 일본 정부의 법적 의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일본 정부가 50년 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배상할 법적 책임이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종전 후에 맺어진 조약이나 국제 조약들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개인들이 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민사 법원에 개개인이 소송을 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었다.

80. 이와 관련해서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물질적 배상 요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정부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생존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 그룹들과 NGO의 활동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 “위안부”들을 보호하고 무료 의료지원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법”을 1993년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보고관은 만족스럽게 주목했다.

81. 특별보고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현존하는 문서와 사실들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2. 또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 여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공개 사과, 예를 들어 일본 수상이 모든 생존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개인 서신을 보내는 방법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83. 국민 기금의 설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외무부 장관은 본 특별보고관에게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자들의 바람을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GO의 활동들을 지지했고, 그들의 요구가 또한 관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84. 대한민국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다소 조심스런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의 다른 부문들, 즉 정치인들과 학자들, NGO의 대표들, 그리고 여성 피해자 자신들은 훨씬 더 강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5.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의원들은 특별보고관에게, 국회의무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

부에게 군 성노예와 관련하여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배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도록 권고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역사 교과서 개정 및 모든 피해 여성들을 위한 추모 동상 건립도 요구하였습니다.

86. 아울러,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문제로 활동하는 여성 단체들과 NGO들의 많은 대표들을 만나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회에서는 특별보고관에게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했다.
87.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입장은 생존하는 피해자 당사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들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인함으로써 “모든 전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것,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할 것, 일본 정부가 생존하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본의 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인 배상 청구 소송을 처리하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88. 특별보고관은 또한 NGO의 대표들에게 국민 기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들에게도 역시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민간 창구에 모금을 요청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에 대한 무조건적 철회를 요구했다. 보상을 위하여 개인 및 민간 부문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특별보고관은 알게 되었습니다.
89. 더 나아가 국제적인 추진주체인 유엔은 국제적 압력을 통하여,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결을 만들어 낼 것을 반복해서 요청받았다.
90. 흥미롭게도 또한 1995년 3월 한국노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노예로서의 그들의 “노동”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ILO의 의사소통기체에 강제노동에 근거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VII. 일본 정부의 입장

91. 일반적으로 국제법 아래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현대 국제법, 특히 인도에 관한 국제법 분야에서는 그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92. 특별보고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는 전 “위안부”들과 그들을 대신하여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특정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반대주장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을 특별보고관에게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구속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는 느끼지 않고 있으며 단지 도의적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성노예로 만들었던 여성들에 대하여 법적 의무와 도의적 의무를 모두 가진다고 믿는다.

93. 1994년 8월 일본 정부는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위안부’의 동원과 수송에 대해서도 시인했으며, 또한 군인들이 피해여성들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징집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더 나아가 “이것은 ...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문제이다”라고 진술했다.
94. 대한민국과 일본 방문 중 NGO들과 학자들이 제공한 문서를 통해 볼 때, 일본 제국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소 설치와, 위안소의 이용과 운영, 그리고 위안소의 통제와 규제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일본 제국군대 장교들이 위안소에 관해 내린 명령들을 보여주는 상세한 문서가 제공되었습니다. ‘위안부’의 징집과 수송을 위해 전선의 장교가 특별요청한 것을 포함한 명령원문의 사본도 제공되었습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위안부’에 관해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동 정부로부터 통고받았다.
95. 특별보고관은 위안소에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갔고, 일본 제국군대는 위안소들로 구성되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했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가 위안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이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96. 일본 정부는,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약과 다른 국제법 문서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 특별보고관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S/25074) 내용을 일본 정부에게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 34번째 문단과 35번째 문단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견해로는,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sine lege) 원칙의 적용은, 특정 조약을 모든 국가가 아니라 몇몇 국가만 준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재판소가 의심할 여지없이 관습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제인도법의 규칙들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의심할 바 없이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인도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법의 일부는, 1949년 8월 12일의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과 1907년 10월 18일의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 제4협약 및 그 부속규칙, 1948년 12월 9일의 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45년 8월 8일의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무력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97. 특별보고관은 앞에서 언급한 사무총장의 견해대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의 특정한 부분들은 명백히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며, 국가는 특정 조약의 가맹국이 아니더라도 인도에 관한 국제법의 이 같은 원리들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98. 제네바 제4협약 제27조는 전시의 강간은 국제적 전쟁 범죄라는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 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929

년 발효되었으나 일본은 비준하지는 않은 전쟁현장에서 군의 부상자 및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관한 제네바조약 제3조에서는, “전쟁 포로들은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여성들은 그들의 성에 따라 모든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99. 국제 군사재판소 현장 제6조 c항과 도쿄 재판소 현장 제5조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살해, 집단살해, 노예화, 추방 그리고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모든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위원회가 제46 회기의 활동보고서가, “본 위원회는 전쟁범죄라는 범주는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한다. 이 범주는 1949년의 제네바 조약의 중대한 위반의 범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101. 1949년의 제네바조약이 그 조약의 시효 원칙 때문에 국제관습법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1929년 제네바조약은 일본이 가맹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1907년의 육전 법규 관례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자였다. 모든 교전국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 규칙은 적용될 수 없지만(제2조), 이 조항들은 그 당시 통용되었던 국제관습법의 명백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헤이그규칙의 제46조는 국가에게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란 가족 내의 여성들이 강간이라는 모욕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102. 일본 정부는 1904년의 추업부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과 1910년의 추업부 매매 금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및 부녀자 매매 금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21년 조약 제14조의 특권을 행사하여, 조선을 그 조약의 적용제외로 한다는 취지를 선언했다. 이것은 조선인이 아닌 모든 전 “위안부”들은 일본이 이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일단 조선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그러했듯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 조약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조선 여성들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 조약에 근거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조약은 그 당시 존재했던 국제관습법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3. 일본 정부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국제법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청구권 문제 해결 다루고 있는 여타 쌍무적 강화조약들과 국제 협정들에서 충족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협정들을 통해 일본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일본과 여기에서 언급된 협정의 당사국들간에는 배상 및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104. 역시 특별보고관에게 제공된 문서들에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의 제2조 1항이 “양 계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문제들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2조 3항에서는 “타방 계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일방 계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에 관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총 5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고 지적한다.

105.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모든 청구권은 쌍무적인 협약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개별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06. 일본 정부는 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a)항의 내용을 지적한다. 즉, “일본은 전쟁 중 일본에 의해 야기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경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모든 그러한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완벽하게 배상을 하고 동시에 그외의 여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107. 국제법률가위원회는 1994년 발행한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언급한 조약들은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개개인의 청구권은 포함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구권”이라는 용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용어는 합의된 의사록이나 의정서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서 비롯되는 개별적인 권리의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협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과 맺은 1965년 협정이 정부 측에 지불하는 손해배상에는 관련이 있지만, 피해를 겪은 개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8. 특별보고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쌍무적인 조약들 어떤 것도 인권 유린 일반이나 특히 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국들의 “의도”에는 “위안부”들이 제기한 특정한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약들은 일본에 의해 전쟁 중에 발생한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보고관의 결론은 이 조약들이 전 군 성노예들이 제기한 청구권을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인도법을 결과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09. 일본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문서들은, 국제법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조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10. 특별보고관의 견해는, 국제 인권 문서들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개인 권리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제1조는 유엔의 목적의 하나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고 고취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문서들은 개인이 때때로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111. 일본 정부는 또한 국제 인권 기구들이 가해자들을 소송하여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국가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처벌 문제는 실체법적 문제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에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나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면을 한 적이 없다. 전쟁 범죄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소송은 국제법에 따라 여전히 가능하다.

112. 또한 군인들은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지휘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규칙과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들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13. 위에서 강조한 대로 살해, 집단살해, 노예화, 강제이송 그리고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저지른 여타 비인도적 행위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규정한다. “위안부”의 경우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납치 및 조직적인 강간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및 인도에 반한 범죄를 구성한다.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지연과 정보의 부족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소추를 시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무입니다.
114.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국제법상 배상받을 권리가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보상으로서의 배상도 국가들 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15.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는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의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인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또한 그 제2조 3항에서 유효한 구제를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사법 및 행정, 혹은 입법당국 또는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며, 따라서 유효한 구제에 관한 개인의 권리는 국제적인 규범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16. 모든 인권 문서들 또한 국제 인권에 관한 법의 위반에 대한 유효한 구제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리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배상권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권을 가지는 것이 인정된다.
117. 국제법상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는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원칙입니다. 특별보고관이 예비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호주프 공장(Chorzow Factory)의 사례는 조약의 위반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손해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법의 원칙을 확립했다.
118. 인권위원회는 또한 배상에 대한 개인의 권리 문제를 밝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995/34 결의문에서 인권위원회는 소수집단의 차별 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중대한 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활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 (E/CN.4/Sub.2/1993/8, chap. IX)가 제시한 기본적 원칙 및 지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장려했다.
119. 그의 보고서 14번째 문단에서 동 특별보고관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결과로서, 개인과 집단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기존의 국제법의 틀 안에서 유효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관해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미주인권조약, 유럽인권조약, 고문 등 금지조약,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관한 선언, 독립국가 내의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ILO 619호 조약, 어린이의 권리조약이 모두 동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 문서들은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유효한 구제와 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20.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관련하여 제안된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 특별보고관은 “모든 국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는 국제법에 따라 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한다. 인권 존중을 보장할 의무에는 위반을 방지할 의무, 위반을 조사할 의무, 위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들에 대한 유효한 구제를 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121. 또한 제안된 원칙과 지침에는, 배상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희망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위반의 경중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보상, 재활, 속죄 및 재발방지 보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배상의 이런 형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원상회복(restitution)이란 인권을 유린당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 시민권, 거주지, 직업, 재산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b) 보상(compensation)은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 모든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육체적 정신적 상해, 고통, 정서적 장애, 교육을 포함한 기회의 상실, 소득 및 소득능력의 상실, 적절한 의료 및 갱생을 위한 경비, 재산 및 비즈니스에 대한 손실, 명예와 존엄성의 손상, 구제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법적 또는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비용 등입니다.

(c) 재활(rehabilitation)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 뿐만 아니라, 법적, 의학적, 심리적 기타의 다른 보호조치의 제공을 의미한다.

(d) 속죄 및 재발방지 보장(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은 지속되는 인권 유린의 중지를 포함하여, 사실 검증과 진실의 완전하고 공적인 공개, 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사과,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조치,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및 조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122. 특별보고관은 배상은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필요하다면 직계 가족 또는 직접적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또한 개인들에게 배상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집단 청구를 제기하는 피해자 그룹에게 집단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어떤 시도도 소급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 측의 기본적인 주장은 인도에 관한 국제법이 국제관습법의 일부라는 주장에 의해 대응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조 2항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 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124. 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년이나 지났다는 주장 역시 부적절하다. 형법과 형사정책과 형사관행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그의 보고

서에서 원상회복 권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떠한 유효한 구제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시효에 종속되지 않는다.”

VIII. 도의적 책임

125.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많은 성명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하다. 특별보고관은 이것이 환영할만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문서들에는 소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성명서와 탄원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노 요헤이 외상이 1993년 8월 4일 발표한 성명은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동원이 민간인에 의한 동원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은 나아가 많은 경우,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었으며, 위안소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26. 일본 정부는 “지역을 막론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치유될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했다. 그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같은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역사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마음 속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127. 또한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 일본 정부가 특별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 군인들과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가 주최한 심층 청문회에 참석했다. 경찰청 및 방위청을 포함한 주요 정부 기관들도 이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28. 1992년 7월 5일 일본 정부는 그 시점까지 진행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서 역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당국의 요구에 따라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위안소는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당시의 말라야, 태국, 당시의 버마, 당시의 뉴기니아, 홍콩, 마카오, 그리고 당시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시설이 민간인 운영자들에 의해 운영된 경우라도 당시의 일본군은 시설 개업을 승인하고, 시설을 설치했으며, 운영 시간 및 요금, 시설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규정한 위안소 규칙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129. 그 문서는 또한 “이 여성들은 군대의 지속적인 통제 아래에서 군인들과 함께 이동하도록 강제당했으며,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을 견뎌야했다”고 적었다. 이 조사는 많은 경우 동원이 민간 운영자가 했지만 동원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기만과 협박”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했다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더 나아가 관리들과 군관련 인사들이 직접 징집에 참여한 경우들도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수송을 승인하고 기획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130. 일본 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을 표시했다. 1994년 8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심하게 훼손한 전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와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에 맞춰 아시아의 평화, 친선 및 교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아시아 역사 문헌 센터의 설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일본과 인근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대화를 증진시키는 교류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특별히 “위안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총리의 “침략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에 근거한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131. 마지막으로 이가라시 코조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총리의 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1995년 6월 1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50주년 문제를 위한 여당 프로젝트 팀의 토론 결과에 의거하여,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에 근거하여 국민 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부의 책임있는 관리들은 특별보고관에게 이 기금의 구체적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 기금의 주된 목적은 생존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a) 전 전시 성노예의 고통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보상”의 방편으로서 민간부문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

(b) 정부 및 다른 재원을 염출하여 전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복지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c) 이 기금사업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할 것입니다.

(d)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위안부”제도에 관한 역사 문헌들을 수집하는 것. 특별보고관은 이 문서와 근대 아시아 역사에 관한 다른 문서들이 계획중인 근대 일본-아시아 관계 센터에서 일반에게 전시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

(e)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끌려온 국가들에서의 인신매매와 매춘 등과 같은 현대형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분야에서 NGO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132. 특별보고관은 이 기금을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모금을 하는 목적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1995년 6월 14일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이 기금의 설립은 일본 정부와 함께 일본 국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이 기금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와 지역들과 상호 이해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과거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한 이유이며, 정부는 5억엔 (약 570만 달러)를 출연하여 기금의 행정비로 충당하도록 지정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여성 피해자들의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133. 일본 방문 이후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접수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문서 작성 시점인 현재 주로 개인들로부터 기부금으로 약 1백만 달러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노동조합과 기업, 민간 기관의 모금사업 참여가 기대되며, 이 기금은 법인체이면서 비영리기구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
134. 이에 비추어 특별보고관은 이 기금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들의 운명에 대한 도의적 관심의 표현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의 표명이며, 이 같은 사실은 특별히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기금조성을 바란다는 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록 특별보고관은 이 계획을 도의적 관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것은 국제법상 “위안부”들의 법적 청구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135.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개발기금의 여성 폭력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주목한다.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동참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IX. 권고

136.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들과의 협력의 정신 속에서 본인의 위임사항을 수행하고 전시의 군 성노예라는 현상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들이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나와 토론 속에서 이미 일본 정부가 보여준 협조와, 일본제국군대가 저지른 군 성노예제도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생존한 여성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열린 자세와 적극성에 기대를 건다.

A. 국가적 차원에서

137. 일본 정부는,

- (a)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제국군대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제도가 국제법상의 일본의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는 사실을 승인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 (b) 군 성노예제도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소수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특별보고관에 의해 제시된 원칙에 따라,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극히 고령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특별한 행정적 심사회가 단기간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c)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 제국군대의 위안소 및 다른 관련된 활동에 관해, 일본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스스로 일본군 성노예였음을 밝혔고, 그렇게 입증된 여성 개개인에 대해, 서면에 의한 공적인 사죄를 해야 한다.

(e)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f)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의 제도화에 관여한 범행자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처벌해야 한다.

B. 국제적 차원에서

138.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은, 이들 문제를 국제연합 조직 내에서 계속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시도도 이루어져야 한다.

1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의 책임 및 지불에 관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40. 특별보고관은, 생존여성이 고령이라는 사실 및 1995년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50주년이라고 하는 사실에 유의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특히 위의 권고를 고려에 넣고, 위의 권고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별보고관은 종전 후 50년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의 존엄성을 이제는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http://www.archive814.or.kr/ViewerJS/web/viewer.html?file=%2Fattachment%2F849%2F24569.pdf>

11. 게이 맥두걸 보고서(1998)

| UN 인권 소위원회 특별보고관 |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 보고서

게이 맥두걸
(Ms. Gay J. McDougall)

머리말

1. 제45차 회기에서 소수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는 현대형 노예제 실무그룹이 전쟁 동안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기타 강제노동의 유형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를 주목하고 차베즈(Linda Chavez) 씨를 특별보고관으로 하여 국내 무력충돌을 포함하여 전시하 체계적 강간, 성노예 및 그와 유사한 관행 상황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부탁했다. 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최초보고서를 제46차 회기에, 최종보고서를 제47차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 제46차 회기에서 소위원회가 수많은 연구를 권고한 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한 인권위원회 결의 제 1994/103호를 고려하여 소위원회는 차베즈 여사에게 보수 없이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른없는 관행의 상황에 관한 작업논문(working paper)를 제47차 회기에 제출하도록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차베즈 여사는 기일 안에 보고서(E/CN.4/Sub.2/1995/38)를 냈고 소위원회는 제1995/14호 결의에서 보고서를 환영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정책도구로서 조직적 강간의 역사, 관련 국제규범, 형사와 민사책임 문제, 범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여러 형태, 가해자에 대한 가능한 제재(制裁)와 배상형식을 요약한 예비보고서(E/CN.4/Sub.2/1996/26)를 제48차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4. 1997년 5월에 차베즈 씨는 소위원회의 49차 회기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알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다른 위원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E/CN.4/Sub.2/1997/12). 소위원회는 제49차 회기에서 제1997/114호 결의로 국내 무력충돌을 포함한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특별보고관으로 맥두갈(Gay J. McDougall) 씨를 임명하였습니다.¹⁾
5. 전쟁의 전술과 무기로서 성노예와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구공동체의 일관되고 헌신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너무나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잔학행위입니다. 폭넓은 대응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최종보고서는 성노예를 포함한 노예행위(slavery)와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순환을 끊기 위한 국내·국제 차원에서의 효과적 행동을 위하여 알맹이 있는 분야의 하나인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무력충돌시 성노예제와 성폭력의 수사, 기소 및 방지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실제적인 권고를 내놓는다.
6. 소위원회가 이 연구의 위촉을 결정하도록 촉발한 중요한 계기의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대가 ‘위안소’(comfort stations)에서 노예처럼 부린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자행한 온갖 해악의 진상과 성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구제받지 못한 성노예와 성폭력을 수반한 인권법, 인도주의 법(humanitarian law) 및 국제형사법 위반을 다룰 필요를 인정하면서, 이 보고서의 부록은 이러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1)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아래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Stephen Bowen, Mark Bromley, Alice M. Miller와 Alison N. Stewart. 연구과정 동안 전문가로서 지도해준 아래의 사람들에게도 아울러 감사한다: Kelly Askin, M. Cherif Bassiouni, Diane Orentlicher, Patricia Viseur Sellers와 David Weissbrodt.

I. 보고서의 목적과 맥락

7. 오늘날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적대행위를 할 때 점점 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어린 소녀를 비롯하여 여성은, 이렇게 표적이 되고 위협에 빠진 민간인의 커다란 일부를 이룬다. 이들은 어느 전쟁이나 동반되는 폭력과 참화뿐만 아니라 성적 특질을 이유로 특히 여성을 겨냥한 여러 폭력에 노출된다.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무력충돌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의 기본원리 위반이며 특히 효율적인 대응이 요청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8. 효율적인 대응은 성폭력과 성노예제를 적절히 기록하고 가해자를 재판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를 노예제의 국제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쟁범죄 또는 고문과 같이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되는 강행규범(jus cogens)위반 범죄로서 특별한 법적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강간막사(rape camp)나 위안소에 여성을 구금시키는 것, 강제적이고 일시적인 군인과의 결혼과 여성을 동산처럼 다루는 것과 관련된 다른 관행들이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노예제의 형태들이며 그 자체로서 노예제를 금지하는 강행규범 위반임을 강조한다.

A. 목적

9. 이 보고서의 첫번째 목적은, 무력충돌시 성폭력과 성노예의 사용에 대한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하는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 심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것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여성들은 평화시 형사사법제도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조차도 종종 처벌되지 않는 성폭력과 성노예를 비롯한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박해와 차별을 받기 쉽다. 여성들이 직면하는 참혹한 일들은 무력충돌의 경우 그 횡수, 빈도와 가혹함이 더욱 커지고, 이러한 일들은 성에 특징적인 학대에 국한되지 않다. 그러나 무력충돌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적 성질의 폭력과 노예행위의 - 받아들이거나 묵과될 수 없는 - 위협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여성을 겨냥한 학대가 무력충돌 동안 증대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폭력이 자행되고도 처벌되지 않는 정도도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충돌 상황에서 여성의 처지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무력충돌이 야기하는 사회 억제수단의 붕괴와 일반적인 혼란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적대집단의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여성을 강간하고 노예로 만들어 ‘적’을 전체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교전자(交戰者) 측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10. 이 보고서의 두번째 목적은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에 의해 강간되고 성적으로 학대받으며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성들이 겪는 해악의 진정한 본질과 정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력충돌시 여성에게 자행된 성폭력을 다룬 기록문서들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집에서 더욱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윤간당하거나, 구금소 또는 군부대에 갇혀 여러 주, 심지어 여러 달 동안 매일 셀 수 없이 강간당한 여성들, ‘결혼’이라는 허울 아래 군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간당한 여성들, (요리사, 집꾼, 지뢰 제거작업과 같은) 강제노역과 강요된 성관계를 해야 할 처지에 빠진 여성들, 살해되기 전이나 상처로 죽어가도록 방치되기에 앞서 성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육보이고 고문당한 여성들의 예를 폭로한다. 이러한 폭력을 둘러싼 침묵의 장막은, 정의를 실현하고 존엄

성을 회복하고 장래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추와 배상을 포함한 다른 구제수단들을 통해 벗겨져야 한다.

11. 이 보고서의 세번째 목적은 무력충돌 동안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국제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추전략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범죄나 형벌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 대한 새로운 책임기준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나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적용할 수 있는 확립된 법을 재천명하고 더욱 강화한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현행 법적 틀을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훨씬 효과적인 소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밝힌다.

12. 국가와 국제법기구들이 그간 무력충돌 동안 강간과 노예제의 가해자들을 이미 존재하는 국제규범과 기준에 따라 단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낙관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처벌(impunity)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보가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노예범죄에 대한 겨우 몇 건의 기소가 있었고 강간에 대하여는 훨씬 적은 건수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성폭력을 이유로 범죄책임을 묻는 수많은 기소장을 발부하고,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Rwanda)는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늘리라는 압력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위촉받아 완성에 이른 기간 동안만 해도 무력충돌시 성을 이유로 하는 폭력문제를 다루는 데 커다란 발전이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뿐만 아니라 상설국제형사재판소(역자: 이 보고서 제출이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로마에서 1998년 7월 17일 서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UN Doc. A/CONF.183/9(17 July 1998) 참조)를 설립하려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제안되었다고 보이며, 이 연구가 국내법원, 임시국제형사재판소들과 상설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성폭력과 노예범죄의 기소를 유용하게 진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판지(venue), 규칙과 절차에 대한 계속되는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주어진 명령계통 내의 개인과 공범행위를 통해 범죄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을 비롯한 관련 국가 또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non-State actors)의 법적 책임의 정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의도로 여러 범죄의 정의를 어느 정도 특정적으로 내린다.

B. 배경

13.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 인권법, 형사법을 비롯한 국제법의 발달은 남성의 삶,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남자의 삶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²⁾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형태를 국제적인 국가책임문제로 다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데 실패한 인권법의 구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외의 유산은 바뀌기 시작했다: 1990년 12월 20일 국제연합 총회는 제 48/104호 결의를 채택하면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하고 효율적인 조치에 의해 대처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을 상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주의법은 예컨대 강

2) 이러한 논의로는 Hilary Charlesworth, Christine Chinkin and Shelley Wright,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5, 1991를 보라.

간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같이 무력충돌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일관성이 없고 부적절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결함 역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나아가 상설국제형사재판소도 그럴 것이 기대되는데 - 여성에 대한 폭력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구제를 해 줌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 이 보고서가 무력충돌 상황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노예의 많은 사례와 형태를 고려하지만 이 연구의 뚜렷한 임무는 “국내 무력충돌을 포함한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및 그와 유사한 관행들”이 함축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이러한 초점은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의 이해를 요구한다.
15. 첫째, 무력충돌 가운데 저질러진 성폭력은 약탈에 나선 군인들이 명백히 간헐적으로 했던 민간인을 표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의 일부로 이루어졌든, 강간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비난받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견해입니다. 성폭력과 노예제는 상대편의 사기를 꺾는 데 뚜렷하게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³⁾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과 관행의 실효성을 제거하려면 국제 사회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16. 둘째, 국내법과 함께 국제인도법도 종종 여성의 ‘명예’(honour)를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의 생존자들은 공격을 받아 어딘지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 보고서는 피해자를 그렇게 성격지우는 것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강간이나 성폭력이 자행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예롭지 않은 유한일 당사자는 바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강간은 실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공격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폭력 범죄입니다.
17. 셋째, 이 보고서의 제목과 관련하여 “조직적”(systematic)이라는 말은 이러한 이름의 새로운 범죄가 있다거나 강간행위를 소추하기 위해 새로운 입증책임이 확립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의 특정한 유형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sexual)이라는 용어도 이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의 한 형태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이라는 묘사적인 용어 사용은 노예제는 종종 성적인 접근과 강요된 성활동까지 포함하여 인간을 동산(動産)처럼 다루는 것이라는 역사적이면서 현대적인 현실을 부각시킨다. 이 보고서의 임무가 강간과 노예제와 연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력충돌이 있는 동안 자행된 많은 성폭력 사례들은 가장 적절하게 노예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18. 넷째, 이 보고서는 성폭력이 갖는 성에 관한 함축(gender implications)에 대한 명확한 이해 속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겨냥된 성폭력의 본질과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인정한다.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에서 지적된 것처럼 여성은 의심할 것도 없이 훨씬 더 큰 성폭력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데 모든 (국제, 국내) 차원과 모든 법체제에서 성과 관련된 장애와 직면한다.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성폭력에 의해 빚어진 육체적, 심리적 상처에 덧붙여 사회에서 여성과

3) Madeline Morris, "By force of arms: rape, war, and military culture", *Duke Law Journal*, vol. 45, 1996.

소녀가 종속적인 지위에 있고 이들의 역할이 낮게 평가됨에 따라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도 여성에 국한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여성들이 성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성(sex)과 성(sexuality) 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에 관하여 건설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더욱이 강간과 성적 침해를 둘러싼 침묵의 베일보다 더 해로운 것은 폭력행위가 여성에게 저질러질 때 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입니다. 젠더⁴⁾에 대한 이해를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틀 안에 통합하면, 충돌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는 의무와 모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주의깊게 규정할 수 있고 적절한 방지,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형사·민사적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⁵⁾

19. 이 보고서는 소추를 위한 법적 틀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성폭력 행위에 대한 소추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드물었다는 모순을 폭로한다. 몇몇 정부들은 소추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들면서 이러한 법은 새로운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례가 부족한 것은 더 정확하게는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행위, 특히 성폭력을 알려야 하고, 수사·소추해야 하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 한도로 배상하여야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대응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II. 범죄의 정의

20. 이 보고서에 담긴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와 ‘성노예’를 포함한 ‘노예’ 범죄의 정의는 이러한 행위 자체와 ‘미수’(attempt)와 범죄의 ‘공모’(conspiracy),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inciting) ‘청부하는 것’(soliciting), 범죄수행을 ‘방조, 교사하는 것’(aiding and abetting)과 같은 다른 형태의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A.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21. 강간은 ‘성폭력’의 좀 더 넓은 범주에 들어간다. 이 보고서는 성폭력을 성적인 수단을 통하거나 성적 특성(sexuality)을 겨냥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모든 폭력으로 정의한다.⁶⁾ 성폭력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강제로 발가벗기고 사람의 생식기를 훼손시키거나 젖가슴을 베어내는 것과 같이 사람의 성적인 특성을 향한 신체적 및 심리적 공격 모두를 포괄한다.⁷⁾

4) “젠더(gender)이란 말은 공적, 사적 생활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축조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가리킨다. 젠더(gender)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sex)과 구별된다.” Donna Sullivan, *Integration of Women’s Human Rights into the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s* (New York: UNIFEM, 1996).

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CONF.177/20), paras. 131-149;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E/CN.4/1998/54), paras. 8-18을 보라.

6) M. Cherif Bassiouni, *Sexual Violence: An Invisible Weapon of War in the Former Yugoslavia*, Occasional Paper No. 1,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stitute, DePaul University College of Law (1996), p. 3.

7) Human Rights Watch, *Shattered Lives: Sexual Violence during the Rwandan Genocide and its Aftermath*, New York, (1996) p. 62.

22. 성폭력은 또한 두 피해자가 서로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해치도록 강제된 상황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한 범죄는 종종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굴욕감을 주도록 의도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폭력의 행위들을 보도록 강요될 경우에는 더 큰 공동체를 위협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청(the Office of the Prosecutor)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係)의 수용소에서 교도관이 강요하여 어느 수감자가 다른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수감자의 고환을 물어뜯은 사건을 전쟁법 위반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⁸⁾ 다른 구금시설에서 있었던 다른 사건에서는 어느 보스니아 세르비아 경찰서장이 두 구금자에게 “여러 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⁹⁾
23. 국내법체제에서 강간의 정의는 수가 많고 다양하지만 국제인도법이나 인권법은 강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¹⁰⁾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강간의 정의는 오늘날 국제적인 정의 노력, 현대적 용례, 국내법과 관행에서 도출된 예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청이 제출한 강간의 실무적 정의(working definitions), 그리고 여러 국제인권민간단체들이 채택한 정의들을 반영한다.
24. ‘강간’은 물리력, 강제력 또는 강박상태에서 음경에 국한되지 않고 아무 물건이나 피해자의 질이나 항문 또는 입 속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강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성적 구별이 없는 용어로 정의된다.¹¹⁾ 그러나 여성이 성폭력 범죄에 희생될 위험에 더 크게 처해 있고 구제받는 데도 여성의 특수한 장애에 직면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가 비록 강간의 정의에 ‘삽입’이란 요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삽입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강조는 여성의 정조를 확보하고 아이의 아버지를 확인하는 데 골몰하는 남성의 관심에서 유래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강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이 비난받고 방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25. 예를 들어 강제적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로 인한 동의나 동의능력의 결여는 국내법상 합법적 성행위와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모든 무력충돌 상황에 존재하는 명백한 강제적 상황은 동의가 없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로 하여금 범죄구성요건의 하나로서 동意的 부재를 증명하게 할 필요도 없게 한다. 게다가 무력충돌 상황에서 강간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명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를 촉진한 상급자의 명령책임을 고려할 경우 동의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意的 문제는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든 일반 규칙과 확립된 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적극

8)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FY), *Prosecutor v. Tadic*, Case IT-94-1-T (Trial Chamber Judgment of 7 May 1997)를 보라.

9) ICTFY, *Indictment of Miljkovic and Others*, Case IT-95-9-I (21 July 1995) para. 31.

10) Rape and Sexual Assault: A Legal Study. Fin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80 (1992) (S/1994/674/Add.2 (Vol. I), annex II), para. 2.

11) *Ibid.*, note 4. (“동성애적 성격의 폭력 범죄들은 국제인도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국제인도법이 강간과 기타 성폭행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는 한 여성은 물론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이 경우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약이 어느 때나 적용, 배제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

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¹²⁾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은 우선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적절하고 믿을 만하다”고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¹³⁾

26. “조직적”(systemic)이라는 말은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죄목의 새로운 범죄가 있다거나 강간행위를 소추하기 위해 다해야 하는 새로운 입증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의 특정한 유형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쓰인다. 강간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에서 나아가 표적이 된 집단을 광범위하게 공격하거나 정책을 바탕으로 공격한다는 보다 큰 유형에 포섭되어 이 보고서의 III.A부분에서 논하는 것처럼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강간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소추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강간’이 일어났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을 위해 ‘조직적인 살인’이나 ‘조직적인 고문’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B. 성노예를 비롯한 노예행위

27. 1926년 노예협약은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현재 가장 널리 승인된 노예의 정의를 내놓았다. 1926년 노예협약에서 따온 것처럼 “노예제”(slavery)는 어느 사람에게 강간을 통한 성적인 접근이나 다른 성폭력의 형태를 포함하여 소유권에 따라붙는 특정한 또는 모든 권한이 행사되는 지위나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28. 조약법에 덧붙여 노예행위의 금지는 국제관습법상 강행규범입니다. 노예행위는 정부의 관여나 국가행위를 요하지 않고 국가행위자가 범하든 개인이 범하든 간에 국제범죄가 된다. 나아가 노예제도는 사람을 동산처럼 취급할 것을 요구하지만 특정인이 매매되고 거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예라는 주장을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29. 노예행위의 정의에 내재된 것은 자율성, 이동의 자유, 성활동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개념입니다.¹⁴⁾ 단순히 개인적 위해(危害)의 실질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노예라는 주장이 무효로 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노예가 된 특정인이 가지는 위해에 대한 그럴법한 공포나 강제의 인지를 해석할 때는 모든 경우 주관적이며 성적 차이를 의식한 분석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성질상 국내적이건 국제적이건 무력충돌 동안 전투지역 안에 있고 적대집단이나 파벌의 구성원으로 판명될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30. “성(적)”(sexual)이라는 용어는 이 보고서에서 별개의 범죄가 아닌 노예행위의 한 형태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사용한다. 모든 측면과 사정을 고려할 때 성노예는 노예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강행규범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부록을 볼 것)와 구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잘 기록된 ‘강간캠프’¹⁵⁾

12) ICTFY,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as amended on 25 July 1997), rule 96 (Evidence in cases of Sexual Assault); International Tribunal for Rwanda,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entered into force 29 June 1995.

13) Ibid.

14) M. Cherif Bassiouni, "Enslavement as an International Crime",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23 (1991), p. 458.

15) 예컨대 ICTFY, Indictment of Gagovic and Others, case IT-96-23-1 (26 June 1996) [hereinafter *Foca Indictment*]를 보라.

는 특히 잔학한 성노예의 사례들입니다. 성노예는 또한 여자와 소녀들이 가해자에 의한 강간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강요된 성활동을 수반하는 “혼인”, 가사노동이나 다른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된 상황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기록된 사례 말고도 강간당하거나 강제“결혼” 후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짐꾼으로 또는 군대를 위해 지리발 청소부로 일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여성들과 소녀들에 관한 보고도 있습니다.¹⁶⁾ 라이베리아에서도 여성과 소녀들이 전투원들을 위해 강제로 요리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성노예로 잡혀 있다는 비슷한 보고가 있었다.¹⁷⁾

31. 성노예는 또한 강제 매춘의 거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 또는 “강요된 매음”(enforced prostitution)이라는 용어는 국제인도법협약에서 발견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도 일관되게 쓰이지도 않았다. “강제매춘”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성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된 사람에 대한 지배상태를 가리킨다.
32. 강제매춘에 대한 보다 오래된 정의는 모호한 말로 여성의 ‘명예’에 대한 ‘부도덕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는 노예상태를 묘사하는 정의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에서 명백하게 범죄로 되었기 때문에 무력충돌 상황 중의 성폭력을 앞으로 소추하기 위한 한정적이지만 대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33. 일반 원칙으로서 무력충돌 상황에서 강제매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또한 성노예에 해당하며 더 적절하고 쉽게는 노예범죄로 규정하고 소추할 수 있습니다.

III. 성노예와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

34. 성노예와 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법적 틀은 관습과 조약에 기초하여 기원과 역사적 선례가 서로 다른 인권법, 인도법과 국제형사법과 같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법원(法源)으로부터 발달되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여성이 종속되었기 때문에 성노예와 성폭력행위는 노예행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집단살해, 고문, 전쟁범죄 등을 금지하는 국제형사법의 명문 규정에 언제나 충분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¹⁸⁾ 이 보고서는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성노예와 성폭력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소추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다수의 권위 있는 근거들을 검토한다.

16) 예컨대 Betsy Apple, *School for Rape: The Burmese Military and Sexual Violence* (1998), p. 49를 보라.

17) Coomaraswamy, (E/CN.4/1998/54, para. 42). 무력충돌 동안에 성노예와 성폭력의 많은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무력충돌이 어린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 Graça Machel여사는 최종보고서에서(A/51/306 of 26 August 1996, para. 45)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반란군집단이 소녀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부상당한 군사를 돌보고 빨래하는 일을 시켰다. 소녀들은 또한 성적인 봉사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신의 저항군(the Lord’s Resistance Army)이 납치한 소녀들은 반란지도자들에게 “시집간다”. 남편이 죽으면 그 소녀는 정화의식을 위해 내버려두었다가 그 후 다른 반란군과 결혼한다.”

18) Machel, *ibid.*, para. 91. “살인, 고문과 같은 유린행위는 오랫동안 전쟁범죄로 비난받아왔지만, 강간은 안 됐으나 여쩔 수 없는 전쟁의 부작용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35. 국제범죄를 소추하기 위한 틀은 종종 국내 차원의 실행을 빌리거나 그 위에 쌓아올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범죄를 소추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은 국내소추의 근거에 놓여 있는 고려사항과 비슷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국제형사법은 국제적 또는 국경을 초월하여 행동할 필요에 적합한 정책 목표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국제기준을 국내법체계에서 끌어내려는 것은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무력충돌 가운데 일어난 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많은 범죄의 경우 국내법상 평화시 범죄로 소추할 수 있지만, 국제법의 맥락에 특수한 정책 고려사항에 따라 무력충돌 중의 성노예와 성폭력을 방지·수사·소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36. 무력충돌 동안에 행해진 성노예와 성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는 강행규범의 관습적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한일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한다. 더욱이 강행규범은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추하는 국가가 범죄인이나 피해자의 국적이나 범죄 발생지와 아무런 영토적 연관도 없고 다른 근거에 의해 적절하게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국가나 강행규범 위반범죄를 소추할 수 있습니다.
37. 이러한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국제범죄는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특정한 전쟁범죄와 고문을 포함한다.¹⁹⁾ 이 범죄들은 관습법상 보편적 사법권(universal jurisdiction)에 속하고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면제된다.²⁰⁾ 계승정부를 포함한 국가는 그러한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하고 자국 안에서 소추를 하거나 다른 국가로 소추를 위해 인도(引渡)하여 재판받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²¹⁾ 전쟁범죄는 정의상 무력투쟁과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노예,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와 고문의 금지는 모든 무력충돌, 국내분규(internal strife)와 평화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A. 인도에 반한 범죄

38. 인종, 종족, 종교,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에 근거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박해를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²²⁾ 공격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 소추할 수 있습니다.²³⁾ 인도에 반한 범죄가 대개 무력충

19)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es: Jus Cogens and Obligations Erga Omnes*, in Bassiouni and Madeline H. Morris, (eds.), *Accounta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s and Serious Viola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1996, p. 68.

20) *Ibid.*, pp. 65-66.

21) *Ibid.*

22) ICTFY, *Tadic case*, sect. VI.D.2.ii.a를 보라.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1심 심리부(Trial Chamber)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또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가 민간인집단(civilian ‘population’)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은 이제 잘 확립되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나 고립되거나 무작위적인 행위를 배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3)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현장 제6조 c항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전쟁 전 또는 전쟁중에 모든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살인, 집단살해, 노예화, 추방, 그리고 다른 비인간적 행위, 또는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국내법 위반이 되는가를 묻지 않고 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느 범죄의 실행 중에 또는 범죄와 관련한 정치, 인종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라고 정의한다. The Fin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80 (1994) (S/1994/674), para. 83도 참조.

둘 상황의 경우에 기소되었지만 어떠한 무력충돌과의 연결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²⁴⁾ 더욱이 국가와 국가가 아닌 행위자 모두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39. 정책, 계획, 또는 설계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소추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여겨진다.²⁵⁾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을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은 정책, 계획 또는 설계의 필요 요건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40. 성노예제와 성폭력이 전술로 쓰여지는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곧바로 대응하기 위하여 젠더(gender)은 인도에 반한 범죄에서 박해(persecution)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어느 집단을,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의 어떤 측면이 공식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규범들의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정의(正義)의 근본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²⁶⁾ 그러므로 현행 박해 금지사유의 목록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설명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목표집단의 정체성과 함께 젠더도 인도에 반한 범죄에 의해 보호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41.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현장(뉘른베르크 현장), (독일 점령지역에 설치된: 역주) 관리이사회(Control Council) 법률 제10호,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현장(도쿄 현장)²⁷⁾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의 전통적인 정의상 “비인간적 행위”(inhumane acts)의 일반적 금지에 들어간다.²⁸⁾ 불행하게도 성폭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반인도적 범죄로 거의 소추되지 않았다.
42. 보다 최근의 입법에서는 비인간적 행위를 금지하는 잔여 규정에 의존하기보다 강간은 (반인도적 범죄는 어떠한 무력충돌과의 연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잘 확립되어있지만) 국내 또는 국제무력충돌 과정에서 모든 민간인들에 대해 범해진 경우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명시적으로 열거된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국제범죄를 소추하기 위해 1993년과 1994년에 설치된 두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들은 강간을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 속에 별개의 구성 범죄로 분리하여 나열한다. 더욱이 두 재판소는 성폭력을 근거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43. 강간을 포함한 심각한 성폭력의 단한일 사건은 검사가 그러한 단일 위반을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을 증명하는 훨씬 규모가 큰 일련의 기본적 인권이나 인도법 위반과 연결하는 경우 인도에 반한 범죄

24) ICTFY, *Tadić case*, Appeals Chamber Decision on Jurisdiction of 2 October 1995, para. 141(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국제무력충돌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습법 규칙이라고 판시한다).

25) Theodor Meron, "Rape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7, 1993, p. 428.

26) M. Cheri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Dordrecht, Boston: M. Nijhoff, 1992), p. 251.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목표 집단이 그 유사성이 무엇이건 (인도에 반한 범죄가 주는 보호의 근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차별의 요소는 범죄의 집단성을 증거하고 그 범위에 있어 사람들이 차별받는 집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양(量)이나 수에 대한 기준도 있어서는 안 된다.”

27)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ürnberg, art. 6 (c);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rt. 5 (c); Allied Control Council Law No. 10, Punishment of Persons Guilty of War Crimes against Peace and against Humanity, art. 1 (c).

28) Ibid. Commission of Experts Report (S/1994/674), para. 107도 참조.

로 소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4. 노예범죄는 오랫동안 인도에 반한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범죄자의 국내소 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헌장과 관리아사회 법률 제10호는 모두 인도에 반한 범죄를 다루는 조항 아래 노예화(enslavement)를 열거하였습니다. 도쿄 헌장 제5조도 비슷하게 노예화와 민간인에 대한 다른 비인간적 행위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열거하였습니다. 좀더 최근의 인도에 반한 범죄에 관한 입법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5조²⁹⁾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3조³⁰⁾를 포함한다. 두 조항 모두 노예화를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범죄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45.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에 어느 세르비아계의 정예 준(準)군사조직의 구성원과 지도관에게 포카(Foca) 마을에서의 강간과 노예행위를 이유로 인도에 반한 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노예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하는 공소장을 발부하였습니다.³¹⁾ 피고들은 9명의 여성을 민간아파트에 감금하여 정기적으로 성폭행하고 집안 밖의 일을 강요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4명의 여자들은 결국 다른 군인들에게 팔려갔다고 한다. 이 여자들을 끝없이 성폭행하면서 구금하고 육체노동을 강요한 방식은 명확히 노예행위를 이유로 하여 인도에 반한 범죄로 기소한 것을 정당하게 한다. 더욱이 몇몇 여성들을 사기 위해 돈을 준 것은 범죄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단지 세르비아 준군사조직 군인들이 이 여자들에 대한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을 행사한 정도를 나타낼 뿐임을 주목해야 한다.

B. 노예행위

46. 노예행위를 인도에 반한 범죄나 전쟁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과 동시에 노예범죄의 기소는 독자적 근거에서 전쟁이나 평화시에 국가행위자나 사적 개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노예행위와 노예와 유사한 관행의 금지는 국제관습법의 강제규범 또는 강행법규의 지위에 처음으로 다다른 여러 금지 중의 하나입니다.³²⁾ 이러한 기본적 인권규범의 진보는 19세기에 시작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이미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적 금지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³³⁾

47. 노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은 부분적으로는 해적처럼 노예무역상들이 역사적으로 공해(公海)에서 활동했고 어느 한 국가의 주권적 지배나 관할권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관할권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국제공동체는 범죄의 장소, 국가 관여의 수준 또는 어느 국가의 법 또는 관

29)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 (1993), annex.

30)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 (1994), annex.

31) *Foca Indictment*, *supra* note 15, Counts 56, 57, 61 and 62, paras. 12.2, 12.5.

32)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Belgium v. Spain)*, *Judgement of 5 February 1970: I.C.J. Reports 1970*, p. 32.

33) John P. Humphrey,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in the Middle Twentieth Century*, reprinted in Richard B. Lilli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blems of Law, Policy, and Practice* (2nd ed.) (Boston, Toronto: Little Brown & Co., 1991), p. 1. "1885년에 이르러 중앙 아프리카에 관한 베를린 회의의 일반의정서(General Act)는 '노예를 거래하는 것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고' 확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89년 브뤼셀 회의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선을 수색, 포획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압조치에 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서 모두 계속되었습니다."

행이 그 행위를 제재했는지 모를 정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개인형사책임을 지울 필요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오늘날 노예행위의 금지는 노예제나 또는 노예무역과 관련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국가 또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진정한 보편적 사법권을 허용한다. 이러한 지위는 무력충돌 중에 자행된 성노예의 개별적인 사건을 소추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의 소추에 있어 국가 관여의 존재 또는 목인, 유린행위의 광범하거나 조직적인 유형의 존재, 또는 범죄와 무력충돌과의 연결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C. 집단살해

48. 그 자체로 그리고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집단살해(genocide)의 금지는 명백히 강행규범의 지위에 올랐다.³⁴⁾ 특정한 상황에서는 강간, 성노예나 다른 성폭력행위들은 또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집단살해협약) 제2조에 정의한 대로 집단살해 범죄의 구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단살해죄의 주요 요건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보호되는 집단, 즉 민족, 종족, 인종 혹은 종교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가해자의 특정한 의도입니다. 집단살해협약상 젠더는 보호집단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구성원을 공격하여 보호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은 집단살해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49. 검사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전체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보호받는 집단의 실질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일부 또는 한 국가의 한정된 영역 내에서 보호집단의 존재를 파괴하려는 의도는 집단살해로 기소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더욱이 국경선이 충돌 동안 유동적일 것이므로 집단살해의 거의 모든 지역화된 작전은 전체로서의 집단의 완전 또는 궁극적인 말살을 강조하기 쉽고 종종 이러한 절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는 국가적 작전에 연결될 것은 분명하다.

50. 집단살해에 필요한 고의는 가해자의 행동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안에서 벌어진 충돌 중에 인도법 위반을 검토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80호(1992년)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는 몇몇 집단살해의 경우 “피고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작위나 부작위의 (고의의 입증과 관련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³⁵⁾

51.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청은 성폭력과 강간에 대하여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같은 명령계통에 있는 상급관리는 물론 실제 행위를 저질렀다고 피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기되었습니다.

52. 소추에 고의가 필요 요건이기 때문에, 단한일 강간 행위조차도 그 행위가 목표집단의 파괴를 가져오도록 계획

34)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C.J. Reports 1951, p. 15.*

35) Commission of Experts Report (S/1994/674), para. 313.

된 모든 일련의 행위들과 관련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집단살해죄로 소추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³⁶⁾ 덧붙여 집단살해범죄의 성립을 위해 무력충돌 또는 국가 행위와 연관될 필요가 없다.

D. 고문

53. 고문의 금지 역시 어떤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강행규범이 되었습니다. 관습규범에 의해 금지된 고문의 범죄 성립에는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아픔이나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과 이것이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연결될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거의 모든 사례에서 무력충돌 동안의 강간과 심각한 성폭력은 또한 고문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³⁷⁾ 더욱이 유럽인권법원, 미주인권위원회와 수많은 국내법원 역시 구금상태에서의 강간(custodial rape)행위는 고문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54.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협약) 제1조는 고문을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55.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육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인 해악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비롯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행해진 폭력은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³⁸⁾ 따라서 많은 경우에 고문협약상 고문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차별 항목은 강간이나 성폭력을 고문으로 소추하기 위한 부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E. 전쟁범죄

56. 국제범죄의 한 범주로서의 전쟁범죄는 전쟁법규관례(the laws and customs of war) 위반뿐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다른 위반행위, 1907년 헤이그규정과 규칙 위반을 포함한다. 성노예와 성폭력 행위는 특정한 경우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와 고문과 달리 전쟁범죄는 정의상 무력충돌과의 연관이 요구되고 민간인과 전투원들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인도법의 보호가 국제적 성격을 띤 무력충돌 시기 동안 부여된다. 그러나 강행규범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그 성질이나 적대행위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무력충돌 시기 동안 금지된다.

36) Yoram Dinste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 5, 1975, reprinted in Henry J. Steiner and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Oxford: Clarendon Press, 1996), pp. 1025, 1028("한 개인의 살해는 그 피해자가 소속한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꾸며진 일련의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집단살해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함).

3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forty-second session (E/CN.4/1985/15, para. 119);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Token Gestures: Women's Human Rights and UN Reporting*, 1993, pp. 6-11.

38)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eleventh session, 1992), para. 6.

1. 국제 무력충돌 중의 전쟁범죄

57.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조항은 국제관습법상의 지위를 얻었고³⁹⁾ 제네바협약의 많은 중대한 위반조항과 다른 조항들 역시 강행법규의 지위를 획득했다.⁴⁰⁾ “[제네바협약의]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의 재판소에 기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⁴¹⁾ 중대한 위반조항이 절차적 측면과 함께 국제무력충돌에 국제관습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한 이 의무는 협약 당사자가 아닌 나라에도 적용된다.

58.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⁴²⁾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⁴³⁾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강간은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네바 제4협약 제147조의 중대한 위반규정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했다.⁴⁴⁾ 게다가 강간은 고문 또는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중대한 위반규정에 의해 금지된다.⁴⁵⁾

59. 강간은 또한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 행위 (indecent assault)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네바 제4 협약 제27조과 “부녀자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특히, 강간, 강제매음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indecent assault)으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하는 제1추가의정서 제76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60. 제네바협약에서 강간을 다루는 규정에 더하여 명백히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여겨지는 육전(陸戰) 법규 관례에 관한 1907년 헤이그 제4협약(the 1907 Hague Convention No. IV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⁴⁶⁾ 그 부속규정 제46조에서 “가족의 명예와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며 이는 강간

39)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Judg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p. 114 (국제관습법을 선언하는 제네바협약의 공통 제3조에 규정된 규칙들은 인도의 기초적 고려사항(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을 대변한다고 판시).

40)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thirty-second session,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Thir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10 (A/32/10) (1980).

41)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제49조;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146조.

42) 일반적으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조항은 “보호인”(protected persons)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진다. 제네바 제4협약 제4조는 보호받는 사람들을 “무력충돌 또는 점령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시점에 그 형식의 여하에 관계 없이 충돌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권한 내에 있는 자로서 동 충돌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한다. 중대한 위반조항은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약당사국이 연루된 국제무력충돌 기간 동안 적용될 의도를 가진다. 협약에 공통한 제3조와 협약의 제2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성질의 충돌에 훨씬 제한된 보호를 제공한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항소부 (Appeals Chamber)는 (Tadic사건에서) 관습국제법으로서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규정은 국제 무력충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결정을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Theodor Meron, “The continuing role of custom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0, p. 243.

43) 단한일 강간행위도 전쟁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Commission of Experts Report (S/1994/674), para. 105 and Rape and Sexual Assault (S/1994/674/Add.2) (vol. I), annex II, para. 16.

44)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ide-Mémoire, 3 December 1992. 또한 Meron, *supra* note 25, p. 26 참조.

45) Ibid. 또 Amnesty International, *Bosnia and Herzegovina: Rape and Sexual Abuses by Armed Forces*, 1993 참조.

46) 1907년의 제4 헤이그규약에 부속된 규칙은 적어도 1939년에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Judgement of the Nürnberg Tribunal, 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1, 1947.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행위라기보다는 명예의 침해로서의 강간 개념은 범죄의 폭력성을 불분명하게 하고, 그 초점을 강간을 하고 인격을 훼손하며 상처를 입히려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온당치 못하게 옳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헤이그규정 제46조는 성에 관해 중립적이고 무력충돌시기에 행해진 성폭력의 남녀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61.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은 대전중의 몇몇 교전국들이 협약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헤이그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물리치면서 헤이그규정상상의 금지는 “모든 문명국가들에 의해 승인되었고, [뉘른베르크] 현장 제6조 (b)에 언급된 전쟁법규의 선언으로 간주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⁴⁷⁾
62. 제2차대전 후 바타비아에 있던 네덜란드 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35명의 네덜란드 여성과 소녀들을 “위안소”에서 노예로 만드는 데 참가한 일본군 피고들을 강간을 포함한 행위, 매춘강요, 강제매춘을 위한 여성과 소녀들의 유괴와 포로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전범으로서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⁴⁸⁾ 좀더 현대적인 상황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성폭력을 이유로 전쟁범죄로 책임을 묻는 수많은 공소장을 발부했다.
63. 노예화는 뉘른베르크 현장과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판결로 증명되듯이 오래 전부터 전쟁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945년 뉘른베르크 현장은 “노예노동”을 위한 민간인의 국외추방을 제6조 (b)에서 전쟁범죄로 열거하였고 이 조항 하의 대부분의 노예노동 기소는 1907년 헤이그규정에 담긴 예전의 금지조항을 언급하였습니다.⁴⁹⁾
64. 1949년 제네바협약은 또한 협약의 중대한 위반규정으로 성노예를 포함한 노예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⁵⁰⁾ 비록 강간, 강제매춘, 성적 학대(sexual abuse)와 같이 노예행위도 제네바 제4협약 제147조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나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147조 해석에 근거하여 “비인도적 대우”(inhuman treatment)는 그러한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⁵¹⁾ 더욱이 강간, 강제매춘과 성적 학대를 위한 노예행위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는 또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고의적으로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것”(wilfu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47) Ibid.

48) U. Dolgopol and S. Paranjape,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3, pp. 135-36.

49) 대부분의 뉘른베르크 노예노동 사건들은 민간인에게 요청된 강제노동의 유형에 관한 제52조와 함께 가족명예에 관한 헤이그협약규칙 제46조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Bassiouni, *supra* note 14도 보라.

50) 중요하게는 제네바 제4협약의 제27조와 제147조는 노예행위와 노예와 같은 관행의 특정한 측면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노예행위와 관련 범죄는 포로의 노동, 특히 건강에 해롭고 위험하거나 굴욕적인 성격의 노동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제49-57조에서 다루어진다. 더욱이 제네바 제3협약 제130조는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정부 번역문. 이 번역은 원문 “wilful killing, torture or inhuman treatment, including biological experiments, wilfu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health”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하는 고문 또는 비인도적 대우, 고의적으로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고쳐야 한다. 역자)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9-57조의 금지규정들을 제130조와 함께 해석하면 다양한 형태의 노예행위는 중대한 위반에 포함된다. Bassiouni, *supra* note 14, pp. 510-512.

51) Jean S. Pictet, et al. (eds.), *Commentary on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58) p. 598 (제14조의 주석); Meron, *supra* note 25; Anne Tierney Goldstein, *Recognizing Forced Impregnation as a War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1993, pp. 9-11.

to body or health)과 “민간인을 불법으로 추방, 이송 또는 구금하는 것” –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명백하게 중대한 위반에 포함된다 – 을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65. 노예행위를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경우 없어서는 안될 소유 또는 지배의 표식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전쟁에 특유한 강제상황에 의해 충족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네바협약 또는 전쟁법규가 허용하는 강제노무가 아닌 다른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전쟁지역에 들어간 경우에 그러하다. 더욱이 강간은 인도법상 결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 성질의 강제된 “서비스”는 언제나 인도법을 폭력적으로 위반한다.
66. 최근에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청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인을 강제노동을 시키고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9명의 여성을 구금한 혐의로 노예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⁵²⁾ 기소장은 이 여성들은 구금된 가정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나 – 이들은 심지어 집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다 – “모두 세르비아계인 군인과 민간인들에 둘러싸여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망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⁵³⁾

2. 국제적 성질을 띠지 않는 무력충돌중의 전쟁범죄

67. 전세계를 통틀어 현대 무력충돌의 대다수는 그 성격이 비국제적 또는 국내적입니다.⁵⁴⁾ 국내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성폭행에 관한 최근의 사례들은 아이티에서 아리스티드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군사 쿠데타 후에 자행된 성폭행, 페루에서 정부군과 ‘빛나는 길’(Shining Path) 반란군 사이에 벌어진 15년간의 충돌 동안 있었던 성폭행과, 알제리, 미얀마, 우간다와 남수단에서 계속되는 교전 동안의 성폭행에 관한 수많은 보도를 포함한다. 알제리에서는 무장집단이 사로잡힌 여성들과 소녀들을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종종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강제, 임시 “결혼”을 위해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들이 어린이를 병사와 노동자로 부리기 위해 유괴하고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성노예와 성폭행의 잔혹한 사례들은 국제적 성격이 아닌 충돌 동안에도 민간인과 전투원을 보호할 필요를 보여준다.

68. 적어도 1907년 이래 헤이그 제4협약 전문의 마튼즈(Martens)조항의 채택으로 국제공동체는 인도법조약 규정이 다루고 있지 않은 충돌이나 상황에서조차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 “문명인들(civilized peoples)이 정해놓은 관행(usages), 인도법(laws of humanity)과 공공의 양심의 명령(the 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으로부터 나오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율에 구속당함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관습법을 구성하는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이 조항이 없었으면 제네바협약이 적용되지 않았을 국내충돌의 모든 교전당사자를 포함하여 어떠한 충돌에서나 모든 교전당사자들이 존중해야 하는 보호원칙들을 제시한다. 공통 제

52) Foca Indictment, *supra* note 31.

53) *Ibid.*, para. 10.2.

54) 이 보고서는 현행 규범을 국내폭력(internal violence) 상황에 적용함에 존재하는 한계를 밝히고 개선하려는 오늘날의 노력을 인정했다. 인권위원회 결의 제1997/21호에 따라 제출된 사무총장의 분석 보고서는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에 대한 틀을 세우려 하고 인권법의 한계와 결점을 다음 세 가지 넓은 범주아래 분류한다: (1) 적용배제에 대한 우려; (2) 인권기준아래에서 무력집단의 책임에 관한 문제와 (3) 국제폭력(international violence)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인권기준의 특정성의 부족(E/W.4/1998/87, para.40).

3조의 규정은 국내충돌의 경우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모두의 행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이라는 주제에 관한 사무총장의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마튼즈 조항과 공통 제3조에 담긴 기본적인 보호사항들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E/CN.4/1998/87, paras. 74, 85).

69. 헤이그 제4협약 제27조와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국내 또는 국제 무력충돌 동안 국가와 비국가행위자가 저지른 성폭력과 강간행위를 관습국제법의 문제로서 명백히 금지한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항소부는 최근에 헤이그협약의 모든 규정뿐만 아니라 공통 제3조가 모든 국내적 무력충돌은 물론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관습법으로서 넓게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입장을 확인했다.⁵⁵⁾ 이 입장은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공통 제3조에 담긴 금지사항은 모든 무력충돌의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인도의 기초적 고려사항”(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중요한 판결에서도 지지되었습니다.⁵⁶⁾

70. 공통 제3조의 넓은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공통 제3조를 국내 충돌에 적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의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간의 우려가 있었다. 제네바협약의 문맥으로 보아 “국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은” 무력투쟁의 경우 주어져야 하는 보호를 열거하는 공통 제3조와 공통 제3조를 “발전시키고 보충하는” 제2추가개정서 모두 국내충돌 중에 행하여진 성폭력과 강간행위에 적용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⁵⁷⁾ 그러나 문제는 제네바협약이 공통 제3조 규정을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충돌 또는 국내분규(internal strife)의 수준을 대체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⁵⁸⁾

71.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몇몇 주석서와 다른 주석서들은 공통 제3조를 발동하기 위해 도달되어야 하는 필요한 폭력의 정도(the threshold of violence)는 매우 상당해야(substantial)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제한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통 제3조의 적용은 국제 무력충돌과 성질상 실질적으로 비슷한 “양측의 군대가 전투를 하는” 무력충돌을 요청한다.⁵⁹⁾ 제2추가개정서에 담긴 공통 제3조의 취급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제2추가개정서는 무력충돌에 해당하지 않는 “폭동(riots),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내부 혼란 및 긴장(internal disturbances and tensions)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2항).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한적인 견해에 의하면 많은 국내 충돌에서 흔히 나타나는 분규(strife)의 정도는 공통 제3조 또는 제2추가개정서의 직접적인 적용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5) ICFTY, *Tadic case*, Appeals Chamber decision, paras. 84, 89.

56) *Nicaragua v. United States*, *supra* note 39, p. 14.

57) 제2 추가개정서, 제4조 2항 마호(“개인의 존엄에 대한 침해 특히 모독적 비하행위, 강간, 강제매춘 및 모든 형태의 비열한 폭행”을 금지함). (원문은 “outrages upon personal dignity, in particular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rape, enforced prostitution and any form of indecent assault”입니다. 제1 추가개정서 제75조 2항 나호는 강간을 제외하면 같은 문언(文言)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outrages),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취급, 강제매춘 및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이라고 한다. 역자).

58) Theodor Meron, *Human Rights in Internal Strife: Their International Protection* (Cambridge, Grotius Publ., 1987), pp. 44-50.

59) Pictet, *supra* note 51, p. 36.

72.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공통 제3조의 적용이 언제나 넓게 확대될 것을 의도하였고⁶⁰⁾ 공통 제3조에 담긴 현행 인도법기준은 모든 충돌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국제공동체는 공통 제3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국내 충돌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똑같은 효력을 가진 새로운 인도적 기준이 나오지 않는 한 국제공동체는 공통 제3조가 모든 충돌에서 모든 국가와 국가가 아닌 무장집단에 적용됨과 공통 제3조에 실제 규정된 광범위한 보호사항 모두를 넓게 이해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73. 국내 무력충돌에 적용될 수 있는 인도적 기준에 덧붙여 모든 경우에 무력충돌의 정도와 상관 없이, 또는 무력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조차 성폭력은 현행 법규범상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 또는 고문으로도 소추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는 모든 이용 가능한 재판관할지역(jurisdiction)에서 소추될 수 있으므로, 범죄가 저질러진 국가에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functioning) 사법법정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제 사회가 잘 기능하고 있는 다른 국내 또는 국제법정에서 그러한 위반을 한 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IV. 개인책임의 추궁

74. 역사는 넓은 범위의 행위자들이 무력충돌중의 국제범죄 수행을 돕고 있음을 보여주고,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를 유죄로 하는 것이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보고서는 책임의 소재를 방지, 억제와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곳에 두기 위해 잔혹한 국제범죄, 특히 대량으로 희생자를 내는 범죄에 대한 책임에는 여러 가지의 서로 중첩되고 맞물린 범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75. 국제범죄에 대한 가장 명확한 범주의 책임은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 전쟁범죄 또는 고문을 구성하는 무력충돌 중의 성노예 또는 성폭력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책임은 특정한 의도와 같은 필요한 고의(mens rea)를 비롯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미수 또는 범죄실행의 음모, 범죄실행의 선동, 청부, 방조 또는 교사와 같은 국제범죄의 관련 형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가해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은 형벌 경감에 고려될 수 있을지 언정 범죄에 대한 항변(defense)이 될 수 없다.⁶¹⁾
76. 명령책임의 법리에 따라 지휘관, 상급자와 기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하에게 성노예 또는 성폭력행위를 저지르도록 명령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지휘관 또는 다른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노예행위, 집단살해 또는 고문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구성하는 국제

60) Ibid. (제3조는 “단지 모든 문명국가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이미 인정되고 당해 국가들의 국내법에 체현(embody)된 특정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므로 제3조의 적용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지적).

61) ICTFY Statute, art. 7; ITR Statute, art. 6.

범죄의 실행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⁶²⁾ 명령책임의 법원칙은 다른 모든 국제형법의 심각한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간과 성폭력행위와 관련된다. 예컨대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의 인도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임무를 가진 유엔의 한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결론내렸다.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성폭행과 강간의 실행이 몇몇 당사자들에 의해 아주 조직적으로 수행되어 정책의 산물이라고 확실하게 여겨질 정도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막지 못하고 일관되게 이 범죄의 가해자를 소추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부작위에 의한 정책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러한 결론의 결과는 명령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⁶³⁾

77. 명령체계(command hierarchy)의 형식 또는 조직의 정도는 명령의 전달과 하급자의 감독을 위한 약간의 명령 계통이 있는 한 적절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명령책임이라는 개념은 군사 또는 준군사적 구조에 제한되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 정치지도자, 정부관리와 민간인당국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78. 예를 들어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위 민간인 관리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는 해당지역의 경찰서장이 성폭력행위를 저지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려 했거나 그리 했음을 “알았거나 알 근거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경찰서장을 처벌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⁶⁴⁾ 이 민간인 관리에게는 강간행위와 남성 성폭행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성폭행에 대한 인도에 반한 범죄를 비롯한 경찰서장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물어졌다.⁶⁵⁾

79. 그러므로 명령책임의 법원칙은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국제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현장에 지침을 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고위직 사람에게 전적으로 적용된다. 지휘관, 상급자 또는 다른 당국자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이라는 기준에 묶어두는 것은 이 수준에서의 책임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성노예 또는 성폭력행위가 광범하거나 널리 알려질 정도로 자행되는 경우 이러한 피고인들은 그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의 실행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은 말할 것도 없이 실제 가해자로서 직접 책임 또는 범죄 실행을 방조하고 교사한 책임을 진다.

80. 명령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조항과 모든 교전자 (belligerents)가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諸)협약 및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을 억제하며 기타 모

62) Commission of Experts Report (S/1994/674), para. 55.

63) Ibid., para. 313.

64) ICTFY, Miljkovic Indictment, paras. 31, 33, 34.

65) Ibid.

든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1항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령책임의 법리에서 이 의무가 가지는 결정적인 중요성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강조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전쟁 당사자들이 이러한 침해를 억제하는 데 실패한 것이 무력충돌의 경우에 성노예와 성폭력행위에 대한 불처벌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입니다.

81. 또 다른 범주의 법적 책임은 참혹한 국제범죄의 실행을 선동, 고무 또는 사주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범주의 범죄자에는 인종, 종족, 종교, 성 또는 기타 상투적인 고정관념을 그러한 정형(stereotype)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폭력을 가하도록 계산되거나 불리일킬 수 있는 방법으로 퍼트리는 선동가와 같이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투치족(Tutsi) 여성에 대한 인종적·성적 고정관념을 신문과 라디오에 내보낸 것이 르완다에서의 집단살해와 이 집단살해 과정 중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력의 자행을 부추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⁶⁶⁾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많은 진술 속에서 가해자들이 폭행의 전 과정에 걸쳐 피해여성에 대하여 종족과 관련된 성적 견해를 밝혔음이 드러나는 것은 놀랍지 않다.⁶⁷⁾

82. 비록 거의 처벌되지 않았지만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범죄 또는 집단살해와 같은 국제범죄의 선동에 대한 선동가들의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집단살해의 선전과 선동(propaganda and incitement)은 뉘른베르크재판소에서 있는 적어도 두 건의 재판에서 문제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어느 나치 출판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반유대주의 잡지를 통해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말살을 부추긴 혐의로 인도에 반한 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⁶⁸⁾ 특정한 의도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역사: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무시(reckless disregard)에 관한 기준은 이 같은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83. 또 다른 범주의 개인책임은 관료조직이나 정치과정에서 특정한 행위나 기능을 수행하여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 고문과 전쟁범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범죄의 공범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종종 민간인이고 흔히 주어진 명령계통 밖에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지위는 아주 세분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실제 비행(非行)에 대한 인식은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종의 합리적 조사(reasonable inquiry)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비시정부의 고위관리였던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은 최근 프랑스법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⁶⁹⁾ 그는 유대인 대학살(the Holocaust)에서의 역할, 특히 강제수용소로 추방된 수천명의 유대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10년형과 460만 프랑(미화 74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파퐁이 받은 형벌은 실제 가해자였을 경우처럼 과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여 사실상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에 기여했고 따라서 공범으로 책임을 묻은 것은 옳바르다.

66) Human Rights Watch, *supra* note 7, pp. 15-19; Jamie Frederic Metzl, "Rwandan genocide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radio jamming",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1, pp. 628-634, 650.

67) *Ibid.*, p. 18; Human Rights Watch, *War Crimes in Bosnia-Herzegovina*, vol. II (1993), pp. 166-167.

68) Metzl, *supra* note 66, p. 636 (citing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ürnberg, 1947, p. 548).

69) Edith Coron, "Papon verdict condemns a collaborator and an era", *The European*, 6 April 1998.

84. 공범의 법리로 개인책임을 묻는 것은 특히 무력충돌중에 성노예와 성폭행과 같은 국제범죄는 종종 실행 수준에서 대개 관료, 공무원과 다른 공직자에 의해 수행되는 잘 짜여진 정책의 결과이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V. 전쟁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할 의무

85. 계승 정부를 포함한 국가는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고문과 특정한 전쟁범죄를 국내법원에서 소추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적법하게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에 상관없이 재판을 위해 피고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이 보고서의 앞 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보편적 사법권을 가져오고, 가해자들은 권한 있는 모든 국내 또는 국제법정에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86. 이 보고서에 기술된 침해행위가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한 협약당사국들은 제네바 제4 협약 제146조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고 “이러한 자를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소”할 추가적인 의무를 진다. 이 의무가 오늘날 적어도 모든 국제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하는 한 이 의무는 또한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의 체포와 소추는 국제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하는 일반의무의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들은 아래 제6장에서 논할 피해자배상과 다른 형태의 구제수단을 포함한다. 국제범죄자의 처벌의무를 이행함에 의하여 국가는 무력충돌중의 성노예와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87.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의 소추에는 아무런 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없다는 것은 잘 확립되었습니다.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행위자의 불처벌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루이스 조아네(Louis Joinet)씨는 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시효(prescription)는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의 경우 효력이 없다. ... [그리고] 아무런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동안 시효는 모든 침해에 관하여 진행될 수 없다”(E/CN.4/Sub.2/1997/20/Rev.1, para. 31). 이 현대적인 원칙은 뉘른베르크재판소 판례의 자연스러운 연장이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의 시효 불적용에 관한 협약>(1968년)과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에의 시효 불적용에 관한 유럽 협약>(1974년)과 같은 특정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의 적용을 다루고 금지하는 국제조약에서 재확인된다. 수많은 국내법원은 사실 나치 전범들을 거의 5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자행한 국제범죄 혐의로, 시효에 근거한 그들의 항변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⁷⁰⁾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이유에서 중대한 침해행위로 인한 배상청구에 있어서 시효의 적용은 금지된다.

VI. 효율적 구제에 대한 권리와 배상의무

88. 인권법과 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의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문제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테오 반 보벤

70) 예컨대 프랑스 법원은 1987년에 나치 전범 클라우스 바비(Klaus Barbie)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78, 1988.

(Theo van Boven) 씨는 자신이 작성한 개정 기본원칙과 지침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침해의 모든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바로잡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여 정의를 실현하게 할” 정당하고 적절한 (fair and adequate)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E/CN.4/Sub.2/1996/17, para. 7). 국제법에 정의된 대로 이 보고서 전체에 걸쳐 사용될 배상(reparations)은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가 취할 것이 기대되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금의 지급, 불법행위자의 처벌, 사과 또는 속죄, 재발하지 않을 것의 보장과 침해의 중요성에 비례한 다른 형태의 배상(satisfaction)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⁷¹⁾

89. 효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는 무력충돌 동안의 성노예, 강간과 다른 성폭력행위에 대한 불치벌과 책임지지 않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명백히 필수적이고, 이러한 만행의 피해자의 권리는 옹호되고 보상되어야 한다.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아무런 법정이나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보상권 행사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러한 것처럼 명백하게 국제규범과 의무의 또 다른 위반을 구성한다. 예컨대 관습법을 포함한 국내법이 남자 친척만이 권리가 침해된 여성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배상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법적으로 스스로 청구하고 배상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90. 같은 맥락에서 반 보벤 씨는 아무런 효율적 구제수단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배상청구의 심리상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E/CN.4/Sub.2/1996/17, para. 9). 반 보벤 씨는 또한 현행 국제법상 인권법과 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민사청구는 어떤 경우에도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ibid.). 인권법과 인도법의 중대한 침해행위의 소추와 배상에 있어 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성노예를 비롯한 중대한 침해를 받은 여성들이 종종 제때에 나서는데 특히 엄청난 사회적, 법적 장애에 부딪힌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장애는 정부 또는 교전단체들이 침해행위의 진상 혹은 규모를 은폐할 때 특히 더욱 심해진다.

Ⅶ. 국내 차원의 소추

A. 국내소추의 중요성

91. 불치벌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절차가 마련된 곳이라면 국내법원에서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을 국내적으로 소추하는 것이 국제법원에서 소추하는 것보다 대개의 경우 더 낫다. 1973년에 총회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구금, 체포, 인도(引渡)와 처벌시 국제협력 원칙”이라는 제목의 결의 제3074(XXVIII)호를 채택하고 특히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로 재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성적 성질의 폭력범죄는 국내소추가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절차적 및 증거법적 보호수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국제공동체가 승인해야 한다.

71)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 485.

92. 무력충돌중의 성노예와 성폭력행위를 국내법원에서가 아닌 국제법원에서 소추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몇 가지 뚜렷하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자행된 곳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내법원에서 무력충돌 동안의 성노예와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소추하는 것은, 젠더를 잘 인식하면서 수행되면 종종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진실을 알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훨씬 더 충족시킬 수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국제소추 대신 선호되어야 한다(E/CN.4/Sub.2/1997/20/Rev.1, para.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 사건들은 국내법원에서 국내범죄라기보다는 국제범죄로 다루어져야 하고, 국제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국내법상의 범죄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93. 어떤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잔혹성 또는 엄청난 규모 때문에 국제법정에서의 공소만이 그 범죄가 세계사회에 가한 상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성노예제와 성폭력행위를 비롯하여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범죄를 대규모로 저질렀거나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 정치지도자나 군지휘관에 대한 재판절차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어느 법정에서나 정당하게 재판될 수 있는 보편적인 관심사로서 국제관습법상 강제규범의 대규모 형사위반행위는 적절하게 전체로서의 국제 사회의 초점이 되며, 이러한 가장 극단적인 사건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94. 성노예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된 사건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소추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종종 부적절하게 따라붙는 낙인을 얼마간 제거하여 이들이 전쟁 전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돕고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유지되어온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한층 더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침해행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가 제 발로 나설 의지나 능력이 있을지는 자명하지 않다. 따라서 충돌이 끝난 뒤의 재판을 지역법원에서 할 것인가는 피해자와 피고 모두가 가지는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B. 국내법과 절차에 공통된 결합

95. 국제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국내사법체제의 능력(competence)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사항은 문제된 국내법체제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바탕에서 법원에서 법적 청구를 제출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 관심사로 적절하게 보호하는 정도입니다. 국내소추에서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성노예와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내범죄가 아닌 국제범죄로 재판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제소송규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 또는 증거에 관한 몇몇 국내규칙들이 여전히 적용되는 한 국내법 또는 절차에 존재하는 성에 근거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국내법원이 여성에 대한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법체제에서는 강간범죄는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로 적절히 정의되지 않는다. 다른 법체제에서는 증거규칙들이 법원에서 여성의 증언에 부여하는 법적 비중을 낮추어 여성에게 자행된 범죄의 적절한 소추를 필연적으로 저해하는 법적 장애가 된다. 또한 어느 법체제가 취하는 강간과 성노예를 포함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법은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강간과 성노예행위에 대한 국제소추가 아닌 국내소추의 전반적인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똑같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법체제는 가해자가 자행한 범죄의 폭력성보다 강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부도덕한 지위를 강조한다.

96. 국내법체제를 개관하면 전세계에 걸쳐 성에 기초한 차별이 형사법과 사법체제에 법제화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성적이지 않은 폭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로 정의됨에도, 강간과 다른 유형의 성폭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범죄로 정의된 경우; 남성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강간이 남자에 의해 (배우자가 아닌) 여자에 대해 저질러지는 행위로 정의되는 경우; 검찰에 의한 소추를 개시하기 위하여 여성이 직접 고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법; 여성이 제출한 증거에 낮은 증거력을 주는 증거관련법; 강간과 성폭력사건의 경우 여성에게 남자로부터의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증거관련법; 강간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결혼한 여성은 간통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실체법; 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된 남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폭력에 대한 형벌규정; 여성이 판사 또는 사실확인자(fact-finder)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 낙태, 피임 또는 출산정보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약하는 법규; 적절하면서도 여성에게 특수한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이 경우 성폭력의 생존자들은 보복공격을 받기 쉽고 이들에 대한 보호 여부는 (중중 생존자들을 “수치스러운 여자”(dishonoured women)로 여기는) 남자친척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97.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세계적으로 많은 가족법과 인적 지위에 관한 법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국내법체제에서는 여성은 남성 친척들의 법적 후견을 받으며 노동이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보유, 처분하거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고 받을 법적 능력이 부정된다. 인도법이 “가족의 명예”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은 오늘날 이러한 여성의 법앞에서의 개인적인 권리능력(또는 인성(人性); personhood)을 부정하게 된 역사적인 고리가 된다.
98. 국내법과 절차의 이러한 결합에 비추어 이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국가가 수사 또는 소추를 수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국내법이나 절차가 피해자의 재판을 할 권리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들어가는 범죄의 국제소추를 요구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 초안(A/CONF.183/2/Add.1)을 넓게 해석할 것을 요청한다.
99. 국내사법체제가 가지는 성노예나 성폭력을 비롯한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일반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는 사형이 적용될 가능성입니다. 국제공동체가 사형과 다른 야만적인 형벌의 점진적인 철폐를 약속하였으므로 사형의 적용 가능성이 포기되지 않는 한 국제범죄의 소추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제법원칙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신장할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 국내재판에 관한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관련된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노예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내소추는 국제소추보다 이러한 범죄의 수사와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체가 이제 임박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재판절차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조차 매년 저질러지는 침해행위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국내적인 차원에서 국내법원이 무력충돌 중에 자행된 국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소추를 계속하는 것은 여전히 긴급하다.

VIII. 권고

101. 무력충돌시의 성폭력과 성노예행위에 현재 존재하는 불처벌의 악순환을 종식시키는 데에는 국제공동체, 국제연합,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의 일치된 행동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현행 법적 틀의 효율성과 이용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행동의 중요 구성부분입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실천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102.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 국가는 국제형사법을 자신의 국내법체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제형사법의 국내법제화는 특징적으로 노예행위와 강간과 같은 성폭력행위를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전쟁범죄, 고문, 인도에 반한 죄와 집단살해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 제복을 입은 군대에 적용되는 군사법규, 행동준칙과 훈련교재는 무력충돌 중의 성폭력과 성노예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네바 제4협약 제146조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는 예컨대 벨기에와 캐나다의 사례를 본받아, 국가와 국가권력에 복종하지 않은 무장단체를 포함한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강행규범 위반과 성노예와 성폭력과 같은 다른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다른 적절한 유엔기구와 협의하여, 인도법을 국내법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그 나라의 영토 또는 관할권 안에 있고 다른 나라에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인도에 반한 죄, 노예행위, 집단살해 또는 고문을 저지른 혐의를 가진 사람을 소추할 수 있는 관할권이 국내법상 부여되는 정도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공개보고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저자가, 다양한 법체제의 검찰총장·법무부·검사,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청(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대표들과 범죄방지와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같은 다른 관련 유엔 프로그램·기구·전문가, 기타 관련 국제·정부·비정부 기구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열어 성폭력에 대한 국제범죄를 국내 차원의 재판에서 효율적으로 소추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촉진할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103. **국내법과 절차에서 성편견의 제거.** 국가는 자신의 법체제가 모든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일치하고 국제범죄를 재판하고 성편견이 없이 사법행정을 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내법원, 공식법률, 관습법과 관행은 실체법규정이나 증거 혹은 절차문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재판할 권리를 촉진하고, 법체제의 모든 수준과 분야에서 – 관련되는 경우 군사 또는 종교법원을 포함하여 –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효율적 구제수단과 다양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관행을 다시 검토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유엔의 여러 기구와 기관, 중요하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의해 시작된 노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소위원회는 유엔의 다른 관련기구와 프로그램과 함께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소추하는 데에 있어서 국내법체제의 모든 수준에서 발견되는 실제, 증거와 절차적 장애물에 관한 정보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부각시키는 출판물의 정기적인 발간을 촉진하여야 한다.

104. **피해자와 증인의 적절한 보호.** 성폭력 요소를 가진 범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를 국제 또는 국내차원에서 소추함에 있어서 재판의 모든 단계와 그 종료 후에도 피해자와 증인을 협박, 보복과 양갚음(reprisals)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된 범죄가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된 국제범죄이고 가해자가 아직 붙잡히지 않았을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보호에는 증인을 다른 곳에 정착시키는 프로그램(relocation programmes)이나 증인 신원의 비밀이 요구된다. 국가·국제 차원의 기소와 (재판 종료 후 필요한 기간 동안)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증인보호프로그램과 여성 통역자를 포함한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지원업무를 위한 적절한 재원,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105.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업무.** 사건이 수사되고 소추될 것에 덧붙여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심리·사회 상담, 법률구조, 응급진료와 원치 않는 임신, 성병과 상해를 포함한 성폭력의 파괴적 효과에 대응하는 산부인과 보건의료와 같은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강간이 인도법의 많은 규정에서 여전히 명예의 침해로 관념되는 한 강간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간을 “여성의 명예”라는 성편견이 있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상해의 성격을 간과하거나 수치심을 생존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무심코 받아들여 적절한 법적 구제와 배상의 기회를 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신체적, 심리적 회복의 모든 측면을 복잡하게 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생존자들은 종종 사회에서 매장되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그 구성원들은 피해자들을 “더럽혀지”거나 어떤 점에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한” 것으로 여겨 사회재통합(reintegration)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성폭력 생존자에 관한 파괴적 태도는 여자, 남자에 관한 저열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하는 국제의무에 따라 당국이 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벌이는 캠페인을 통해 능동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국가는 무력충돌중의 성폭력(sexual or gender violence)을 통한 박해의 두려움에 근거하여 난민의 지위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권한을 확보하고, 그러한 청구를 돕기 위해 훈련받은 통역이나 법률전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망명과 난민 결정절차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106. **제안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시행할 책임을 맡은 여러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청의 관련 전문가 사이에 계속되는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고등판무관은 원칙들을 발전시킬 모임을 만들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과 소추가 젠더관점(gender perspective)을 그 내용과 직원채용에 완전히 통합시킬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진행될 것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효과적인 문서작성 기술과 지역 비정부기구와 여성단체와의 공동작업을 비롯한 성폭력 소추에 관한 지침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에서 직원에 대한 젠더문제에 관한 교육(gender training)이 포함된다.
107. **공극적인 소추를 위한 기록 작성(documentation).** 현지조사단과 다른 부서를 통해 일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충돌상황에서의 성폭력에 관하여 기록하고 문서화를 촉진하는데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유엔 직원을 특정적으로 훈련하고 고등판무관 자신이 그러한 기록노력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고등판무관실이 책임을 맡거나 조정하는 모든 감시단에 여성통역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증인과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할 장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 작성의 모든 노력은 범죄자의 가능한 소추를 목적으로 하여 벌여야 하고 국제법정에서 그러한 소추가 이루어지도

록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성폭력을 기록하는 데에는 국제·국내 차원에서 수사관, 정부기구와 비정부단체, 인도적 구호단체, 건강진료 제공자, 언론인들이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피해자와 증인의 트라우마를 줄이도록 협력해야 한다. 성폭력의 기록과 수사방법은 지역 여성단체, 인권단체, 건강진료 제공자와 같은 대안적이고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것을 포함한다.

108. **적대행위 종료시의 행동.** 적대행위가 끝났을 때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조약에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인권조약과 원칙들을 비준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우는 “인권에 관한 장(章)”을 포함시키는 것이 점차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국제범죄의 범인의 처벌과 피해자 배상은 일반적으로 평화협상이나 협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사실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나 다른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노예행위, 집단살해와 고문과 같은 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은 종종 사면된다. 무력충돌, 기타 적대행위나 국가권력의 이전을 낳는 상황이 끝난 후에 국가는 명시적으로 평화조약에 불처벌의 순환을 끊고 무력충돌 과정에 저지른 성노예와 강간과 같은 성폭력행위의 효율적인 수사와 구제를 보장하도록 짜여진 규정을 담아야 한다. 덧붙여 적절한 배상과 소추를 위한 행정적 절차(schemes)가 평화협정의 실제규정에 마련되지 않은 경우, 평화조약은 배상청구권과 다른 형식의 법적 구제에 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UN을 비롯한 국제공동체는 적대행위의 종료 후에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국내법체제를 다시 세우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충돌 중에 자행된 국제범죄,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의 적절한 소추를 보장해야 한다.

109. **효율적면서 젠더를 고려한(gender-sensitive) 대응의 필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이 대개 남녀 구별 없이 성폭력의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죄의 성격과 결과는 젠더와 특수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수사, 소추, 배상과 무력충돌에 참가하는 사람의 훈련과 같은 모든 법적, 초법적(extralegal)인 대응 속에 그러한 특수성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젠더의 통합은 어떠한 성폭력이라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여성들이 종종 성폭력의 커다란 위협에 직면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위협은 – 비록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모든 법체제와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종족, 인종 또는 종교적 소수민의 지위와 결부될 경우 특히 일어나기 쉽다. 동시에 무력충돌의 맥락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이 아닌 성격의 폭력으로도 고통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강간당한 여성을 예컨대 단지 “강간 피해자”로 성격지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견뎌야 했던 침해행위들의 전체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젠더에 대한 이해를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에 대처하는 법적 틀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충돌의 모든 당사자의 의무와 법적 책임의 전 범위를 주의깊게 규정할 수 있고 적절한 방지, 수사과 피해자 배상을 포함한 민·형사 구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IX. 맺는 말

110. 마첼 여사가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살인과 고문과 같은 유린행위는 오래 전부터 전쟁범죄로 비난받아왔으나, 강간은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부산물로 경시되어왔다”(A/51/306, para. 91). 그러나 무력충돌 중에 자행된 성폭력을 국제범죄로 소추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태도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켰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작업)을 정의를 위한 이러한 캠페인의 진일보로 환영하고 이 재판소들이 이 점에서 가능한 최상의 관행을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바란다.

111.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인도법, 인권법과 형사법의 국제법적 틀은 언제나 충분히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과 성노예를 명백히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인 관할권을 제공한다. 국제법은 특히 무력충돌 상황 동안의 여성의 경험과 그들이 받은 해악의 진정한 성격을 더 잘 반영해야 하고, 일관되고 젠더문제에 잘 대응하는(gender-responsive) 관행을 통하여 앞으로 법적 틀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동안 성노예와 성폭력의 효과적인 소추와 구제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의지의 부재입니다.
112. 성폭력에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 고문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하는 필요한 요건이 존재하면 그러한 범죄로 고소되고 소추되고 보상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무력충돌이나 폭력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1) 성폭력과 성노예를 밝혀내어 기록하고, (2) 그러한 유린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확보하도록 법적 틀을 적용하고, (3) 그러한 유린행위의 피해자가 적절한 경우 배상을 비롯한 형사법 및 민사법상 완전한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곧바로 취하여야 한다. 성노예와 같은 노예행위의 국제범죄는, 그 금지가 진정한 보편적 사법권을 낳는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력충돌 중 여성에게 자행된 잔학한 폭력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쓸모있는 근거입니다.
113.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 고문과 전쟁범죄의 가해자는 국가행위자이건 아니건 사건의 정황과 법정에서 그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적절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용 가능성에 따라 국제 또는 국내 차원에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어진 명령계통 안에 있는 모든 당국자에게 적용되는 명령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충돌상황에서 미래의 성폭력을 막을 수 있고 보호, 집행, 역제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도에 반한 죄, 또는 집단살해와 같은 범죄, 또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노예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제적 차원에서 지휘관을 소추하는 데에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죄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을 적절한 국제범죄로서 국내재판으로 소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국제범죄의 실행을 선동, 청부하거나 공범행위를 통해 실행에 기여한 사람들 역시 사건에 따라 그들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4. 우리 모두에게 창피스럽게도 전술로 쓰여진 강간과 다른 유형의 성폭력을 비롯한 남성과 여성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대규모 침해가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상황에 개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광범위하고 빈번하며 구제되지 않은 강간과 다른 유형의 성폭력행위는 이제 막 일어나는 충돌의 중요한 지표이고 이런 경고는 대량학살과 강제추방의 보도와 똑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제공동체는 이러한 무력충돌 상황의 조기경고에 빨리 대처해야 하고 인도적, 외교적, 예방적 간섭은 이러한 성 또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다루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115. 무력충돌은 어디에서나 매일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더 심하게 한다.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사회의 경제·사회·정치·문화 생활에 참여할 여성의 평등권이 보호받고 촉진되어야 한다. 여성의 완전한 평등과 참여가 없이는 무력충돌중의 조직적 강간이나 성노예를 방지하기 위해서나 전쟁에서 회복하여 사회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목 차

머리말

- I. 일본정부의 입장
- II. 강간수용소의 성격과 범위
- III. 당시 국제관습법의 실체규범
 - A. 노예제와 노예무역
 - B. 전쟁범죄로서의 강간
 - C. 인도에 반한 범죄
- IV. 실체법의 적용
- V. 일본정부의 반론
 - A. 법의 소급적용
 - B. 노예의 금지
 - C. 강간과 강제매춘
 - D. 조선의 지위
- VI. 구제
 - A. 개인의 형사책임
 - B.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
 - 1. 개별적인 손해배상
 - 2. 민사손해배상소송
 - 3. 청구권해결에 관한 협정
 - C. 권고
 - 1. 형사소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
 - 2. 법적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
 - 3. 손해배상의 적절함
 - 4. 보고의무
- VII. 맺는 말

머리말

1. 1932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정부와 일본제국군대는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을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강간수용소(rape centres)에서 강제로 성노예상태에 빠트렸다. 이 강간수용소를 불쾌할 정도로 완곡한 말인 "위안소"(comfort stations)로 흔히 불렀다. 이 "위안부"(comfort women)¹⁾의 대다수는 조선에서 왔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일본의 지배를 받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이 끌려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잔학행위로부터 살아남은 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부록은 일본 관헌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강간수용소를 세우고, 감독·유지하는데 관여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립된 사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일본정부가 시인한 사실들에 바탕하여 이 부록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위안소"에서의 여성의 노예화와 강간에 대한 일본정부의 현재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책임에 대한 근거가 수없이 존재하겠지만 이 보고서는 특히 가장 잔혹한 국제범죄인 노예범죄,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록은 또한 국제형사법상의 법적 틀을 살펴보고 생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한다.

I. 일본정부의 입장

2. 일본정부는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강간수용소를 설립하고 감독하는 데 직접 관여한 정도를 다년간 부정하다가 마침내 일본 '내각 외정(外政)심의실'에 의한 1993년 8월 4일자 "중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조사결과 및 같은 날짜의 내각 관방(官房)장관 담화(E/CN.4/1996/137, annex I)에서 "위안소" 설치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한 바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전시(戰時) 공문서와 군인과 예전에 "위안부"였던 사람들과의 면담을 검토한 것을 담았다. 이 부록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1993년의 조사는 "위안부"의 개인적 및 성적 자율성을 빼앗고 여성의 보건을 이들이 마치 가재도구나 되는 것처럼 통제해온 것을 강조한다.

3. 일본정부는 최근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식 사죄를 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5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전쟁의 상처가 아직 깊고",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로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입힌 깊은 상처의 하나입니다. 이는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는 중군'위안부'로서 결코 아물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한 것입니다.²⁾

4. 이러한 사과와 인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군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E/CN.4/1996/137 참조). 특히 여성폭력 문제(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Radhica Coomaraswamy)씨의 보고서(E/CN.4/1996/53/Add.1)에 응답하면서 일본정부는 실제법상의 여러

1) 이 말은 뚜렷하게 모욕적인 뜻을 가지며 오로지 역사적 맥락에서만 이 구체적인 만행에 붙여진 말입니다. 이 범죄를 가리키는데 불행히도 이와 같이 완곡한 말을 쓰게 된 것은 많은 점에서 국제 사회 전체와 특히 일본정부가 침해행위의 본질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정도를 보여준다.

2) 국민기금에 나온 일본 수상 토미이치 무라야마의 발언. 1995년 7월. 인권 위원회의 52번째 회의에 제출된 일본의 여성과 "위안부"에 대한 범죄 보고서 참조. (E/CN.4/1996/137, ammx).

근거에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국제형사법의 최근의 발전 또는 진보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고, (b) 노예범죄는 "위안소"를 통해 세워진 제도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며 노예제의 금지는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용 가능했던 국제법상 관습규범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c) 무력충돌중의 강간행위는 1907년의 제4 헤이그협약에 부속된 규칙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효력을 가진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규범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았으며, (d) 전쟁법은 어쨌거나 일본군이 교전국의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행동에만 적용되고 따라서 일본군의 일본인 또는 조선사람에 대한 행위는 다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조선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에 병합되었기 때문이다(ibid.).

5. "위안소"에 대한 일본군부의 직접적인 관여에 관한 일본정부의 사과가 있는 다음 일본정부는 1995년 7월 "일본과 세계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³⁾ 국민기금은 "오늘날 여성이 부딪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여성 NGO를 지원하고 조사와 학술연구를 지원하며 여성 관련 문제를 다루는 모임과 회의를 열고 "위안부"에 관하여는 일본 대중으로부터 직접 모금하여 만들어진 "보상"(atonement)기금을 통하여 "일본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와 반성을 이 여성들에게 전달할" 것을 추진한다.⁴⁾

6. 법적 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위안부" 개인에게는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주장으로서(alternatively) 일본정부는 또한 이러한 여성들이 손해배상에 대해 가졌을지 모를 개별적 청구권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일본과 다른 아시아국가들 사이에 맺은 평화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강간수용소에 관한 모든 민사 또는 형사사건은 이제는 시효규정의 적용에 의한 시간적 장애로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E/CN.4/1996/137 참조).

II. 강간수용소의 성격과 범위

7. 일본정부와 군부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 전역에 걸쳐 강간수용소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이 수용소에서 일본군에 의해 노예가 된 여성들은 - 많은 이가 11살에서 20살 사이였다 - 일본이 지배하는 아시아의 곳곳에 수용되어 매일 강제로 셀 수 없이 강간당했으며 혹독한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성병에 노출되었습니다.⁵⁾ 이 여성들 가운데 단지 약 25퍼센트만이 이러한 매일매일의 학대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⁶⁾ 이 "위안부"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군부는 물리적 폭력, 유괴, 강요와 속임수를 동원하였습니다.⁷⁾

3) Asian Women's Fund, ibid.

4) Ibid.

5) Karen Parker and Jennifer F. Chew, "Compensation for Japan's World War II war-rape victims",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17, 1994, pp. 497, 498-499.

6) Ibid, p. 499와 note 6 (일본 내각의 자민당 위원인 세지로 아라후네의 1975년 발언에 따르면, 145,000명의 한국인 종군 '위안부'가 2차대전 당시 죽었다고 한다.)

7) Ibid.

8. 정부기구와 NGO의 예비조사는 3가지 범주의 "위안소"를 밝혀냈다: 즉 (1) 일본군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는 곳, (2) 형식상으로 민간업자가 관리하지만 사실상 군부의 통제 아래 있고 군인과 민간고용자가 전적으로 이용하는 곳, (3) 군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나 일본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⁸⁾ 두번째 범주의 "위안소"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믿어진다.⁹⁾ 비록 일본정부는 일본군부가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일본은 모든 법적 책임을 끈질기게 부정하였습니다.¹⁰⁾

9. 일본정부의 자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사실들을 강조한다:

(a) **위안소 설치 이유.** "위안소는 여러 곳에서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세워졌다. 그 당시의 정부 내부문서는 위안소 설치의 이유로 당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일본군인의 강간과 다른 불법행위의 결과로 끓어오르는 반일감정을 막을 필요, 성병과 기타 질병으로 인한 군 전력의 손실을 막을 필요와 첩보행위를 방지할 필요를 들고 있다"(E/CN.4/1996/137, p. 14);

(b) **시기와 장소.** "몇몇 문서가 1932년 소위 상하이사변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주둔한 군대를 위해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위안소는 그때 즈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존속했다고 여겨진다. 그 시설의 규모와 지리적 범위는 나중에 전쟁이 확대되면서 팽창되었다"(ibid., pp. 14-15);

(c) **민간업자에 대한 군의 통제.** "일부 지역에서 구(舊)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한 경우가 있지만 많은 위안소는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시설이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당시 일본군부는 그 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시설을 차려주고, 운영시간과 이용요금을 정하며,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과 같은 문제에 관한 위안소규칙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ibid., p. 16);

(d) **위생상태에 관한 군의 감독.** "'위안부'의 감독과 관련하여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와 위안소의 위생관리의 목적으로 위안소규정의 하나로 피임도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위안부'에게 성병과 기타 질병이 있는지 검진하는 조치를 부과했다."(ibid.);

(e)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몇몇 위안소는 위안소규칙을 통해 외출시간 동안 갈 수 있는 목적지와 외출시간을 제한하여 '위안부'를 통제했다. 하여튼 전쟁구역에서 끊임없이 이 여성들은 군사통제 아래에서 군대와 함께 움직이도록 강제되었고 그들이 자유가 박탈되었으며 비참함을 견뎌야 했다는 것은 명확하다"(ibid.);

(f) **모집.** "많은 경우에 군당국의 요구를 대변하는 위안소 운영자들의 부탁을 받은 민간인 알선업자들이 '위안부' 모집에 나섰다. 전쟁이 확산되어 점차 더 많은 '위안부'에 대한 요구가 밀려들며 따라 이 업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여

8) The First Report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Centre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War Responsibility, 31 March 1944, pp. 3-4.

9) Ibid.

10) Ibid., pp. 5-16 and E/CN.4/1996/137, annex.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3rd session, 1996, report III (part 4A), 문단 103-107, 114 역시 참조.

성들을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자신의 의사에 거슬러 모집되도록 하였고 관헌 등이 모집에 직접 가담한 경우조차 있다"(ibid., p. 17);

(g) **수송.** "적지 않은 경우에 여성들은 군용선박과 군차량으로 전쟁구역에 수송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일본군의 패배에 뒤따른 패주의 혼란 속에 내버려졌다"(ibid.).

10. 일본정부가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이른바 "위안부"가 민간인이 경영하는 매음굴에서 "일했다"는 반복된 주장과는 달리, 많은 이가 당시 아직 소녀에 불과했던 이 여성들은 사실은 일본군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일본군부가 완전히 알고 지원한 강간수용소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이 여성과 아이들은 "위안소"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붙잡혀 와서는, 그 범죄의 성격이 인도에 반한 범죄로밖에 적절히 기술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로 강간과 성폭력행위를 당하였습니다.

III. 당시 국제관습법의 실체규범

11. 이 부록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정부와 일본 제국군대에 의한 "위안부"의 노예화에 적용될 수 있는 관습 국제법규범을 검토하면서 특히 노예, 전쟁범죄로서의 강간과 인도에 반한 범죄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규범에 초점을 둔다.

A. 노예제와 노예무역

12. 의심할 것도 없이 노예제와 노예무역은 "위안소"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금지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재판은 단지 "국제법에 있어서 그때까지 ... 목적이었던, 즉 ... 민간인을 절멸하고 노예로 만들거나 강제추방하는 것이 국제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게 하였습니다."¹¹⁾ 실제로 특히 노예제의 금지는 명백하게 강행규범의 지위에 올랐다.¹²⁾ 따라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전역에서 여성을 노예로 만든 것은 그 당시에도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의 명백한 위반이었다.

13. 19세기 초까지 많은 국가들은 이미 노예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¹³⁾ 이 금지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끝장낼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체결한 다자간 국제협정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¹⁴⁾ 일찍이 1855년에 노예무역은 "모

11) R. Jackson, The Nuremberg Case xiy-xy, 1971 (The Final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Nuremberg Trials인용)

12) Parker and Chew, supra note 5, p. 571 and note 135; Bassiouni, main report, note 14 참조.

13) Renee Colette Redman,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enslavement: the first human right to be recogniz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hicago-Kent Law Review, vol. 70, 1994, pp. 759, 760; Slavery, Mohamad Awad가 준위원회에 제출한 1966년 보고서를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67. XIV. 2) 재정비하여 Senjamin Whittaker가 제출한 특별 보고서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 84. XIV. 1)

14) Humphrey, main report, note 33.

든 문명국가에 의해 금지되고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한 국제중재사건이 있었다.¹⁵⁾ 1900년에 이르러 노예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완전히 뿌리뽑혔다.¹⁶⁾ 주목할 만하게는 일찍이 1872년에 페루의 무역상인을 노예범죄로 유죄판결한 사건에서 일본은 유사 이래로 노예무역을 사실상 금지해왔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¹⁷⁾

14. 1932년까지 노예무역,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관련된 관행을 진압하는 국제협정이 적어도 20개가 체결되었습니다.¹⁸⁾ 더욱이 1944년에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그 국내법상 노예제를 금지하였습니다.¹⁹⁾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노예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널리 퍼짐에 따라 국제연맹이 발전시킨 1926년의 노예협약은 노예를 "소유권에 따라붙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관습국제법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²⁰⁾

15. 노예제 금지의 관습법적 성격은 전쟁규칙 가운데 민간인의 처우를 규율하는 일련의 법에서도 똑같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금세기에 채택된 전쟁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문서의 하나인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은 민간인과 교전자(belligerents)를 노예화와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나치전쟁범죄자에 대한 뉘른베르크 판결은 1907년 헤이그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국제관습법을 명확하게 선언한다고 확인했다.²¹⁾

16. 연합국은 뉘른베르크 법원의 공식 현장 제6조 (c)에 따라 "전쟁범죄"의 혐의로 수많은 전쟁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뉘른베르크 현장의 전쟁범죄는 "점령지역의 또는 그 안에 있는 민간인을 학대하거나 노예노동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 추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현장 제5조(c)도 비슷한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의 성문화에 근거한 일본과 독일의 전쟁범죄자의 소추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노예제를 명백하게 금지했던 기준을 포함하여²²⁾ 뚜렷하게 그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준에 근거했음을 인식하는 것은 다시금 중요하다.²³⁾

15) J.S. Moore, *History and Dige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s to which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Party*, vol. 3, 1989, pp. 2824, 2825에서 인용된 The Lawrence case.

16)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es: Digest/ Index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1815-1985*, vol. 1, 1986, p. 41.9 and main report note 14 (국제적인 노예 제도의 폐지 경향 증가를 자세히 설명)

17)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s to Japan on "sexual slavery"*, 7 February 1994 (communication to the Government of Japan) 참조.

18) Bassiouni, main report, note 14.

19) *Ibid.*, pp. 283-287 (비록 1844년 이전에는 일본 법에 노예 제도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납치나 강제 구금 등의 죄목에 적용할 수 있었다.)

20) The First Report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supra note 8, p. 79참조; Redman, supra note 13, p. 763 (1937년에 이르러 노예 제도 위원회가 국제 관습법이 되었다고 인용)참조.

21) Finn Seyfersted,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Law of Peace and War*, 1996, pp. 180-182 참조.

22)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vol. 1, p. 218. 참조.

23) 1945년 12월 11일의 유엔 안보리 의결 95 (I)은 "뉘른베르크 재판소 현장으로 국제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의도였다; General Assembly document A/64/Add.1 of 1946; Yvonne P. Hsu, "'Comfort Women' from Korea: Japan's sex slave and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for reparations",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 vol. 2, 1993, pp. 97, 110; The First Report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supra note 8, p. 76.

B. 전쟁범죄로서의 강간

17.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전쟁법은 강간과 강제매춘도 금지한다. 전쟁규칙에 관한 몇몇 초기의 권위있는 문서(sources)들은 – 가장 두드러지게는 1863년 리버법전(Lieber Code) – 전쟁동안의 강간 또는 여성의 학대(mistreatment)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²⁴⁾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강제매춘과 강간의 혐의로 소추되어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더욱 확증한다.²⁵⁾ 1907년의 헤이그협약규칙은 또한 "가족의 명예와 권리는 ...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²⁶⁾ 실제로 국제관습법을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찍이 헤이그 협약의 "가족의 명예"라는 용어를 받아들인 제네바 제4협약 제27조²⁷⁾는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비록 강간을 폭력범죄가 아닌 여성의 명예에 대한 범죄로 성격지우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정확하지만 적어도 최초의 "위안소"가 설치되었을 때에 이미 국제관습법이 강간과 강제매춘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잘 확립된 원칙입니다.²⁸⁾

C. 인도에 반한 범죄

18. 사람들을 광범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 또한 적어도 반세기 동안은 인도에 반한 범죄의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점은 비록 무력충돌과의 연결이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에 필요한 요건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러한 범죄가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졌을 때 특히 그렇다.

19. 뉘른베르크 헌장 제6조 (c)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전쟁범죄자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소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관리이사회 법률 제10호는 "모든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노예화, 추방 그리고 다른 비인간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열거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도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도 노예화, 노예노동을 위한 추방과 다른 비인간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나열하였습니다.

20. 노예화에 덧붙여, 광범하거나 조직적인 강간행위도 역시 뉘른베르크헌장과 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헌장에 담긴 인도에 반한 죄의 전통적 정의에 있어서 "비인간적 행위"의 일반적 금지 속에 들어간다.²⁹⁾ 좀더 최근의 반인도적 범죄의 성문화에서 "다른 비인간적 행위"라는 잔여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강간은 국내 또는 국제무력충돌

24) Meron, main report, note 25; Frits Kalshoven, article 3 of the Convention (IV)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 of War on Land, signed at The Hague, 18 October 1907, in "Remembering what we have tried to forget", ASCENT, 1997, pp. 16-30 참조.

25) John A. Appleman, Military Tribunal and International Crimes, 1994, p. 299 참조(강요된 매춘을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 Batavia의 1946년 Washio Awachi case를 인용); Hsu, supra note 23, pp. 109-110; Meron, main report, note 25, p. 426, note 13; Verdict 231 of the Temporary Court-Martial in Batavia ("강요된 매춘을 위하여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 "매춘하도록 강압하는 것", "강간" 등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다수의 피고인들을 이러한 법적 배경하에 판결내림)

26) Hsu, supra note 23, p. 107 참조(국제법이 '위안부'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family honor" 인용); U. Dolyopol and S. Parajape, main report, note 48, p. 160 ("family honor란 단어는 가정 내에서 여성이 강간이라는 굴욕적인 억압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27) Pictet, main report, note 51, p. 201, note 1 (제네바 조약의 제27조항이 헤이그 조약의 제46조항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언급); Theodor Cler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orms as Customary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47.

28) Hsu, supra note 23, p. 111 and note 97 참조 (제네바 조약은 기존에 있던 국제 관습법을 명문화 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Pictet, main report, note 51, p. 205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은 1929년의 전쟁 포로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

29) main report의 논의 참조.

이 진행되는 동안 저질러지며 민간인에게 겨냥된 인도에 반한 죄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된다. 이러한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5조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제3조를 포함하는데 두 조항은 모두 명시적으로 노예화와 강간을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행위로 들고 있습니다.

21. 계획, 정책 또는 설계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요건으로 여겨지지만³⁰⁾ 광범한 침해행위에 직면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필요요건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³¹⁾ 더욱이 군인과 특정한 지위를 갖는 민간인 모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IV. 실체법의 적용

22. "위안부"의 처우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이라는 말의 통상적인 용법 속에 들어가고 노예제를 "소유권에 따라 붙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라고 한 1926년 노예협약상의 정의와 합치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습니다. 나아가 일부 여성들은 매입되었고, 따라서 고전적인 노예제의 틀에 쉽게 들어맞는다. 그러나 금전이 오갔다는 것이 노예제의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될 수는 없다. 어느, 또는 모든 "위안부"가 자율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여 이들에 대한 일본군의 대우가 물건을 다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한 노예화에 대한 형사책임은 앞서 말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과 그들의 상급지휘자 모두에게 명백하게 부과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안부"의 경우, 일본정부의 자체 연구들은 이 여성들이 개인적 자유를 빼앗기고, 군대와 장비와 함께 전쟁지역의 안팎으로 옮겨지고, 성적 자율성에 대한 통제가 부정되었으며, 군대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치 물건을 다루듯이 재생산 보건(reproductive health)에 관하여 추악하게 규제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23. 일본정부가 기술적으로 노예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정된 경우에 "위안부"들은 적어도 허용되는 "강제노역"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여전히 명백하게 강간당했으며 전쟁지역 안에 붙들려 있었다.³²⁾ 강제매춘과 강간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그 행위들이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을 인정했다. 명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해악이 정기적인 강간과 강제적 성행위를 포함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전쟁법을 위반한 강간과 강제매음으로 쉽게 성격지워진다.

24. 이렇듯 자행된 범죄의 엄청난 규모와 일본군이 이러한 강간수용소의 설치, 유지 및 규제에 명백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위안소"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일본관헌들도 동일하게 인도에 반한 범죄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정부 자신도 일본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여성들과 소녀들이 겪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진다.

30) Meron, main report, note 25.

31) Rape and Sexual Assault, main report, note 10.

32) The First Report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supra note 8, p. 76.

V. 일본정부의 반론

A. 법의 소급적용

25.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었을 때 피고들과 일부 학자들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소추는 합법성(legality)의 원칙(nullum crimen sine lege, 죄형법정주의)을 위반한다고 항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범죄는 재판소의 헌장에서 새로이 정의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들은 그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³³⁾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위안부"를 노예로 만들고 강간하여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였다는 예전에 "위안부"였던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 비슷한 주장을 하였습니다.³⁴⁾

26.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강간과 노예화의 국제범죄가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관습규범으로 명백하게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중의 일본군의 행위는 범죄가 저질러졌던 기간 동안에는 금지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쉽게 배척된다. 50년 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비슷한 주장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이 주장은 이미 설득력이 없었고 앞에서 말한 이유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B. 노예제의 금지

27. 국제관습상 노예제의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이미 명백하게 확립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형사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도쿄와 뉘른베르크 헌장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제관습법으로서 노예의 금지는 전쟁법으로서 적용되거나 또는 무력충돌의 성격이나 그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실체법 위반행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강간과 강제매춘

28. 일본정부는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이 "계약국들이 노무부대(the armed labour force)에 대한 훈령과 같은 형태로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협약상의 "가족의 명예"라는 말을 "위안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박하려고 하였습니다.³⁵⁾ 일본정부는 요컨대 강간행위는 헤이그협약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이러한 해석은 헤이그협약을 전쟁법에 관한 국제관습법으로 받아들인 것과 무력충돌 동안 민간인에 대한 강간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다른 전쟁법의 법원(法源)과 상치된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명예"라는 말에 담긴 강간의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구속력이 있었던 국제법 규칙에 해당한다.

33) Bassiouni, main report, note 26, pp. 114-139; Appleman, supra note 25, pp. 46-53; Hsu, supra note 23, p. 109, note 84참조.

34)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E/CN.4/1996/53/Add.1). 이 문서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인권 위원회의 51번째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배포됨, pp. 15-19, 23.

35) Ibid., p. 24.

D. 조선의 지위

29. 일본은 또한 노예화와 강간을 금지하는 국제관습법 규범들이 점령지역에서의 민간인만을 보호하고 그 본국에 있는 민간인은 보호하지 않는 전쟁법에 바탕하기 때문에 조선여성들은 이러한 규범들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논거로 책임을 부인하려고 하였다[역자: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조("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무력충돌 또는 점령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시점에 그 형식의 여하에 관계없이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권력 내에 있는 자로서 동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다") 참조]. 조선이 문제가 된 시기 동안 일본에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들은 조선여성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30.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예제에 관한 금지는 전적으로 전쟁 범죄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다. 전시(戰時)와 평화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관습법 위반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서 이러한 행위들은 범죄가 저질러졌던 시점에서의 한반도의 영토적 지위에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의 잔학한 위반으로 명백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규범들은 조선여성들이 점령지역에 있는 민간인이었는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VI. 구제

31. 국제관습법상 일본정부는 "위안부"에게 자행된 잔학행위에 대한 구제(redress)를 제공해야만 한다. 구제는 예전에 "위안부"였던 여성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별적인 손해배상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대안적으로 손해배상을 또한 예전에 "위안부"였던 시민을 대신하여 국가들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그 후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그 기금을 배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관리와 군인들 또한 강간수용소를 세우고 유지한 죄책에 대하여 소추되어야 한다.

A. 개인의 형사책임

32.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군 장교와 병사 개인들은 그들이 야기한 해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0년이 흘러갔을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한 이 사람들은 재판에 넘길 수 있으며 또 넘겨져야만 한다.

33. 이러한 소추의 선례는 오래 전에 있었다. 1946년 네덜란드 정부가 행한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시의 임시 군사 재판소(Temporary Court Martial Tribunal)는 강제매춘과 강간을 목적으로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납치한 혐의로 9명의 일본군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³⁶⁾ 이와 유사하게 필리핀 법원은 일본군 장교를 강간죄로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³⁷⁾ 국제관습법을 적용하면서 뉘른베르크와 도쿄 법원 역시 개개의 군장교, 그들의 상급지

36)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JFBA), Recommendation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January 1995, p. 26; David Boling, "Mass rape, enforced prostitution, and the Japanese Imperial Army: Japan eschews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2, 1995, pp. 533, 545 참조.

37) JFBA., ibid.

휘관 및 독일과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946년에 국제 연합 총회는 1946년 12월 11일의 결의 제95호(I)에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과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원칙이 유엔 회원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라고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34. 더욱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11조는 일본이 극동 국제군사재판소(IMTFE)과 일본 국내와 국외에서 다른 연합국의 전범재판소가 내린 판결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덧붙여 비록 뉘른베르크 헌장이 "인도에 반한 죄"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썼을지라도 이것은 실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국제관습법상 종전에 허용된 행위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오펜하임에 따르면:

"전쟁법 전체는 그 명령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군대의 구성원이든 아니든 그 국민들도 구속한다는 전제에 바탕한다. 그러한 한도에서 <유럽의 추축국의 주요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1945년 8월 8일의 협정>에 부속된 헌장이 진정한 의미의 전쟁범죄(war crimes proper)와 인도에 반한 죄로 기술된 범죄에 대한 개인책임을 선언하는 한 이 헌장에서 어떠한 새로운 혁신도 암묵적으로 도모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례에 근거하여 개별 장교들은 그들의 범죄로 명백히 처벌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³⁸⁾

35. 병사 개인의 책임에 덧붙여 군장교와 정부관리도 그의 명령을 받는 병사와 관리들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유지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명령책임의 법리는 상급지휘관이 그 부하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a) 상급자가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나 아무런 방지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b) 그 행위가 저질러졌으나 상급자가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³⁹⁾ 이 법리는 수만명의 필리핀인들과 미군 포로들의 살해에 대하여 일본군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대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미국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의 재판에서 국제소추의 근거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의 근거에 있는 원칙들은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났는데 독일의 황제와 그 휘하의 지휘관들이 "전쟁 동안 저질러진 야만행위들을 최소한 완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전쟁범죄자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베르사이유에서 권고되었습니다.⁴⁰⁾ 학자들은 명령책임의 토대는 15세기 프랑스⁴¹⁾와 기원전 19년 로마제국⁴²⁾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이 원칙은 몇몇 뉘른베르크 재판과 전후 베트남에서 1969년 마이 라이(My Lai) 학살에 대한 메디나(Medina) 미군 대령의 재판에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소추는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규범을 적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36.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일본군부가 폭넓고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은 일본군의 고위 장교들이 "위안소"의 존

38)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es*, H. Lauterpacht (ed.), 7th ed. (London, New York: Longmans Green, 1948-1952), sect. 153.

39) Christopher N. Crowe, "Command responsibility in the former Yugoslavia: the chance for successful prosecution", *University of Richmond Law Review*, vol. 29, 1994, pp. 131, 132; Security Council Regulation 877 (1953) 참조.

40) Crowe, 같은 자료. (Leon Friedman에서 열린 평화 위원회 준비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 인용), *The Law of War: A Documentary History*, vol. 1 (New York: Random House, 1972), pp. 842-853, 854)

41) L.C. Green, "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ransnational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5, 1995, pp. 319, 120.

42) Crowe, supra note 39, p. 194.

재에 대하여 실제로 인식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음을 확증한다. "위안소"에 관여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중간급의 일본군 장교들이 "상급자의 명령"이라는 항변을 제기하여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부과되는 형벌을 경감할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³⁾

37. 일본이 "위안소"체제를 시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Sexual Slavery by Japan)는 "위안소"의 운영에 관여한 일본군 장교를 비롯한 사람들을 형사소추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쿄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⁴⁴⁾ 일본정부는 이 고소를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군부의 강간수용소를 운영하거나 출입한 모든 살아 있는 개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38.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도 역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특히 노예행위,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의 원칙은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비난되는 범죄의 가해자들을 체포한 모든 국가가 그 범죄들을 소추하는 것을 적절히 허용하기 때문이다.⁴⁵⁾ 국제법이 보편적 사법권의 행사를 허용하지만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수 있으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다.⁴⁶⁾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이러한 법률의 근거는 캐나다 밖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 또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그 범죄가 캐나다 안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가정하여 재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법 제7조(3.71)입니다.⁴⁷⁾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행해진 재판의 피고는 나치의 명령을 받아 유대인을 강제로 구금하는 것을 도왔던 헝가리의 전직 헌병이었다.⁴⁸⁾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국내법원에서 "위안소"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일본군과 정부관리를 소추하기 위해 그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는 국내법규의 집행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통역의 제공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오늘의 시점에서 개별 장교 또는 지휘관에게 제기될 수 있는 형사소추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는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범죄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될 수 없다. 실제 1953년에 범죄에 대한 국제재판권에 관한 유엔의 보고서(A/2645)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은 현행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⁴⁹⁾ 바비 재판에서 프랑스 대법원(Court of Cassation)은 같은 맥락에서 국제관습

43) Anthony D'Amato, "Superior orders vs. command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0, 1986, p. 604; The Llandovery Castle case. Judgement in the case of Lisutendnts Dithmat and Boldt, Supreme Court of Leipzig, 15 January 1921. Reprinted 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1922, p. 708.

44) "Complaint" <http://www.peacenet.or.kr/jdh/e_comfort/library/complaint/comp.htm>.참조.

45) Theodor Meron, "International criminalization of internal atrociti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1995, p. 554; Filartiga v. Pena-Irala, 530F.2nd876 (United States 2nd Cir. 1980) 참조

46) Meron, *ibid*, p. 569.

47) Regina v. Finta, 88 C.C.C. 3d.417 (1994) 참조.

48) *Ibid*.

49) Friedl Weiss, "Time limits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3, 1982, pp. 163, 185.

법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⁵⁰⁾ 덧붙여서 조약법은 국제공동체는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국제법의 잔학한 위반에 대한 소송을 시효에 관한 법을 이유로 막을 수 없다고 확인한다[역자: 1968년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시효의 불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New York, 26 November 1968, 75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73), 제1조 (b) (한국 가입하지 않음). 또한 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European Treaty Series No. 82, 25 January 1974; 1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540 (1974)도 참조].

40. 만일 공소시효의 적용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새로운 중대한 사실(material facts)이 드러나게 된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일본의 "위안소"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청문회는 1992년까지만 해도 열리지 않았고 1993년에야 비로소 일본정부가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한 것에 대한 일본군부의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안부"들의 적절한 공소제기를 방해한 예외적인 사정과 일본군부가 이러한 강간수용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볼 때, 정의(正義)의 비추어 적용 가능한 시효는 1992년 일본정부가 인정한 날보다 일찍 시작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B. 국가책임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

41. 정부와 그 관리는 정부에 의해 수행된 행위와 "정부의 명령 또는 그의 권한 부여(또는 수권(授權))에 따라 수행된 하급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원(原)책임"(original liability)이라는 이론에 따라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명백했다.⁵¹⁾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는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nquency)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제불법행위"는 "국제법의무에 위반하여 국가원수 또는 정부가 다른 국가에게 저지른 침해"로 구성된다. "국가원수와 정부의 행위와 맞먹는 것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의 명령이나 권한 부여에 따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행위입니다."⁵²⁾ 책임이 있는 국가는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그 직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 공무원의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⁵³⁾ 그러므로 국가는 그 국가기관이 그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불법한 침해를 야기한 경우 그 개인에게 침해행위가 저질러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군부의 요청에 따라 "위안소"를 경영하고 이익을 얻은 민간인 개인을 포함하여 그 군대와 모든 기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⁵⁴⁾

42. 일본정부는 또한 "위안부"에게 가해진 해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상 국가는

50) *Federation nationale des deportes et internes resistants et patriotes v. Barbie*, *International Law Review*, vo. 78, 1988

51) Oppenheim, *supra* note 38, sect. 140.

52) *Ibid*, sect. 151

53) *Ibid*, sect. 150.

54) 일본 군대가 세 번째 종류의 위안소에서 여자들을 대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군대는 오펜하임에 의해 정립된 원칙(같은 자료, sect. 149), 즉 국가나 그 국민, 혹은 그 국가의 영토내에 잠시 살았던 외국인에 의해서 가해진 불확정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vicarious liability"이론에 영향을 받게 된다.

외국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있기까지 국제 관습법을 반영하는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제3조는 1907년 협약을 위반한 계약국은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고 "그 군대를 구성하는 인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책임과 손해배상의 원칙은 사용자책임(respondeat superior)의 원칙이 국제법에 확대 적용되어 국가가 그 군대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든 것이라고 한다.⁵⁵⁾ 헤이그협약 제3조에 따라 각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수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⁵⁶⁾

43. 이러한 법적 규칙들은 적어도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어 1927년에 일반청구위원회(General Claims Commission)는 제인스 사건에서 멕시코정부가 혁명중에 남편을 살해한 사람을 체포하여 소추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미망인에게 배상금을 주었다.⁵⁷⁾ 위원회는 멕시코정부가 "범죄자를 성실하게 소추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자신의 의무에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⁵⁸⁾ 이 판정에서 위원회는 국가가 불법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은 범죄행동에 대한 승인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부를 살인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만든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물리쳤다. 대신 위원회는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지 못한 것은 국가에 의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금은 제인스의 죽음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금(compensatory damages)과 처벌되지 않아서 모욕감(indignity)을 느끼는 가족에 대한 추가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⁵⁹⁾

44. 일본정부는 또한 국제협약법(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이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개별적인 "위안부"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⁶⁰⁾ 그러나 이 주장은 1920년대 후반에 국제법이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을 해쳤을 때 그 국가는 그 외국에게 침해를 가한 것이므로 침해받은 개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명백히 근거가 없다. 더욱이 국제법은 개인도 "국제법이 부여하는 권리와 부과하는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한다.⁶¹⁾

1. 개별적인 손해배상

45. "위안부"들은 일본정부가 개개인에 대한 진정한 사죄, 일본정부와 군부(army command)의 관여에 대한 승

55) Kalghoven, supra note 24, p. 9.

56) E/CN.4/Sub.3/1986/17참조:the JBFA(supra note 36, pp. 22-25)는 이 원칙이 일본으로 하여금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했다.

57) Janes case (United States v. Mexico), United Nation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4, 1926, p. 22.

58) Ibid, p. 82.

59) Ibid, p. 89.

60) Views of the Government of Japan, supra note 34, pp. 28-32.

61) Oppenheim, supra note 38, sects. 1, 7.

인, 국제법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인정과 개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표명하였다(E/CN.4/1996/53/Add.2 참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1919년 파리평화회의(베르사이유조약), 도쿄 전범재판소 현장과 국제관습법을 비롯한 국제법의 여러 법원(法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문서와 이론들은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테오 반 보벤이 그의 연구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제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개인들이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유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뜻한다. 예컨대 베르사이유 조약은 개인들이 독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46. 특히 헤이그협약 제3조의 "첫번째 목적"은 "처음부터 개인들에게 (헤이그)규칙을 위반한 행위의 결과로 겪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⁶²⁾ 비록 이런 말이 제3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의 입법사는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⁶³⁾ 특히 "배상"(reparation)은 원상회복(restitution), 손실보상(indemnity), 금전배상(monetary compensation)이나 변제(satisfaction)의 형태를 띠 수 있는 반면⁶⁴⁾ "제3조는 특정적이고 유일하게 '손해배상'(compens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⁶⁵⁾ 이 말은 그 정의상 "... 손해를 메우기 위한 일정액의 금전의 지불"을 의미한다.⁶⁶⁾ 따라서 "훨씬 더 일반적인 '배상'(reparation)이란 말 대신 이 용어를 쓴 것은 ... 이 조항의 초안자들이 개인, 즉 전쟁법의 피해자(victims of the laws of war)들이 겪은 침해 혹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를 원할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⁶⁷⁾

47. 덧붙여 호르쥬 공장사건에 관한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1927년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 이전의 상태가 원상회복(예컨대 재산의 반환)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⁶⁸⁾ "위안소"의 피해자들이 이런 위반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PCIJ 판결들도 비슷하게 사적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권리가 국제법상 존재함을 확인한다.⁶⁹⁾ 사실 일본 자신도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개인배상의 필요성은 아닐지라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본이 구제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만을 언급하는 한국과 필리핀과 체결한 협정과 달리 다른 몇몇 연합국과 체결한 협정은 특정적으로 개인적 구제를 언급한다.⁷⁰⁾ 예컨대 그리스·일본의 협정, 영국·일본의 협정, 캐나다·일본의 협정은 모두 "국제

62) Kalshoven, supra note 24, p. 11.

63) Ibid.

64) Ibid.

65) Ibid, pp12-13.

66) Ibid, p. 12

67) Ibid.

68) Chorow Factory (Merits),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Judgement No. 13, Series A, 8-17, 1927, p. 29. The Van Boven study 도 역시 참조.

69) PCIJ Advisory Opinion No. 15, Series 8, No. 15, pp. 17-18.

70) 그리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와의 협정에는 모두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에게 점령되었던 지역들과는 그러한 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법에 따라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는 ... 전쟁상태(state of war)가 존재하기 전에 발생한 개인적 침해 또는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⁷¹⁾ 특히 다수의 조약을 통해 시행된 (일본)정부의 사전 자인에 비추어 개인배상이 정부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48. 요컨대 "위안부" 개개인은 일본정부와 관현의 손에 의해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민사손해배상소송

49. 일본정부가 자신의 계속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존하는 "위안부"들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일본 법원이 적절한 구제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의 성격과 규모를 볼 때 이러한 구제는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추구되어야 한다.

50. 명백히 일본은 "위안부"의 비극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제기에 가장 알맞은 곳입니다. 최근"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에 관한 1998년 4월 야마구치(山口) 지방법원 시모노세끼(下關)지부의 판결은 이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마침내 일본법원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⁷²⁾ 이 최근의 사건에서 일본지방법원은 일본정부가 '위안부'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의무를 지며 "수 년 동안 '위안부'를 소홀히 하여 피고국[일본]은 고통을 가중시켰고 새로운 해악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⁷³⁾ 법원은 더욱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을 검토해보면 '위안부'제도는 극히 여성차별적이고 인종주의[역자: 또는 민족차별]적이며 여성들을 욕보이고(disgrace) 인종적[역자: 또는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며 일본국헌법 제13조에 명기된 기본적 가치에 관련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생각된다."⁷⁴⁾

51. 법원의 판결은 중국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세 명의 여성에게 각각 30만엔(약.미화 2,300불)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⁷⁵⁾ 다른 여러 사건들도 재한일국인⁷⁶⁾은 물론 필리핀인, 한국인⁷⁷⁾, 네덜란

71) Richard S. Lillich and Burns H. Weston, *International Claims Their Settlement by Lump Sum Agreement, Part II: The Agreements* (Charlottesville: Univ. Press of Virginia, 1975), pp. 334, 231, 249.

72) "부산 종군 '위안부' 여성들과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보상 요구와 이들에 대한 사과 요구", 1998년 4월 27일의 판결(1997년 10월 29일의 구두 주장에 이어), Shimomoseki Branch, Yamaguchi District Court (비공식 번역).

73) Ibid.

74) Ibid.

75) Ibid, Dan Grunbaum, "WWII sex slaves win historical lawsuit", United Press International, 28 April 1998 참조.

76) Beling, *supra* note 36, p. 545.

77) "8명의 시민이 전쟁에 대해 일본을 고소하다". New York Times, 26 January 1994, p. a 9. 참조. 원고 중에는 적어도 한 명의 종군 '위안부'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드인⁷⁸⁾과 중국인⁷⁹⁾ 단체에 의해 일본에 제소되었습니다. 최초의 사건은 1991년⁸⁰⁾에 제소되었고 적어도 6개의 서로 다른 여성단체들이 1996년 6월 현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⁸¹⁾

52.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구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안부"는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인정하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구제의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the Alien Tort Claims Act, ATCA)은 미국의 법원에 국제법이나 미국이 체결한 조약법에 위반하여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심리할 재판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길은 "위안부"에 의해 구제를 위한 잠재적 법정으로 활발하게 추구되어야 한다.

3. 청구권 해결에 관한 협정

53. 일본정부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어떠한 책임도 부정하면서 대신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어쨌든 적대행위가 종료된 다음 체결된 평화조약들의 적용을 통해 해결되었거나 포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역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 6. 22. 서명, 1965. 12. 18. 발효(조약 172호)] 제2조에 의거하는데 이 조항에서 당사국들은 "양 체결국(兩締約國)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결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강조는 필자의 것)고 합의하였습니다.

54. 다른 나라의 국민에 대하여서도 일본정부는 비슷하게 모든 청구권이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서명한 평화조약[역자: 1951. 9. 8. 서명, 1952. 4. 28. 발효(일본조약 5호), 横田喜三郎·高野雄一, 『國際條約集』(1990年版), 503]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이 조약 제14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제14조는 또한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포기(waiver)조항에 의존하여 이 조약이 예전에 "위안부"였던 사람의 청구를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이 포기 조항(제14 (b))은

"이 조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의 수행중에 일본국과 그 국민이 취한 행동으로 생긴 연합국과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적인 군사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한다.

55. 이러한 조약을 통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일본정부의 시도는 두 가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a) 강간수용소의 설치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 개입은 이 조약들이 작성되었을 때 감추어졌는데 이 결정적 사실로 이

78) "법정에서 증언하는 두 명의 전사 종군 '위안부'", Japan Economic Newswise, 3 July 1996 참조.

79)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종군 '위안부' 돕기 기금 마련 계획", Asian Political News, 15 July 1996 참조.

80) Dolgopol and Paranjape, main report, note 48 참조.

81) "전 종군 '위안부'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다", The Daily Yomiuri, 20 July 1996, p. 2 참조.

조약들에 의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도 이제는 형평의 근거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b) 이 조약들의 명백한 문언은 일본군이 인권 또는 인권법을 위반하여 자행한 행위의 피해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배제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6. 이 조약들과 다른 전후의 조약이 서명되었을 때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끔찍한 취급에 있어서의 일본군부의 개입 정도를 은폐했다.⁸²⁾ 한국, 필리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이 전쟁 동안 여성과 소녀들이 노예가 되고 강간되었다는 것이 뚜렷하게 널리 알려졌을지라도 일본제국군대의 조직적 개입은 전쟁이 끝난 다음 일본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아니라 민간"업자"(entrepreneurs)가 의심받고 이러한 강간수용소의 출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종종 비난받았다.

57. 일본정부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관여를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왔고 실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을 볼 때, 전쟁청산 협정(settlement agreements) 또는 다른 전후 조약들이 "위안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해결할 의도였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명국들이 당시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믿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58. 또한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조약문을 볼 때 이 협정이 이들 국가 사이의 "재산"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조약이고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임은 자명하다.⁸³⁾ 이 조약에는 "위안부", 강간, 성노예 또는 일본군이 한국 민간인에게 자행한 다른 잔학행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 조약 규정들은 재산과 두 나라 사이의 통상관계를 언급한다. 사실 일본의 협상자는 조약 교섭 동안 일본은 한국에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모든 잔혹행위에 대해 배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해진다.⁸⁴⁾

59. 더욱이 한국 대표가 일본에 제시한 청구의 개요를 보더라도 "협상 중에 어떤 것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노예협약, 부녀자인신매매금지협약[역자: 'International Convention of 30 September 1921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as amended by the Protocol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20 October 1947'(한국 가입하지 않음). 또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 1962년 5월 14일 발효 (조약 제93호), 외무부, 『다자조약집』 제1권 참조] 또는 국제관습법 규범의 위반으로부터 나오는 개인적 권리의 침해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⁸⁵⁾ 그리고 일본은 서방국가와의 조약에서 명시적인 사죄를 하고 개

82) Parker and Chew, supra note 5, p. 502 참조.

83) Tong Yu, "Reparations for former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6, 1995, pp. 528, 535-536 참조.

84) Hsu, supra note 23, p. 118 참조.

85) Dolgopol and Paranjape, main report, note 48 참조.

인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합의하였지만 한국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⁸⁶⁾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청구권"(claims)이라는 용어의 포괄적(generic) 사용은 따라서 이러한 사실적 배경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명백히,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제공한 자금은 단지 경제복구만을 의도한 것이었지, 일본의 만행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1965년 조약은 겉으로는 포괄적인 말을 쓰고 있음에도, 그 자체로서는 단지 두 나라 사이의 경제와 재산 청구권만을 소멸시킬 뿐이지 사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일본은 여전히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⁸⁷⁾

6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1년 평화조약의 명백한 문언은 모든 "배상청구권"과 "전쟁...중에 일본국과 그 국민이 취한 행동으로 생긴 연합국과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강조는 필자의 것)을 포기한다. "배상"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을 구별함에 의하여 이 문언은 포기가 연합국 국민의 배상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포기조항에서 고려된 유한일 배상은 연합국 자신의 것입니다. 포기조항에 의해 고려된 연합국 국민의 유한일 청구권은 배상 "이외"의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위안부"였던 사람들에게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조약에서 논의된 청구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기조항에 의해 전혀 금지되지 않는다.

61. 덧붙여 중국이 비록 1951년 평화조약의 서명국이 아니지만 이 조약은 전쟁 후 중국의 일본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조약은 제21조에서 중국은 일본이 져야할 특정한 배상을 규정한 제14조 (a) (e)에서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중국이 제14조 (b)의 포기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이 포기조항은 중국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약이 중국국민이 일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62. 더욱이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협정에 관하여는 일본정부가 위안소의 설치, 관리와 규제의 모든 측면에서의 일본군부의 관여 정도를 1951년 평화조약 (체결) 당시에 밝히지 못했으므로 형평과 정의의 이익에 비추어 일본이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⁸⁸⁾ 추가적인 형평의 원칙으로서 강행법규법이 원용되면 그러한 근본적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피소된 국가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단지 기술적인 것에 불과한 사항을 원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일본은 명백하게 공평과 정의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약에 근거하여 제기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항변을 언제나 스스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C. 권고

1. 형사소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

63. 유엔 고등인권판무관(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일본의 강간수용소

86) Hsu, supra note 23, pp. 103-104 참조.

87) Parker and CHew, supra note 5, p. 538; Dolgopol and Paranjape, main report, note 48, pp. 164-165

88) Yu, supra note 83, p. 535

의 설치에 관한 일본군부의 행위에 이제 명백히 연결된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이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소"에 대한 모든 책임자들을 찾아내어 소추할 의무를 완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자신의 관할권 안에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소추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판무관은 일본 관리들과 함께 (a)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강간수용소를 설립, 지원하거나 출입한 군인과 민간대원(civilian personnel) 개개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b)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c) 재판을 위해 준비한 사건자료들을 일본 검찰에 건네주고, (d) 다른 국가와 생존자 단체와 함께 그 나라에 있는 범죄자를 확인, 체포, 소추하기 위해 협력하고, (e) 국가들이 그 관할권 안에서의 그러한 소추를 허용하는 입법을 발전시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돕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2. 법적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

64. 차별방지소위원회는 다른 유엔 기관들과 같이 1995년 국민 기금의 창설을 "환영"하였습니다. 국민 기금은 1995년 7월 일본정부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에서 설립되었고 "위안부"의 요구를 건의하는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생존한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을 민간 재원으로부터 모집할 기구로써 의도되었습니다.⁸⁹⁾ 그러나 국민 기금이 지불한 "보상"금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이 기금은 "위안부" 비극의 피해자인 개별 여성들에 대한 공적, 법적 배상을 제공해야 할 일본정부의 책임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65. 국민 기금이 어떤 의미에서도 법적 배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제적 대표자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기금(administrative fund)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은 일본정부와 함께 국내와 국제 인사로 구성된 위원단을 임명하여 "위안부"에게 공식적인 금전배상을 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 새 위원단의 역할은 따라서 (a)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을 지침으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배상 결정, (b) 기금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효율적 체계의 수립과 (c) "위안부"의 모든 청구권을 신속하게 심리할 행정법정을 일본 내에 설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⁹⁰⁾ 그러한 조치들은 더욱이 '위안부'의 고통에 비추어 가능한 한 빨리 취해져야 한다.

3. 손해배상의 적절함

66. 적절한 배상 수준은 침해행위의 심각성, 범위와 반복성, 자행된 범죄의 고의성, 공적 신뢰를 저버린 공무원의 과실의 정도와 그 동안 경과한 장구한 시간(따라서 구제가 오랫동안 지연되어 야기된 심리적 피해와 화폐의 현재 가격의 상실)과 같은 고려사항들에 기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아픔, 고통과 감정적 비탄(distress), 교육을 비롯한 잃어버린 기회, 소득과 소득능력의 상실, 합리적인 의료비와 기타 재활 비용, 명예 또는 존엄에 대한 피해와 구제를 얻기 위해 든 법률 또는 전문가의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과 보수와

89) Asian Women's Fund, supra note 2, p.1.

90) Dolgopol and Paranjape, main report, note 48.

같은,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적용된다. 이러한 요소에 근거하여 적합한 수준의 배상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⁹¹⁾ 또한 그러한 가혹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억제책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4. 보고의무

67.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안부"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배상하며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것과 관련한 진전 보고서를 적어도 일년에 두 차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본 국내와 국외에, 특히 "위안부" 자신들과 그들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Ⅶ. 맺는 말

68.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인권법과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즉 전체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진다고 결론내린다. 이에 반대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근거에 놓인 인도법상의 노예화와 강간의 금지를 공격하려는 주장을 포함하여, 50여 년 전에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설득력이 없다. 덧붙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조약과 배상협정을 통하여 이미 전쟁으로 인한 모든 청구권을 해결하였다는 일본정부의 주장 역시 똑같이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주로 아주 최근까지 일본정부가 일본군부의 이러한 강간수용소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의 정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과 다른 아시아 정부 사이에 평화와 배상협정이 협상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점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침묵하였기 때문에 법과 정의의 요청상 일본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소멸시키기 위해 오늘날 이러한 평화조약에 의거할 수 없다.

69. 적대행위가 종료된 이래 반세기가 넘게 이러한 청구권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성의 생명이 계속해서 경시되고 있는 정도를 입증한다. 슬프게도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로 자행된 성적 성질의 범죄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저질러지고 있는 비슷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정도가 증가되어왔다.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피해입은 2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과 노예화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위한 몇몇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과 그러한 책임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완전히 그리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일본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http://www.archive814.or.kr/ViewerJS/web/viewer.html?file=%2Fattachment%2F852%2F24482.pdf>

91) Parker and CHew, supra note 26

12. 미국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미국 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2007. 7. 30)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군'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들을 공식 징집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에 의해 가용된 군성매매로서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 강간, 낙태 강요, 모욕, 신체 마비·사망·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던바 20세기 인신매매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건 중 하나이며,

일본 내 일부 신규 교과서는 일본군'위안부' 비극과 제2차 대전 중 일본의 전쟁 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일본의 관리들은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담은 1993년 고노 관 방장관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억제에 관한 국제협정'에 서명하였고, 2000년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지지하였으며,

하원은 일본이 인간 안보,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 법의 지배를 증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지지하는 것을 평가하고,

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이익(security interest)의 초석인 동시에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냉전 후 전략적 환경(strategic landscape)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은 계속해서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의 보전과 증진, 인권 및 민주주의 체제의 보호, 약국 및 국제 사회 구성원들의 보호와 번영 등 양국 간에 공유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가치에 기반할 것이며,

하원은 일본 관리 및 일본 시민들이 열심과 열정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민간 아시아 여성 기금이 설립된 것을 평가하고,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일본 국민들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죄(atonement)를 위해 570만 불을 모금 하였으며,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대부분 정부 지원 기금으로 충당된 사적인 기금으로서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사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동 기금의 시한은 2007년 3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동 날짜를 기준으로 해체 되었는바,

미 하원은 일본 정부가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함.

- (1) 1930년대부터 제2차 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군이 일본군'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 (2) 일본 총리가 공식 자격으로 공개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과거 일본 정부의(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의 성격 및 진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임.
- (3) 일본군을 위한 일본군'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함.
- (4) 일본군'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미래 세대를 교육시켜야 함.

출처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http://www.archive814.or.kr/Archives/Type/view/15082>

13. 헌법 재판소 부작위 위헌 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2011. 8. 30. 2006헌마788)

【판시사항】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기본권침해 위협의 절박성, 기본권의 구제가능성, 작위로 나아갈 경우 진정한 국익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

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인용보충의견

법정의견에 덧붙여, 대한민국은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작위의무의 도출근거는 헌법의 명문, 헌법의 해석, 법령의 규정 3가지입니다. 우선,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前文)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그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조약이기에 위 협정 제3조로부터 '우리 정부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작위의무'는 도출될 수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협정 제3조에 기재된 외교적 해결, 중재회부 요청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는 선례(헌재 2000. 3. 30. 98헌마206 결정)도 있는데, 다수의견은 결론적으로 위 선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말하는 '외교적 해결의무'는 그 이행의 주체나 방식, 이행정도, 이행의 완결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힘든 고도의 정치행위 영역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만 사법자체가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된 후 인간의 존엄과 가치마저 송두리째 박탈당한 이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구제해 주어야 할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 간절하나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헌법적 법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피청구인에게 그 외교적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한계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3. 12. 23. 89헌바189, 판례집 5-2, 646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판례집 20-2상, 91, 100-101

【당사자】

청 구 인 이○수 외 63인 대리인 변호사 차지훈 외 14인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주문】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 (1)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피청구인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그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2) 대한민국은 1965. 6. 22. 일본국과의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 (3)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본국은 위 청구권이 위 규정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인들의 위 청구권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한·일 양국 간에 이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5.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위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일본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결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

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 (1) 일본국이 청구인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가한 인권유린행위는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자 매매 금지에 관한 조약’, ‘강제노동금지협약(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조약)’ 등의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협정의 대상에는 포함된 바 없다.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타결된 것은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만이고, 우리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국은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는 2005. 8. 26.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국의 법적 책임이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한·일 양국간에 이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
- (2)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상 경로나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계약국에게 위 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해결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에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 (3)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전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및 이 사건 협정의 체결 당사자로서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작위의무가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인 외교적 보호권에 대응한 외교적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 (4)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조치나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권력의 부작위는 위의 헌법규정들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요지

-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자신들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행위와 그 책임의 주체는 일본 정부이고 우리 정부가 아니며, 정부의 외교행위는 넓은 재량이 허용되므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우리 정부는 청구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힘닿는 대로 노력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그 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취하는 외교적 행위 또는 그 밖의 평화적 해결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귀속주체는 ‘국가’일 뿐 ‘개인’이 자국 정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여부 및 행사방법에 관해서는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해석상으로도 일방 계약국이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을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은 국가가 국익을 고려하여 외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의 배경 및 전체적 경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협정의 체결경위 및 그 후의 보상처리과정

- (1)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써 재한 구 일본재산(在韓 舊 日本財産)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에 발효한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습니다.
- (2) 한편, 1951. 9. 8.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서는 한국에게 일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위 조약 제4조 a항에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주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협정으로써 처리한다는 것을, 제4조 b항에 일본은 전기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일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 (3) 위 조약 제4조 a항의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국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10. 21. 예비회담 이후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이 사건 협정과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 (4)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권 관계 해설자료’에 의하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5.)시 우리 정부는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이하 ‘8개 항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 한국에서 반출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 지은을 반환할 것, 2. 1945. 8. 9. 현재, 일본 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3. 1945. 8. 9.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금액을 반환할 것, 4. 1945. 8. 9.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 재산을 반환할 것, 5.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6.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 법인 주식 또는 그 외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7. 전기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것, 8.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고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의 8개 항목입니다.
- (5) 그러나 제1차 회담은 위 8개 항목의 청구권 주장에 대응한 일본 측의 대한·일본인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되었고, 이후 독도 문제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이견,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다.”는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久保田) 망언 및 양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제4차 한·일회담까지는 청구권 문제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6) 그 뒤 8개 항목에 대한 실질적 토의가 이루어진 것은 제5차 한·일회담(1960. 10. 25.~1961. 5. 15.)이었는데, 8개 항목 각 항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은 대체로,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및 지은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반출한 것이므로 반환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제2, 3, 4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군정법령 제33호가 공포된 1945. 12. 6. 이후의 것에 한하며,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측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측에 철저한 근거의 제시를 요구, 즉, 구체적인 징용, 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제5차 회담의 청구권 위

원회에서는 1961. 5. 16. 군사정변에 의해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8개 항목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 (7) 이에 1961. 10. 20. 제6차 한·일회담이 재개된 후에는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시일만 소요될 뿐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측면의 접근이 모색되었습니다. 1961. 11. 22. 박정희·이케다 회담 이후 1962. 3. 외상회담에서는 한국 측의 지불요구액과 일본 측의 지불용의액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한국 측의 순변제(純辨濟) 7억 불에 대하여 일본 측의 순변제 7만 4천불 및 차관 2억 불이라는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 (8)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은 당초부터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하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될 뿐 아니라 38선 이남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금액도 적어져서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없게 될 터이니,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나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와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해결할 것을 처음에 주장하였고, 그 후에 다시 양보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 및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하되 그 금액을 각각 구분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 (9) 이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에서 이케다 일본 수상과 1차, 오히라 일본 외상과 전후 2차에 걸쳐서 회담하고, 오히라 외상과의 1962. 11. 12. 제2차 회담시 청구권 문제의 금액, 지불세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양측 정부에 건의할 타결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구체적 조정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5. 4. 3.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이동원과 일본의 외무부 대신이었던 시이나 간에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65. 6. 22. 명목을 구분표시하지 않고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을 무상 및 차관으로 지불하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 (10) 그 후 우리 정부는 1966. 2. 19.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1971. 1. 19.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그 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와 위 회담 과정에서 대일 민간청구권자로 논의되어 알려졌던 민사채권 또는 은행예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민사청구권 보유자에 한정되었고, 그 뒤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합계 91억 8,769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11)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 사건 협정체결을 위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8개 항목 청구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협정 체결 후 입법조치에 의한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제기과 진행

- (1) 1990. 11. 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과 1991. 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순(1997. 12. 사망)의 공개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2) 일본 정부는 그에 관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군‘위안부’를 민간의接客업자가 군을 따라다니며 데리고 다닌 ‘매춘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당시 중앙대학 교수이던 요시미 요시아키(吉

見義明)가 1992. 1.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군'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관계공문서 6점을 찾아내자, 그 입장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의 출현과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안팎의 여론에 밀려 진상 조사에 착수한 일본 정부는, 1992. 7.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가, 1993. 8. 4. 제2차 정부조사결과와 함께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4) 위안소는 1932년 상해사변시 구 일본군 병사에 의해 강간사건이 다발하면서 현지인들의 반발과 성병 등의 문제로 이어지자 그 방지책으로서 일본해군이 설치한 것이 최초였다. 일본군은 1937. 7.부터 중일전쟁으로 병력을 중국으로 다수 송출하면서 점령지에 군위안소를 설치했는데, 1937. 12. 남경대학살 이후 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군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만을 유화시키며, 특히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식민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고용'함으로써 군의 기밀이 새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1941년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점령지역에서도 군위안소를 설치했다. 공문서에 의해 확인된 군위안소설치지역으로는 조선, 중국, 홍콩, 마카오, 필리핀 등 일본이 침략한 지역입니다. 일본군'위안부'의 수는 8만에서 10만 혹은 20만 정도로까지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80%는 조선 여성들이었고, 그 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국적은 필리핀, 중국, 대만, 네덜란드 등입니다.

(5) 이에 우리 정부는 1993. 6.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법률 제4565호)'을 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 사건 협정으로 이미 모두 해결된 상태라서 새롭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994. 8. 31.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훼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도적 견지에서 개별적인 위로금이나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아시아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 한국, 대만 등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아시아여성발전기금의 본질이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판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정당한 배상의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기금에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기금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예산과 민간모금액을 합쳐 위 기금이 지급하려 한 4,3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7) 한편, 김○순을 비롯한 9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 12. 6. 일본을 상대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2004. 11. 29.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로 막을 내렸다. 위 소송과정에서 항소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원고들이 안전배려의무 및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3항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1992. 12. 25. 제기된 부산 군대성노예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에서도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고, 최고재판소에서 2003. 3. 25. 상고불수리결정이 내려졌다. 나아가 재한일국인 송신도 등이 1993. 4. 5. 제기한 군대성노예 사죄보상소송도 2003. 3. 28.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8) 이에 우리 정부는 2004. 2. 13.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관련문서가 공개되자,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피청구인을 정부위원으로 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2005. 8. 26. 결정을 통해, 이 사건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

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래에서 보는 미 하원의 결의안 채택,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정기검토회의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정식 채택에 맞서서, ① 고노 담화를 통한 사과, ② 이 사건 협정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③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가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9) 위와 같은 일련의 일본 정부의 조치 및 태도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로부터도 수용되지 못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는데, 그 첫 번째 보고서인 1996. 1. 4. 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는, 2차 대전 때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국의 인권침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일본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정부 보관중인 모든 자료의 공개, 서면을 통한 공식사죄, 교과서 개정 등을 권고하는 6개 항의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1996. 4. 19.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 보고서의 채택결의가 있었다.

또한 1998. 8. 12. 유엔 인권소위원회(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에서는 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이 보장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책임,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채택되었습니다. 위 '맥두걸 보고서'에서는 ① '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안소를 강간센터(rape center, rape camp)로 규정하여 강제성을 부각하였고, ② 일본의 책임자 처벌문제를 강조하면서 생존 전범의 색출을 주장하였으며, ③ 유엔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로부터 최소한 연 2회 이상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유엔 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책임자의 처벌 및 적절한 배상을 위한 패널을 구성하는 등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였고, ④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10) 이후 고이즈미, 아베 정권 등 일본의 보수우경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고노 담화마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국가에서도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2007. 7. 30.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 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일본 정부는 일본 군인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③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그 후 네덜란드 하원(2007. 11. 8.), 캐나다 연방의회 하원(2007. 11. 28.), 유럽의회(2007. 12. 13.)가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역사적·법적 책임의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순차로 채택하였습니다.

- (11)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 6. 12. 일본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였으며, 유엔 B규약인권위원회는 2008. 10. 30.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과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죄할 것을 권고했다.

(12) 우리나라에서도 2008. 10. 2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추구 결의안이 전체 의원 261명 중 26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9. 7. 대구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2011. 3. 현재 46개에 이르는 전국 기초광역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협회는 2010. 12. 1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협정의 완전 최종 해결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대응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불신감을 조장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② 사죄 및 금전보상을 포함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의들 및 성명은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나.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만약 공권력의 주체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존재하는 지를 살핀다.

이 사건 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위 협정 제3조 제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같은 조 제2항은,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분쟁해결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외교상 경로를 통하여, 2차적으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일본국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국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위 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존속한다는 입장이므로, 결국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한·일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그리하여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입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판례집 5-2, 646),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들 및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위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피청구인에게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공권력의 불행사

피청구인은, 우리 정부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상의 방식 중 일본 정부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 대신,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및 보상을 해주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 문제인 철저한 진상 규명,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 올

바른 역사 교육의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위안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바, 이는 우리 정부에 폭넓게 인정되는 외교적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의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분쟁해결조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의 불이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일본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도외시한 외교적 조치는 이 사건 작위의무의 이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인 일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생활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하여 위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한·일협정 관련문서의 전면공개가 이루어진 후에도 2006. 4. 10. "일본 측과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관련되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관련단체에 회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청구가 제기된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도 이 사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외교상 경로를 통한 분쟁해결조치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가사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분쟁해결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더 이상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중재 회부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08년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계획도 없다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안에 나아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작위의무의 이행을 거부 또는 해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정 관련 해석상 분쟁의 존재

- (1)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결국은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결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의사록 제2조 (g)항은 위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국 정부 및 사법부의 입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모두 포괄적으로 이 사건 협정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포기되었거나 그 배상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며, 반면, 우리 정부는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정에서도, 일본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분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론 후 제출한 2009. 6. 19.자 참고서면에서도 “우리 정부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상의 방식 중 … 방식을 택한 것은 우리 정부에 폭넓게 인정되는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이 역시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의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분쟁해결조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협정의 해석상 분쟁이 존재함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의 대일청구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위 협정 제3조의 ‘분쟁’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 분쟁의 해결절차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계약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들은 협정체결 당시 그 해석에 관한 분쟁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해결의 주체를 협정체결 당사자인 각 국가로 정하면서, 분쟁해결의 원칙 및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위 분쟁이 발생한 이상,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결의 노력이 소진된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선례와의 구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재요청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사건)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나 외교적 문제의 특성으로 보나,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량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협정당사자인 양국 간의 외교적 교섭이 장기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재일한국인 피징용 부상자 및 그 유족들인 청구인들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에게 중재회부를 해달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헌법 제2조 제2항)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호의무(헌법 제10조)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을 중재라는 특정 수단에 회부하여 해결하여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의무와 청구인들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2항의 ‘중재회부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취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제3조 제1항에서 우선적으로 외교상의 통로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쳐 두고 제3조 제2항의 ‘중재회부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피청구인의 의무를 곧바로 도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분쟁해결로 나아가야 할 의무를 지는가 하는 점이고, 특히 제3조 제1항에서는 특정방식이 아닌 광범위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회부로 나아가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특정 방법을 취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행위 등을 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위 선례의 사안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의 재량

외교행위는 가치와 법률을 공유하는 하나의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넘어 가치와 법률을 서로 달리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정부가 분쟁의 상황과 성질, 국내외 정세, 국제법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관행 등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외교행위라는 영역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특정 국민의 기본권이 관련되는 외교행위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로서 위헌이라고 선언되어야 한다. 결국 피청구인의 재량은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기본권침해 위협의 절박성, 기본권의 구제가능성, 진정한 국익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3)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특수성은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의 재판소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1994. 9. 2. 발

표된 유엔의 NGO 국제법률가위원회의 보고서와 1996. 2. 6. 공표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자’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는 이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정의했다. 1998. 8. 12. 공표된 유엔 인권소위 ‘전시 성노예제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를 강요한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단언했다. 2007. 7. 미국 하원이 채택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도 일본군‘위안부’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 4. 27.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입법부작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일본의 야마구찌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판결은, 그 피해를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사상의 표현이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거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판례집 20-2상, 91, 100-101 참조).

(나)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

1991년경부터 최근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진행해 온 3차례의 소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법정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또는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군대성노예로 내몰렸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60여년이 훨씬 넘었고,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지도 20년 남짓 흘렀다.

한편, 2006. 3. 13. 기준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의 적용대상자 225명 중 생존자는 125명이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에도 잇따라 사망하여, 2011. 3.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5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청구인들은 본래 109명이었으나, 그 사이에 45명이 사망하고 64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 기본권의 구제가능성

피청구인은 중재회부절차로 나아갈 경우의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및 보상을 해주는 대신 일본에게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대하고 그 침해의 위험이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가 완벽하게 보장된 경우에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제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이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최종적으로 부인되는 결론이 나올 위험성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총회에 제출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의 제19조에서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외교적 보호의 행사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외교적 보호에의 호소 및 청구될 배상에 관한 피해자들의 견해를 고

려해야 함을 권고적 관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를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의사는 명확하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여성들에 대한 유례 없는 인권침해에 경악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공식적 사실인정과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경우 일본국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반하는 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정부의 금전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일본 측과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 또는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그것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거나 또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적 사실 인식의 공유를 향한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및 양 국민의 상호이해와 상호신뢰가 깊어지게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방향인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 소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론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및 전문과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널리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인용보충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재판관 조대현의 인용보충의견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데, 한일청구권협약에 의하여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국가는 일본군'위안부'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고 기본권으로 보장하여야 한다(헌법 제10조 후문).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1965. 6. 22.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국으로부터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고,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국 재판소는 이러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일본국에게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일 한일청구권협정이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약을 체결한 셈이 된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이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저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방해되는 위헌적인 사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일본국을 상대로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절차를 추진할 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일본국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이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상, 그러한 조약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국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아서 국민들의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을 대신 보상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러한 조약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그렇게 선해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 3억 달러를 받고 국민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협정함으로써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국민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 3억 달러를 받은 다음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피징용 사망자만 보상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같은 일본군'위안부'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1993. 6.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본군'위안부'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일시금과 월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등을 지원하여 왔지만,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온전히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일본국을 상대로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절차를 추진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절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장애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청구인들에게 헛된 소망과 그것이 빚어내는 좌절과 절망의 고통만 안겨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청구인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청구인들이 모두 고령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조치는 시급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8.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우리 헌법상의 명문 규정이나 어떠한 헌법적 법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권력의 부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401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가, 헌법상 명문으로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3가지 경우를 포괄하고 있음도 역시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참조).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상, 헌법해석상, 법령상 도출되는 공권력 주체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의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로서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용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견은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헌법 전문(前文)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부분,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구체적 작위의무의 내용을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라고 보았는바, 과연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우선,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전문의 규정 자체 또는 그 해석에 의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헌법의 조항들 중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로 국민의 기본권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들도 있지만, 개방적·추상적·선언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해석이나 구체적 법령 등이 매개되어야만 국가와 국민간에 구속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 보장 및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국가의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부터 국민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前文)의 문구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헌법 전문(前文)이 국가적 과제와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지도원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범화한 것으로서 최고규범성을 가지고 법령해석과 입법의 지침이 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는 없다.

이처럼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와 그러한 작위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에 관하여는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402-403; 1998. 5. 28. 97헌마282, 판례집 10-1, 705, 710, 헌법 전문에 관하여는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 17-1, 1016, 1020-1021 참조).

따라서, 아무리 이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중대하고 절박하다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헌법 전문만에 기하여서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는 없고, 결국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 존재하여야 이를 매개로 국가의 청구인들에 대한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조항이 위에서 말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 작위의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특정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기재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작위의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법령에 규정되는 구체적 작위의무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하여 특정 작위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위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전제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법규에 구체적인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재판소에 제기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거의 모두가 국내 법령에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 의무에 대한 부작위가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들이었으며, 해당 법령에 문제된 구체적 작위의무가 행정권력의 국민에 대한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권력 불행사의 결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속행위로 해석해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었고(전자에 관하여는,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후자에 관하여는, 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례집 7-2, 169 참조), 반대로 순수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 17-1).

하지만, 이 사건 협정과 같은 조약 기타 외교문서에서, 체결국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내용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체결국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결국 당사자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조약에 근거하여 자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약상 권리의무를 이행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구체적 문구가 해당 조약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약에 그러한 내용의 명시적 문구가 없는 이상, 해당 조약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약상 정해진 절차상 조치를 취할 것을 자국 정부에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협정은 양국 간 또는 일국 정부와 타국 국민 간, 양국 국민 상호간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는바(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은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배상책임문제는 위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할 정도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기재하고 있어, 그 결과 실제로 양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권리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이 사건 협정에서 관련국 국민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조약상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라고 자국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 내용에 기하여 다수의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는 없다.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라고 자국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문구가 이 사건 협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헌법 전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직접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협정과 위 헌법 규정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도출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이 말하는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교행위를 할 작위의무”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항),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 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분쟁이 있으면 '반드시' 외교적 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외교적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반드시' 중재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문구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양 체약국 사이의 외교적 약속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는 것 역시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이 접수되면” 회부되는 것인데, 어느 문구에도 중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요소가 들어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제3조 제1항, 제2항 어디에서도 외교상 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 외교상 해결이 안되면 중재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 낼 수는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해석상 의문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중대성,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에만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국가간 조약에 기재된 의무성조차 없는 문구를, 그로 인하여 사실상 영향을 받는 국민이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체약국의 정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약상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라고 해석해 버린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기재된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는 행위는 규정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양 체약국의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협정 제3조를 근거로 제일 한국인 피징용 부상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다툼을 중재에 회부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우리 재판소 역시 이를 재량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이 사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상대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여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나, 외교적 문제의 특성으로 보나, 이 사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량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협정당사자인 양국간의 외교적 교섭이 장기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제일 한국인 피징용 부상자 및 그 유족들인 청구인들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이 유로, 청구인들에게 중재회부를 해 달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402)

다수의견은, 위 선례는 제3조 제1항의 ‘외교적 해결의무’를 제쳐 두고 제2항의 ‘중재절차회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기에 ‘제3조 전체에 기한 분쟁해결절차 이행의무’를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선례와 이 사건은 차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 선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위 선례에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주된 근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기한 ‘외교적 해결’이나 ‘중재절차회부’ 모두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재량사항’이라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교적 해결’, ‘중재절차회부’에 어떤 의무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의무’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재외국민 보호의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신체장애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나 마찬가지로, 국가의 일반적·추상적 의무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일반적·추상적 의무란 그 자체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비록 헌법에 명시적인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로 탈바꿈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의 규범적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데, 하물며 헌법보다 하위규범인 ‘조약’에 명시되어 있을 뿐인데도 이를 근거로는 조약의 당사자도 아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로 탈바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적 해결을 할 의무’란 그 이행의 주체나 방식, 이행정도, 이행의 완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의 사실확정이 곤란한 고도의 정치행위 영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권력분립원칙상 사법자체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사건 협정만 보더라도, 국내 ‘위안부’피해자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반하여 한일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한일간의 미묘한 외교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지 현재까지 40여년이 지났는데 초기에 외교적 해결노력을 하다가 현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청구인들이 만족할 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외교적 해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되는 것인지, 제2항의 중재절차회부의무는 그러면 언제쯤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등 그 이행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명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실질을 가지는 ‘외교상 의무’를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조약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막연히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치적, 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헌법 전문의 규정,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기하여서는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가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된 후 인간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박탈당하고 그 가해자인 일본국으로부터 인간적 사과마저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든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국가적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 간절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개인적으로 절박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헌법적 법리를 뛰어넘어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처해 있는 기본권구제의 중요성, 절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헌법이나 법령, 기타 헌법적 법리에 의하여도 발견해 낼 수 없다면, 결국 이들의 법적 지위를 해결하는 문제는 정치권력에 맡겨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게 그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한계인 것입니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출처 : 헌법재판소 <https://search.ccourt.go.kr/th/pr/selectThsPr0101List.do>

해제 : 헌법 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2011. 8. 30. 2006헌마788)'에 대하여 부작위 위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니 이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부작위(不作爲))은 위헌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 국가의 재량권 행사라 판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공식적 판결로 청구권 협정에 따른 해석과 범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결국 2012년 대법원이 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파기 환송하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III

참고 사이트 및
참고 문헌



III 참고 사이트 및 참고 문헌

-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nahf.or.kr>
-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카이브 <https://www.archive814.or.kr>
- 민족문제연구소 <https://www.minjok.or.kr>
-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https://wam-peace.org>
- 정의기억연대 <https://womenandwar.net>
- 나눔의 집 <https://www.nanum.org>

- 권윤덕, 『꽃할머니』, 사계절, 2010.
-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편(2010), 『의제로 본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선인
-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김귀옥, 『그곳에 한국인'위안부'가 있었다』, 도서출판 선인, 2019
- 모리카와 미치코, 김정성 옮김, 『버마전선 일본군'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 박중현 외, 『일본군'위안부'바로알기 교사용 지도자료』, 여성가족부, 2015
- 방지원,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비행, 2021
- 안 루프-오헤른, 최재인 옮김,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 삼천리, 2018
- 와다 하루키, 정재정 옮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2016
-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13
-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 이경훈, 『쟁점한일사』, 북멘토, 2016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2009), 『강제동원 명부 해제집1』
-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그들은 왜 일본군'위안부'를 공격하는가』, 휴머니스트, 2014
- 호사카 유지,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황금알, 2018

IV

사진 · 그림
출처

IV 사진·그림 출처

급 별	제 목	출 처	비 고
초 등 학 교	고양시 평화의 소녀상	안정은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메리 스퀘어 기림비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본의 침략 전쟁 지도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부도(53쪽) 발취	
	김순덕 할머니 그림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이용녀 할머니 그림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김복동 할머니 그림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가 동원되었던 지역	동북아역사넷	
	백지도	국토지리정보원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연합뉴스 (1991.8.14)	
	강덕경 할머니 사진	아세아프레스	
	김복동 할머니 사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중학교
	미 하원에서 증언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 (2007.2.16)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피덴시아 데이비드	연합뉴스 (2015.5.22)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박중현	
	일본 시민단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있어요	©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 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WAM)	
	미국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2013.7.31)	
	편지쓰기	오마이뉴스 (2018.6.6)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에듀뉴스 (2013.9.2)	
	예시작품	안정은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꽃 할머니	권순덕, 사계절출판사		
영화 아이캔스피크 포스터	리틀빅픽처스	중학교	
방학숙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 역사관		

급 별	제 목	출 처	비 고
중 학 교	영화 김복동 포스터	옛나인필름	
	영화 허스토리 포스터	NEW	
	김복동 할머니 육성 인터뷰	서울특별시	
	wam 사무국장 인터뷰	한일역사교류회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채택 10주년 기념	오마이뉴스 (2017.7.31)	
	아리랑 비	김재영	
	동아시아에 설치된 위안소	wam	
	영화 김복동 예고편	옛나인필름	
	고노 관방장관	한일역사교류회	고등학교
	아베 전 총리	연합뉴스	고등학교
	스가 전 총리	연합뉴스	
	라디카 쿠마르스와미 특별보고관	한일역사교류회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김학순 할머니 사진	아세아프레스	
	정서운 할머니 사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황금주 할머니 사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이용수 할머니 사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고 내 학 교	소녀상, 베를리너의 일상 속으로	연합뉴스 (2020.9.27)	
	단체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한 '우익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한겨레신문 한주연 통신원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연합뉴스 (2020.10.13)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SEALDs 책	SEALDsBooklet	
	SEALDs 포스터	SEALDs on Twitter	
	2020 온라인 한일 학생 공동 수업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20 온라인 한일 학생 공동 수업	이경훈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교수 · 학습 자료
